제43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정 무 위 원 회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6.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제1장 일반회계

Ⅰ. 개 요 ····· 1

1. 총 괄 ····· 1

2. 세입세출예산안 ····· 7

3. 성과계획서 ····· 19

4. 성인지예산 ····· 21

Ⅱ. 검토의견 ····· 22

1. 미래대응기금 이관 및 신설 사업

(1) 미래대응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이관 및 신설 기준 검토 ····· 24

(2) 금융위원회 소관 7개 사업의 미래대응기금 이관 및 신설의 적정성 검토 ····· 27

2. 핀테크 지원 사업 ····· 39

(1)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기준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 필요 ····· 40

(2) 핀테크 교육사업 이행 지연 및 무상 지원 재검토 필요 ····· 44

(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용역계약 체결 업체 집중 재검토 필요 ····· 48

3.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 52

(1) 신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적격성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 54

(2)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미흡 ····· 55

(3)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금융회사 참여 여건 조성 및 보안대책의 면밀한 점검 필요 ····· 58

(4-1)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청년기업 고용유지 여력 검토 필요 ····· 60

(4-2)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기업 수요를 고려한 자격취득패키지

재설계 필요 ····· 62
(4-3)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인턴십 성과지표 재설계 필요 ····· 63
4. 자금세탁방지추진 ····· 66
(1) 특정 업체(체이널리시스) 독점 전제 예산 편성의 타당성 검토 ····· 68
(2) 해외 클라우드(SaaS) 기반 작동에 따른 보안 대책 마련 필요 ····· 70
5.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이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 72
6.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 76
(1)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소요의 불확실성 ····· 82
(2)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원의 회계·기금 분리 편성 부적정 ····· 85
7.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87
(1)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햇살론유스 공급목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93
(2) 청년기회자금 별도 신설의 적정성 및 상품 간 중복 이용에 따른
채무부담 관리 필요 ····· 96
8. K-민생지킴대출 ····· 100
(1)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 상품설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03
(2) 성실상환자 연계대출 지원 시 금융접근성 확대와 채무부담 완화의
균형적 고려 필요 ····· 105
(3) 회수·잔여재원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 ····· 107
(4) 예상 손실률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108
9.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실적 및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검토 필요 ····· 111
10.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19
(1)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한 모펀드 유보금 과다 ····· 122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인프라 투·융자)의
투자대상 중복 문제 ····· 127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신규) ····· 129

(1) 매입 대상채권 규모 재검토 필요 ····· 132

(2) 형성평을 고려한 사업기준 마련 필요 ····· 139

(3) 회수재원 국고 환수 기준 등 마련 필요 ····· 141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142

(1)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과 동시시행 시 혼란 최소화 필요 ····· 146

(2) 새출발기금의 사후관리 및 재기지원 노력 제고 필요 ····· 150

13. 소송 수행 비용 ····· 154

(1) 소송 패소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155

(2) 연례적인 소송 수행 비용 차년도 지급 개선 필요 ····· 158

제2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160

1. 수입계획안 ····· 162

2. 지출계획안 ····· 164

3. 주요경영지표계획 ····· 173

Ⅱ. 검토의견 ····· 174

1. 일반보증 대위변제: 대위변제 부실률 산정근거 불명확 등 ····· 174

2. 업무용건물: 사전 안전진단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증가 ····· 179

3. 보증연계투자: 민간 후속투자 유치성과 저하 및
투자수익률 관리체계 미흡 ····· 185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190

1. 수입계획안 ····· 192
2. 지출계획안 ····· 194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

Ⅱ. 검토의견 ····· 204

1. 구상권관리: 공탁금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계획액 규모
검토 필요 ····· 204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210

1. 수입계획안 ····· 213
2. 지출계획안 ····· 215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20

Ⅱ. 검토의견 ····· 221

1. 구상권관리비: 채권 회수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필요 ····· 221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Ⅰ. 공적자금상환기금 개요 ····· 226

1. 수입계획안 ····· 228

2. 지출계획안 ····· 229

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 233

1. 수입계획안 ····· 235

2. 지출계획안 ····· 236

Ⅲ. 검토의견 ····· 242

1. 총괄: 기금 청산을 위한 구체적 준비 필요 ····· 242

제6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 254

1. 수입계획안 ····· 256

2. 지출계획안 ····· 257

Ⅱ. 검토의견 ····· 260

1. 저축장려금: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및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맞춘 준비 필요 ····· 260

제1장 일반회계

Ⅰ. 개 요

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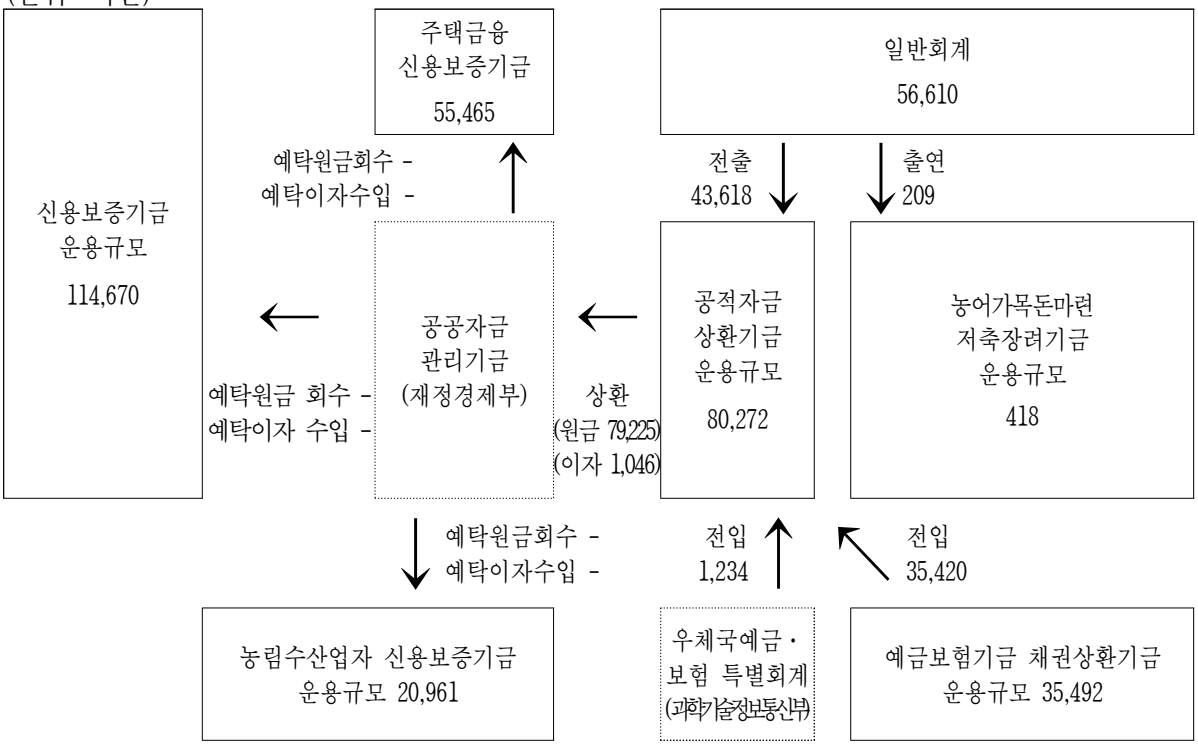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7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4조 3,618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9억원을 출연함.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조 9,225억원의 예수원금과 1,046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5,420억원을 전출함.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6년 예산 대비 87억원(5.6%) 증가한 1,64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6년 최종 예산 대비 1조 88억원(21.7%) 증가한 5조 6,61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7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A)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1,558	1,645	87	5.6
○ 일반회계	1,558	1,645	87	5.6
□ 세출예산안	46,516	56,610	10,088	21.7
○ 일반회계	46,516	56,610	10,088	21.7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대비 5,275억원 증가한 30조 7,277억원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기금은 2026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음.

<2027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용계획안	301,502	302,002	307,277	5,275	1.8
○ 공적자금상환기금	74,206	74,206	80,272	6,066	8.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65	465	418	△47	△10.2
○ 신용보증기금	107,015	107,515	114,670	7,155	6.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249	22,249	20,961	△1,288	△5.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700	48,700	55,464	6,764	13.9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8,867	48,867	35,492	△13,375	△27.4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총지출[1]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026년 대비 1조 2,493억원 감소(25.2%)한 3조 7,065억원이며, 총지출은 2026년 대비 8,536억원 감소(△39.7%)한 1조 2,992억원임.

1) 총수입·총지출은 회계·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금·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27년도 금융위원회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도 본예산(A)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수입	49,558	37,065	△12,493	△25.2
○ 일반회계	1,558	1,645	87	5.6
○ 공적자금상환기금	48,000	35,420	△12,580	△26.2
□ 총지출	21,528	12,992	△8,536	△39.7
○ 일반회계	21,528	12,992	△8,536	△39.7
○ 공적자금상환기금	0.04	0.03	△0.01	△25.0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현황[2)3)4)]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으로 7조 9,225억원 규모임.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본예산(당초)	2026년 추경(A)(수정)	2027년도 예산안(B)(계획안)	증감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 상환(공자기)	71,486	71,486	79,225	7,739	10.8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일반)	24,988	24,988	43,618	18,630	74.6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일반)	-	-	5,000	5,000	순증
K-민생지킴대출(일반)	-	-	3,000	3,000	순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일반)	-	-	2,000	2,000	순증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일반)	48	48	147	99	205.4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일반)	-	-	50	50	순증
자금세탁방지추진(일반)	10	10	33	23	239.3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일반)	3	3	6	3	96.9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관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제외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 미래대응기금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

□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중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은 7개 사업, 총 3조 5,386억원 규모임. 이 중 신규 편성 사업은 5개 사업, 총 8,374억원 규모이며, 기존 사업 중 이관 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 총 2조 7,011억원 규모임.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7년	주요 내용
계(7개 사업)	3,538,572	
주택금융 이차보전	59,660	○ 기존 보금자리론에 더해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外) 매입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 신규공급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28,616	○ 보증부 전월세대출을 신규 출시하고, 최저 보증료율(0.02%), 이차보전(1~3%p 인하) 등 지원
청년미래적금	1,701,089	○ '26.6월 상품 출시(월 최대 50만원 납입, 정부 기여금 6~12% 지원) 이후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기여금 상향, 지방 우대 신설 등 지원 범위·규모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31	○ '26.9월 이후 출생한 0~18세 아동 명의 펀드 계좌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20만원(정액) 또는 최대 100만원(매칭) 지급
청년기회자금	102,676	○ 미취업 청년(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의 취업준비 기간 중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대출 상품 출시
국민성장펀드	1,000,000	○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00	○ PF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정상화 지원 및 주택 공급 촉진

(자료: 금융위원회)

□ 기획예산처 소관 공익신고장려기금 중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은 2개 사업, 총 422억원 규모임. 2개 사업 모두 기존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편성되었음.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7년	주요 내용
계(2개 사업)	42,200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00	○ 「자본시장법」 제435조 제7항 등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00	○ 「외부감사법」 제28조 제5항 등에 따라, 회계부정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자료: 금융위원회)

2.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45억 300만원으로 2026년 대비 86억 7,600만원(5.6%)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25,070**	**155,827**	**155,827**	**164,503**	**8,676**	**5.6**
기타재산이자수입	826	155	155	367	212	136.8
과태료	44,079	31,969	31,969	36,602	4,633	14.5
과징금	77,421	122,003	122,003	125,767	3,764	3.1
가산금	83	150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2,661	1,550	1,550	1,617	67	4.3

(자료: 금융위원회)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7년도에는 최근 3년간('23년~'25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6년도 예산 대비 46억 3,300만원(14.5%)이 증가한 366억 2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7년도에는 최근 3년간('23년~'25년) 과징금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

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6년도 예산 대비 37억 6,400만원(3.1%)이 증가한 1,257억 6,7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7년도에는 최근 3년간('23년~'25년) 가산금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6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소송비용 보전금 등 기타수입으로, 2027년도에는 2026년도 예산 대비 6,700만원(4.3%)이 증가한 16억 1,700만원이 편성됨.

2)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6,609억 6,7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4조 6,516억 2,600만원 대비 1조 93억 4,100만원(21.7%)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5,668,816	4,651,626	4,651,626	5,660,967	1,009,341	21.7
□ 금융위원회 운영	3,168,816	2,152,832	2,152,832	1,299,165	△853,667	△39.7
○ 인건비	32,947	37,095	37,095	40,894	3,799	10.2
○ 기본경비	8,817	9,728	9,728	10,758	1,030	10.6
○ 주요사업비	3,127,052	2,106,009	2,106,009	1,247,513	△858,496	△40.8
□ 내부거래	2,500,000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조 2,992억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2026년 예산 대비 8,536억 6,700만원(△39.7%)이 감액 편성됨.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 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4조 3,618억원)로 2026년 예산 대비 1조 8,630억 800만원(74.6%)이 증액 편성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회계기금간거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2027년에는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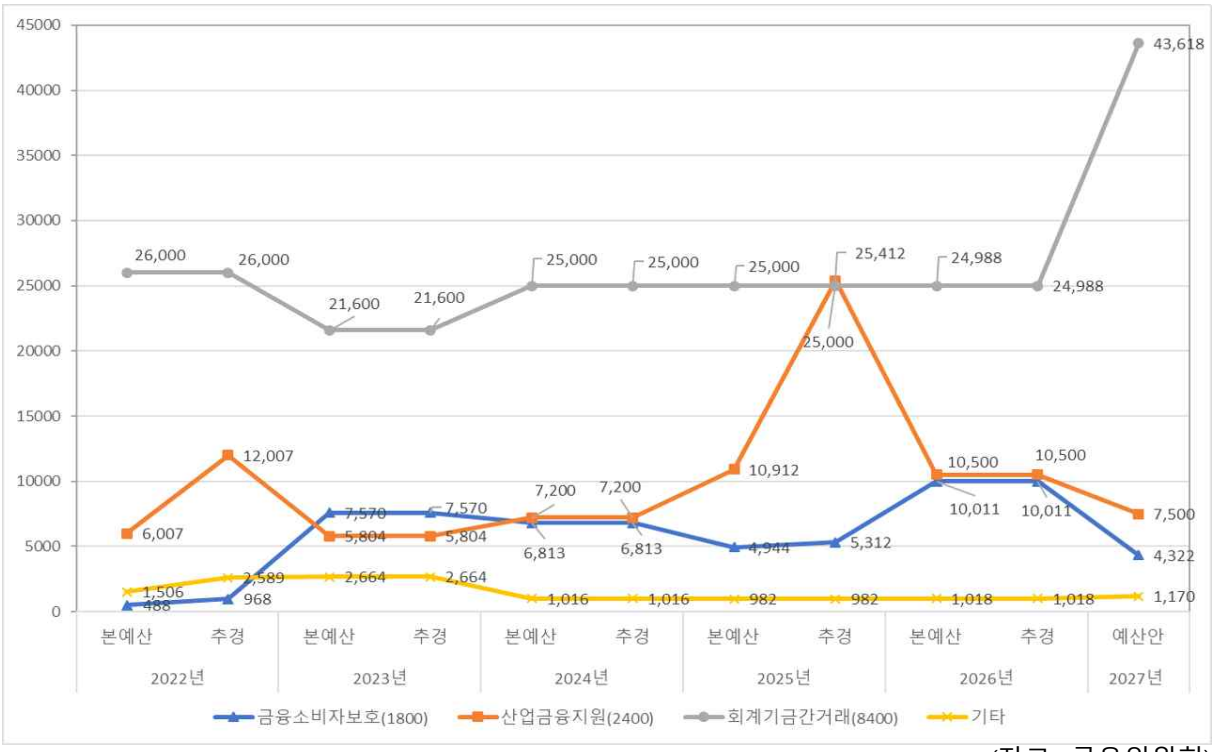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46	145	140	140	123	123
서민금융지원(1200)	-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82	81	77	77	74	74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37	36	29	29	9	9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488	968	7,570	7,570	6,813	6,813
산업금융지원(2400)	6,007	12,007	5,804	5,804	7,200	7,200
주택금융지원(2600)	500	1,590	1,668	1,668	-	-
금융행정효율화(7100)	741	737	750	750	810	810
회계기금간거래(8400)	26,000	26,000	21,600	21,600	25,000	25,000
합 계	**34,000**	**41,564**	**37,636**	**37,636**	**40,030**	**40,030**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금융정책(1100)	129	129	121	121	152
서민금융지원(1200)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78	78	78	78	201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10	10	10	10	11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4,944	5,312	10,011	10,011	4,322
산업금융지원(2400)	10,912	25,412	10,500	10,500	7,500
주택금융지원(2600)	-	-	-	-	-
금융행정효율화(7100)	765	765	809	809	806
회계기금간거래(8400)	25,000	25,000	24,988	24,988	43,618
합 계	**41,838**	**56,706**	**46,516**	**46,516**	**56,610**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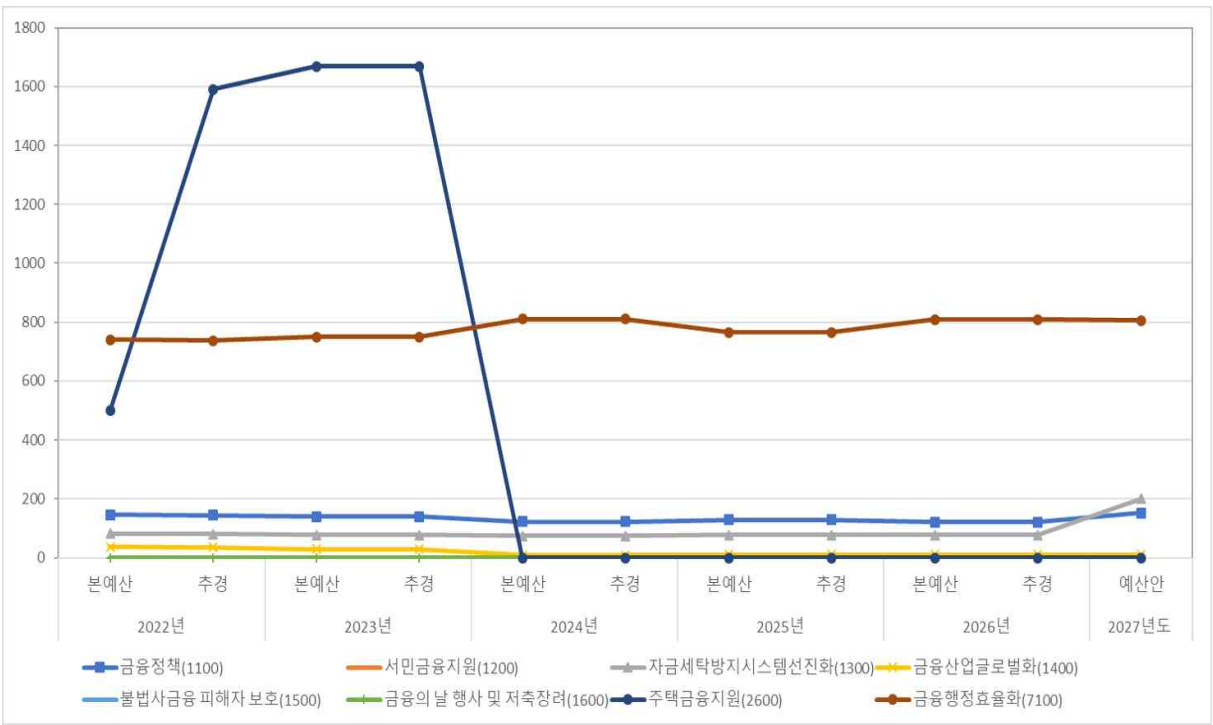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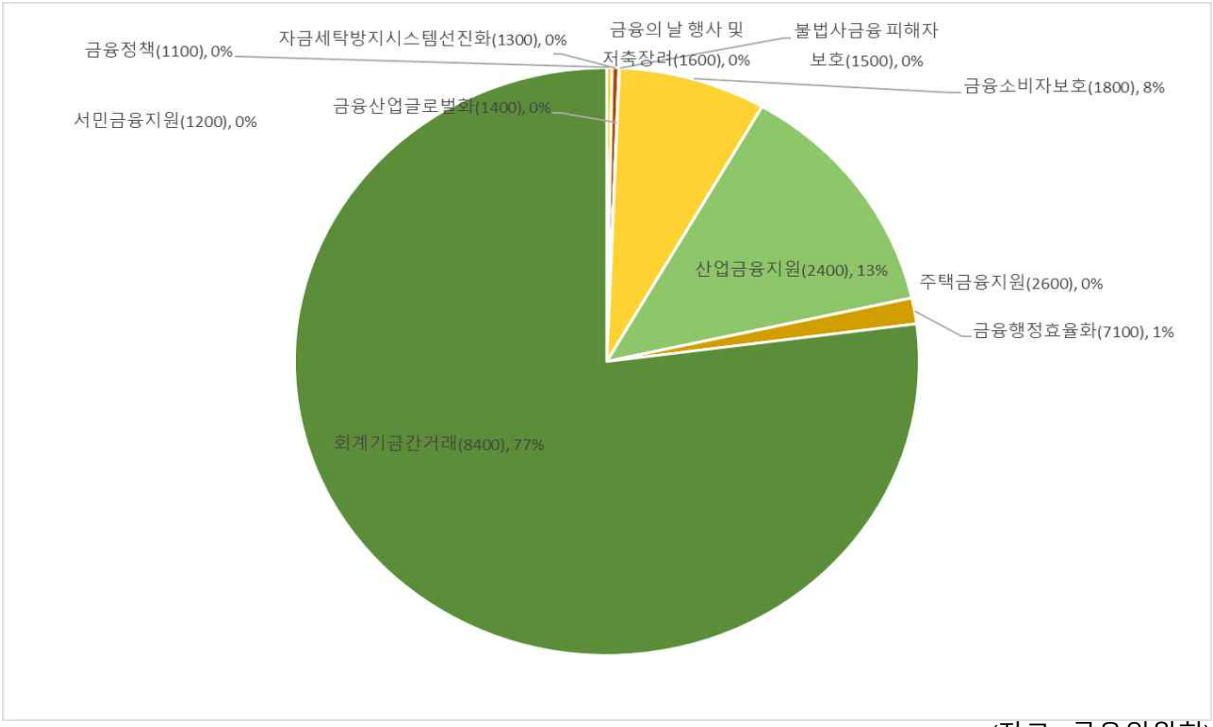
〈기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7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2) 인건비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408억 9,4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370억 9,500만원 대비 37억 9,900만원(10.2%) 증가함.

○ 2027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32,947**	**37,095**	**37,095**	**40,894**	**3,799**	**10.2**
□ 세목별	32,947	37,095	37,095	40,894	3,799	10.2
○ 보수(110-01)	31,972	36,005	36,005	39,144	3,139	8.7
○ 기타직보수(110-02)	785	829	829	1,450	621	74.9
○ 연가보상비(110-05)	190	261	261	300	39	14.9
□ 기관별	32,947	37,095	37,095	40,894	3,799	10.2
○ 본부 인건비	27,237	31,116	31,116	34,130	3,014	9.7
○ FIU 인건비	5,710	5,979	5,979	6,764	785	13.1

(자료: 금융위원회)

(3) 기본경비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07억 5,800만원으로 2026년 예산 대비 10억 3,000만원(10.6%)이 증가함.

○ 2027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5억 8,5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대비 2억 6,500만원(6.1%)이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61억 7,3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대비 7억 6,500만원(14.1%)이 증가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3,065	3,233	3,233	3,571	338	10.5
		대변인실	8	8	8	8	-	-
		금융정책국	46	77	77	47	△30	△39.0
		자본시장국	80	120	120	123	3	2.5
		금융소비자국	25	37	37	25	△12	△32.4
		금융산업국	56	76	76	56	△20	△26.3
		국민성장펀드 추진지원단	-	24	24	24	-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97	745	745	731	△14	△1.9
	소 계(A)		3,877	4,320	4,320	4,585	265	6.1
총액인건비 비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2,521	2,547	2,547	2,428	△119	△4.7
		대변인실	289	308	308	310	2	0.6
		금융정책국	657	712	712	765	53	7.4
		자본시장국	397	433	433	739	306	70.7
		금융소비자국	142	158	158	157	△1	△0.6
		금융산업국	334	386	386	372	△14	△3.6
		국민성장펀드 추진지원단	-	154	154	671	517	335.7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96	710	710	731	21	3.0
	소 계(B)		4,936	5,408	5,408	6,173	765	14.1
합 계(A+B)			8,813	9,728	9,728	10,758	1,030	10.6

(자료: 금융위원회)

(4) 주요사업비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조 2,475억원으로 2026년 예산 대비 8,585억원(△40.8%)이 감소함.

○ 주요사업비가 2026년도 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국민성장펀드(2026년 1조원), 청년미래적금(2026년 7,446억원) 등 일부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3,125,833	2,106,009	2,106,009	1,247,513	△858,496	△40.8
핀테크 지원 사업	12,811	11,076	11,076	8,997	△2,079	△18.8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	-	-	5,000	5,000	순증
D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	1,010	1,010	1,166	156	15.4
자금세탁방지추진	805	969	969	3,288	2,319	239.3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018	2,018	2,018	2,118	100	5.0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870	4,801	4,801	14,662	9,861	205.4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69	997	997	1,101	104	10.4
금융소비자보호	94	90	90	86	△4	△4.4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20	-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92,500	-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46,758	124,185	124,185	47,033	△77,152	△62.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90,000	-	-	-	-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129,700	129,700	82,816	△46,884	△36.1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청년미래적금	-	744,625	744,625	-	△744,625	순감
아이자립펀드타당성연구용역	-	600	600	-	△600	순감
K-민생지킴대출	-	-	-	300,000	300,000	순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628	1,906	1,906	2,272	366	19.2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	-	-	-	-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000	50,000	50,000	5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	-	-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450,000	-	-	-	-	-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	-	-	-	-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100,000	-	-	-	-	-
국민성장펀드	-	1,000,000	1,000,000	-	△1,000,000	순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1,200,000	-	-	200,000	200,000	순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00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	-	-	500,000	500,000	순증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876	2,189	2,189	1,741	△448	△20.5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1,372	1,290	1,290	1,396	106	8.2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268	286	286	563	277	96.9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08	117	117	11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482	525	525	714	189	36.0
정책연구개발	508	509	509	452	△57	△11.2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금융정책알리기	856	876	876	1,148	272	31.1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50	3,170	3,170	-	△3,170	순감
회계의날	58	77	77	88	11	14.3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197	440	440	-	△440	순감
금융의 날 행사	69	90	90	90	-	-
소송수행비용	900	1,100	1,100	1,600	500	45.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	424	171	171	192	21	12.3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445	-	-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24,147	23,192	23,192	20,873	△2,319	△10.0

(자료: 금융위원회)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예산안은 4조 3,618억원으로 2026년 예산 대비 1조 8,630억원(74.6%)이 증가함.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내부거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2,500,000**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2,500,000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자료: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

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받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4조 3,618억원이 편성됨.

3.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임무를 ‘경제활력 뒷받침’, ‘금융산업혁신’,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설정하고,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는 4가지 전략목표(‘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재기 및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금융 부문에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자본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 인프라를 구축한다.’)와 1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7년도 금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4	11	24	73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Ⅰ-1 산업금융지원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Ⅰ-2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Ⅰ-3 신용보증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전략목표Ⅱ. 취약계층 재기 및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금융 부문에 지원을 강화한다.		
	Ⅱ-1 금융소비자보호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Ⅱ-2 저축장려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3 주택금융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4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Ⅲ-1 금융정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Ⅲ-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Ⅲ-3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Ⅳ. 자본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Ⅳ-1 금융행정효율화	자본시장 공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4. 성인지 예산[5)]

□ 금융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5)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제26조)

Ⅱ. 검토의견

1. 미래대응기금 이관 및 신설 사업: 미래대응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이관 및 신설의 적정성 검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 설치[6]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펀드의 2개 세부사업(2026년 일반회계)을 이관하고,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은 3조 5,385억원이 계획되었으며,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지출 1조 2,992억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임.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A)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이관	청년미래적금	-	744,625	1,701,089	956,464	128.4
	국민성장펀드	-	1,000,000	1,000,000	-	-
신설	주택금융 이차보전	-	-	59,660	59,660	순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	-	28,616	28,616	순증
	우리아이자립펀드	-	-	146,531	146,531	순증
	청년기회자금	-	-	102,676	102,676	순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	500,000	500,000	순증
계		-	1,744,625	3,538,572	1,793,947	102.8

(자료: 금융위원회)

6) 2026년 10월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이 계류 중에 있음.

○ 미래대응기금 계정[7]별로 살펴보면,

청년계정으로는 주택금융 이차보전,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지원, 청년 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의 5개 세부사업이,

성장동력계정으로는 국민성장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의 2개 세부사업이 반영되었음.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현황>

구분	용도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청년 계정	1.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6조제2항)	○ 주택금융 이차보전(597억원)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지원 (286억원) ○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원) ○ 우리아이자립펀드(1,465억원) ○ 청년기회자금(1,027억원)
성장동력 계정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제2항)	○ 국민성장펀드(1조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5,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7)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4조(미래기금의 계정 구분) 미래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한다.

2) 검토의견[8)]

(1) 미래대응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 이관 및 신설 기준 검토

□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목적, 예산 집행 및 그 재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대응투자를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기금의 설치 목적으로 규정[9)]하고 있어, 일반 재정사업이 아닌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금 설치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미래대응기금에 계획된 사업의 경우 금융성 기금과 동일하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사업성 기금 등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20% 이내임)에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10)]에서 일반회계 편성 사업에 비하여 탄력적인 계획 변경 및 집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11)] 중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초과세수[12)] 및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

8)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예산처로 설계됨에 따라,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기획예산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함.

9)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1056, 정부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임.

11) 추가세수 :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

12) 초과세수 :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9월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

전입금 등으로[13], 반도체 업황 등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에 따라 기금 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미래대응기금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금 이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4].

□ 첫째,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사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주거안정 등도 장기적인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 재정사업에서도 추구하는 정책 목표로서, 이와 같은 간접적 효과와 구분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 생산시설·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등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투자 규모, 시기 등을 일반회계에 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

---

13)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11.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14) 한편, 기획예산처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으로 ① 인적·물적 자본 형성에 투자하는 사업(New-Capital), ②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Enterprising), ③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fleXible), ④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Timely)이라는 NEXT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요가 있는 사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산업 투자 또는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출자사업은 투자대상 발굴, 민간자금 유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활용할 여지가 있음.

○ 반면,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지출 규모가 가입자 수와 대출잔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활용할 여지가 제한적임.

□ 셋째, 기금 재원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에 따라 기금 수입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정부 기여금이나 이차보전금 등 중장기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은 기금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지출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업보다는 재원 여건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위원회 소관 7개 사업의 미래대응기금 이관 및 신설의 적정성 검토

① 주택금융 이차보전(596억 6,000만원)

□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최초로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저리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15]을 공급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달비용과 대출금리 간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596억 6,000만원임.

<2027년도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세부내역
신설	주택금융 이차보전(청년계정)	-	59,660	○ 이차보전금(320-05) : 59,660백만원 - '27년 공급규모 3조원 × [5.630%(예상 주금공 조달비용 및 제비용) - 3.641%(예상 평균 대출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15) <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주택	4억원 이하 非아파트 주택(85m^2 이하)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최대 80%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26.10월 예정)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금리	4.90% ~ 5.20%	기본우대+저소득·지방·신생아 추가우대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약 2%p 내외로 인하, 잠정)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7~2028년 2년간 연간 3조원 규모로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나, 대출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이차보전금의 지속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2027년부터 2063년(대출기간 36년 가정 시)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출 만기까지의 총 이차보전금 재정 소요를 1조 7,36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용도에는 부합하나,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금융 지원과 구분되는 미래대응투자의 성격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출 공급기간 후에는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활용할 여지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대출 공급에 따른 재정지원은 약 36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286억 1,600만원)

□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지방 청년이 전월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1~3%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286억 1,600만원임[16].

16)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요건 >**

<2027년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세부사업명</th><th>2026</th><th>2027</th><th>세부내역</th></tr>
<tr><td>신설</td><td>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청년계정)</td><td>-</td><td>28,616</td><td>○ 이차보전(320-05) : 28,616백만원
= 57,232백만원÷2 (분할실행에 따른 평잔 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공급액**
(억원)</th><th>이차보전
금리***</th><th>이차보전액
(백만원)</th></tr>
<tr><td rowspan="4">수도권</td><td>3천만원이하</td><td>4,004</td><td>2.0%</td><td>8,009</td></tr>
<tr><td>4천만원이하</td><td>6,413</td><td>1.5%</td><td>9,620</td></tr>
<tr><td>5천만원이하</td><td>7,849</td><td>1.0%</td><td>7,850</td></tr>
<tr><td>5천만원초과</td><td>11,596</td><td>-</td><td>-</td></tr>
<tr><td rowspan="4">비수도권</td><td>3천만원이하</td><td>2,382</td><td>3.0%</td><td>7,147</td></tr>
<tr><td>4천만원이하</td><td>4,192</td><td>2.5%</td><td>10,479</td></tr>
<tr><td>5천만원이하</td><td>4,744</td><td>2.0%</td><td>9,487</td></tr>
<tr><td>5천만원초과</td><td>4,640</td><td>1.0%</td><td>4,64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45,820</td><td>-</td><td>57,232</td></tr>
</table>
* 이차보전 한도 제약에 따른 대출 신청기간 쏠림방지, 임대차계약 시점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대출공급액의 분기별 한도를 설정하여 분할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5년 전세보증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신규 출시 전월세결합보증 공급 예상액
*** 소득·지역구분에 따라 1~3% 차등 적용</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7~2028년 2년간 연간 4.5조원씩 공급되는 전월세대출에 대하여 대출 만기(4년)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을 2027년부터 2032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출 만기까지의 총 이차보전금 재정 소요를 4,57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특례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규제대상 APT 제외)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80%, 4억원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월세대출도 보증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
보증비율	90%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보증료	0.02%~0.2% (평균 0.04%)	0.02% (최저 보증료율)
이차보전(案)		1.0%~3.0% 이차보전 지원 *저소득/지방 청년

(자료 :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용도에는 부합하나,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전세대출 금리 중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금융 지원과 구분되는 미래대응투자의 성격은 크지 않으며, 대출 공급기간 이후에는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활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원)

□ 동 사업은 청년이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하는 사업(서민금융진흥원 출연)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일반회계 7,446억 2,500만원 대비 9,564억 6,400만원(128.4%) 증가한 1조 7,010억 8,900만원임.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세부내역
이관	청년미래적금 (청년계정)	744,625	1,701,089	○ 기여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1,691,412백만원 - '26년도 기가입자 및 '27년 신규 가입자 x 기여금(6, 15, 25%) x 납입액(월 최대 50만원) x 가입기간 ○ 인프라 구축(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9,367백만원 ○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 3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의 용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 수요에 따라 기여금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음.

□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027년에도 일반회계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으로 470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여금을 통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일한 구조의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 구분하여 편성한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지원 대상과 월 최대 납입금, 적금 만기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년이 일정 기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매칭·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동일함[17].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사업연도	2023~2025	2026~
가입 조건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③ 가구소득 기준 : 중위소득의 250% 이하	①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기여금 지원	·납입금에 비례한 매칭형태로 기여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납입금액의 3~6% 수준)	·일반형: 납입금액의 6% 지급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신규채용 청년 및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액의 12% 지급
상품 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월 최대 납입 50만원,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17) 추가적인 내용은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회계·기금 분리 편성 부적정' 검토의견 참조(85p)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2027 예산안	470억 3,300만원	1조 7,010억 8,900만원

주: 청년미래적금 지원대상은 2026년 기준으로, 2027년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폐지, 우대형 매칭 비율 상향(12% →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매칭비율 상향(25%) 등 검토 중

(자료: 금융위원회)

④ 우리아이자립펀드(1,465억원)

□ 동 사업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18]하여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1,465억 3,100만원임.

<2027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세부내역
신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계정)	-	146,531	○ 기여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137,345백만원 ❶ (~중위 50%) 1.6만명 × 95%^{예상가입률} × 年120만원^{정액} = 18,164백만원 ❷ (중위 50~100%) 4.8만명 × 80%^{예상가입률} × 年100만원 × 85%^{예상납입률} =32,504백만원 ❸ (중위 100~150%) 12.7만명 × 80%^{예상가입률} × 年100만원 × 85%^{예상납입률}=86,677백만원 ○ 인프라 구축(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8,876백만원 ○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 지원 : 3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미래대응

18) <소득수준별 기여금 지원 비율>

소득수준	지원금액
중위소득 50% 미만	부모납입여부 무관 정부지원 **120만원 (정액)**
중위소득 50~100%	부모납입 전제 **50만원** + 정부지원 **100만원 (1:2 매칭)**
중위소득 100~150%	부모납입 전제 **100만원** + 정부지원 **100만원 (1:1 매칭)**
중위소득 150% 초과	없음

기금 청년계정의 용도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입 이후 최대 19년간 기여금을 지속 지급하고 매년 신규 가입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총 재정비용(직접 재정지원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세지출의 합)은 최대 부담 시나리오[19]를 기준으로 2030년 1조 1,350억원(직접지원 7,210억원 + 조세지출 4,140억원), 2038년 2조 700억원(직접지원 17,440억원 + 조세지출 3,260억원), 2046년 2조 6,080억원(직접지원 22,600억원 + 조세지출 3,4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등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추가세수·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9) 가정: 가입률·납입률 100%, 수익의 70%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채권투자비율 75%), 2010년 이후 모든 출생아가 가입나이×200만원만큼 일시납

⑤ 청년기회자금(1,027억원)

□ 동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20](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1,026억 7,600만원임.

<2027년도 청년기회자금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세부내역
신규	청년기회자금(청년계정)	-	102,676	○ (보증재원) 4,500억원(공급목표) x 20%(사업손실율) = 90,000백만원 ○ (이차보전 재원) 1. 사회적배려대상자, 고졸 미취업자 이차보전 : 4,500억원(공급목표) x 40%(이차보전 대상 비중: 사회적배려대상자 15% + 고졸 미취업자 25%) x 1.6%(이차보전 규모) = 2,880백만원 2. 이자면제 : 4,500억원(공급목표) x 60%(미취업자 중 취업준비자(실업자) 비중) x 3.6%(면제이자 평균) = 9,796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 계획안은 2027년 4,500억원의 대출 공급을 목표로 보증재원 900억원과 이차보전·이자면제 재원 12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청년에게 신용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행 일반회계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사업

20)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대출 한도 : 1인당 생애 2,000만원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
대출 금리 : 일반 4.0%, 사회적배려대상자 1.9%, 고졸 미취업자 2.4%
보증 비율 : 100%

(햇살론유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 구분하여 편성한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21].

<청년기회자금과 햇살론유스 비교>

구분	청년기회자금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원)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대출한도	1인당 생애 2,000만원 *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 900만원
대출금리	- 일반: 4.0%(보증료 1.0%p 별도) -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 고졸 미취업자: 2.4%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취업준비 기간 중 거치기간 이자면제	- 일반: 4.0%(보증료 1.0%p 별도) -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보증비율	100%	100%
2027 예산안	1,026억 7,600만원	828억 1,600만원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자료: 금융위원회)

⑥ 국민성장펀드(1조원)

□ 동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등에 대해 직접지분투자·간접투자·인프라 투융자 및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정부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일반회계)과 동일한 1조원임.

21) 사업 내용의 비교는 '7.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햇살론유스 공급목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87p) 참조

<2027년도 국민성장펀드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2027년 조성 및 집행계획 (조원)			
				조성		집행(재정 제외)	
이관	국민성장펀드 (성장동력계정)	1,000,000	1,000,000	❶첨단전략산업기금	20	❶직접지분투자	5
				❷민간자금	20	❷간접투자(펀드)	10
				❸재정	1	❸인프라투융자	15
						❹저리대출	10
				합계(재정 제외)	40	합계	40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유사하게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일반회계 : 5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용도[22]에도 부합함에도 2027년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 사업과 타 정책펀드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 구분하여 편성한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2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8조(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지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4.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5. 총괄계정에의 예탁
6.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⑦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원)

□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합동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부실·부실우려 PF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은 5,000억원임.

<2027년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6	2027	세부내역
신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성장동력계정)	-	500,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500,000백만원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 펀드 조성금액 3조원 중 재정투입분 1.5조원의 1/3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부실우려 PF채권 인수, 사업장 직접 인수 후 개발, 신규 자금 공급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1.8만호 이상의 주택[23]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은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주택공급 촉진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기술혁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의 용도와는 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1차 펀드(2023. 9월 1.1조원 규모 조성)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
- 1차 펀드 시 주거사업장 투자금액 3,730억원 → 3,881호 주택등 공급 예정
- PF사업장 정상화 펀드 투자예정금액 1.8조원(3조원 × 60%(주목적 투자비율)) → 1.8만호 주택등 공급 예상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24]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4)「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2. 핀테크 지원 사업[25]: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기준 및 성과 관리 체계 미흡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7,900만원(18.8%) 감액된 89억 9,7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핀테크 지원 사업	12,811	11,076	11,076	8,997	△2,079	△18.8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6,856	5,316	5,316	3,676	△1,640	△30.9
.핀테크기업 육성 지원	3,019	2,909	2,909	2,809	△100	△3.4
.핀테크 기반구축	1,674	1,681	1,681	1,342	△339	△20.2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선진화	91	-	-	-	-	-
.사업 운영 지원	1,170	1,170	1,170	1,170	-	-

(자료: 금융위원회)

25)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1)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기준 및 성과관리 체계 보완 필요

□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내역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 개발·출시 과정에 필요한 보안·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장 안착 및 초기 테스트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및 ‘위탁테스트’ 선정 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국고보조율 50~80%)의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04건에 대하여 99억 2,693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 4년간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23년 29건에서 2026년 21건으로 감소한 반면, 건당 평균 지원액은 2023년 9,340만원에서 2026년 9,95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1억원 이상 지원 건수의 비중도 동 기간 중 45%에서 62%로 상승하였음.

○ 지원액 기준 테스트베드 유형별 비중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의 비중은 2023년 93.7%에서 2026년 36.4%로 하락한 반면, 위탁테스트의 비중은 2023년 6.3%에서 2026년 63.6%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건수 (혁신금융·위탁)	지원액 합계	혁신금융서비스	위탁테스트	건당 평균	가중평균 보조율
2023	29 (26·3)	2,708	2,536	172	93.4	75.0
2024	27 (15·12)	2,550	1,442	1,108	94.4	73.2
2025	27 (13·14)	2,579	1,343	1,236	95.5	72.9
2026	21 (8·13)	2,090	761	1,329	99.5	74.2
합계	104 (62·42)	9,927	6,082	3,845	95.5	73.8

주1) 가중평균 보조율 = Σ(지원액×보조율) ÷ Σ지원액

주2) 건수 내 괄호에는 혁신금융서비스·위탁테스트 건수 순으로 기재

주3) 2026년 10월 현재,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사업 선정절차가 마감되어 2026년도 내 변동사항은 없을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6억 4,000만원(30.9%) 감액된 3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지원 기준 및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첫째,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장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규제특례가 부여된 지정기간 내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반복·장기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금융서비스로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받은 33개사 중 3회 이상 지원된 9개사의 누적 지원액은 29억 3,000만원으로, 최근 4개년 혁신금융서비스 총 지원액(60억 8,200만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음.

〈3회 이상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기업 현황〉

기업명	누적 지원액	지원 횟수	지원 연도	서비스 출시 여부(연도)
한국증권대차	4.3억원	4회	2023~2026	출시 (2020년)
서울거래	4.2억원	4회	2023~2026	출시 (2020년)
핀테크	3.5억원	4회	2023~2026	출시 (2021년)
페이히어	3.4억원	3회	2023~2025	출시 (2022년)
펀블	3.4억원	3회	2023~2025	출시 (2022년)
핀다	3.0억원	3회	2023~2025	출시 (2021년)
뱅크샐러드	2.7억원	3회	2023~2025	미출시
뱅크몰	2.5억원	3회	2023~2025	출시 (2024년)
그린재킷	2.3억원	3회	2023~2025	출시 (2024년)

(자료: 금융위원회)

○ 이 중 상위 3개사인 '한국증권대차(2019년 지정)', '서울거래(2020년 지정)', '핀테크(2021년 지정)'는 2020~2021년에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여 영업 중임에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으로 각각 4억 3,000만원, 4억 2,000만원,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음.

□ 또한, 동일 기업에 다년도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연차가 경과할수록 자부담 비율을 높여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기본 원칙임에도, '한국증권대차(75%→80%)', '핀다(75%→70%→80%)' 등 연차가 누적될수록(2023년→2025년) 국고보조율이 80%까지 상향된 사례가 나타남.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에 대한 연도별 국고보조율 현황〉

(단위: %)

기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한국증권대차	75	80	80	70
서울거래	75	70	80	70
핀테크	75	70	60	60
펀블	75	80	70	-
페이히어	75	80	70	-
핀다	75	70	80	-
그린재킷	75	60	70	-
뱅크몰	75	70	60	-

주: '-'는 해당 연도 지원 없음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서비스가 출시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 검증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원된 62건 중 약 22.5%인 14건이 현재까지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건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13억 799만원에 달하고 있음.

○ 2023년에 지원받은 '씨피랩스(1억 1,960만원)', '피네보(9,000만원)', '씨비파이낸셜솔루션(7,500만원)', '에이판다파트너스(1억 330만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채 지정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2023년 2개사, 2024년·2025년 각 1개사)되어, 지원액 총 3억 8,790만원이 실증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베스트핀’은 2023년 7월 지정된 동일 서비스로 2023년(8,273만원)과 2024년(6,663만원) 2년간 약 1억 4,9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여전히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채 혁신금융서비스 유효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미출시에 따른 미기산(未起算)), ‘뱅크샐러드’ 역시 기존 지원 건이 미출시 상태임에도 이후 연도에 신규 과제로 보조금을 반복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2023년, 2025년).[26]

<미출시 상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기업명	지정일	지원액	보조율	지정기간 표기
2023	뱅크샐러드	2022-11-09	71.6	74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3	베스트핀	2023-07-19	82.7	75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3	부엔까미노	2023-06-21	104.8	75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3	씨비파이낸셜솔루션	2020-02-19	75.0	75	2024년 종료
2023	씨피랩스	2020-12-22	119.6	75	2023년 종료
2023	에이판다파트너스	2022-12-21	103.3	75	2025년 종료
2023	팀윙크	2023-06-21	97.0	75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3	피네보	2019-11-20	90.0	75	2023년 종료
2024	베스트핀	2023-07-19	66.6	60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4	이노핀	2024-01-31	95.6	70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5	뱅크샐러드	2025-01-15	103.3	70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5	왓섭	2024-09-05	96.5	70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2026	아이쿠카	2025-11-05	120.0	80	미출시에 따른 미기산

(자료: 금융위원회)

(2) 핀테크 교육사업 이행 지연 및 무상 지원 재검토 필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핀테크 전문가 과정’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대면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핀에듀

26) 금융위원회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2026.6.)’에서 혁신 서비스 기산일이 서비스 출시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후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지정기간이 소진되지 않아 장기 미개시 사례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과정'은 기초지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예비창업자, 이직 준비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

□ 그런데 교육 용역 발주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교육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 동 교육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코스콤이, 2025년부터는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하고 있으나, 2026년의 경우 전문가 과정은 8월, 핀에듀 과정은 7월에 교육이 개시되는 등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6년 9월 말 기준 수료인원은 전문가 과정 95명, 핀에듀 과정 63명에 그치고 있음.

<핀테크 전문가 · 핀에듀 과정 연도별 운영 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연도	예산	목표 인원	수강 인원	수강 인원 증감률	수료 인원	수료 인원 증감률	수료율	수료율 변동폭
전문가 과정	2024	100	176	196	△36.2%	190	△28.8%	96.9%	9.9%p
	2025	100	100	157	△19.9%	150	△21.1%	95.5%	△1.4%p
	2026	100	150	119	△24.2%	95	△36.7%	79.8%	△15.7%p
핀에듀 과정	2024	200	97	213	△54.4%	183	31.7%	85.9%	56.1%p
	2025	200	120	273	28.2%	257	40.4%	94.1%	8.2%p
	2026	200	250	69	△74.7%	63	△75.5%	91.3%	△2.8%p

주: 2026년 실적은 9월 기준 수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핀에듀과정 내 신규 과정의 경우, 2026년 계획된 10개 중 9월 내 개설된 과정이 2개에 불과함.

<2026년도 핀에듀 과정 신규 교육 계획 및 개설 현황>

연번	과정명	9월 기준 개설 현황
1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AI 윤리	운영중
2	인공지능기본법 실무 완전 정복	운영중
3	AI에이전트가 바꾸는 금융 서비스의 미래	예정 (미개설)
4	자산토큰화(RWA)와 디지털 금융의 새 지평	예정 (미개설)
5	임베디드 금융과 BaaS혁명	예정 (미개설)
6	핀테크 사이버보안: 디지털 금융 시대의 위협과 대응	예정 (미개설)
7	클로드 코워크/스킬/커넥터를 활용한 업무생산성 향상	예정 (미개설)
8	생성형 AI로 만드는 금융 챗봇 개발 실전	예정 (미개설)
9	ChatGPT API로 만드는 핀테크 결제 프로세스 설계	예정 (미개설)
10	Python으로 구현하는 AI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예정 (미개설)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전문가 과정의 수강·수료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자기부담금 없는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과정의 경우 자체 소득이 있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현업 재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교육생의 불참(No-Show) 및 중도 포기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전문가 과정 수료율은 96.9%(2024년)→95.5%(2025년)→79.8%(2026년 9월 기준)로 낮아지고 있음.

○ 민간 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영역에서 현업 재직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기 계약 추진 및 과정 통폐합 등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자체 교육비 부담 능력이 있는 현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청년 예비창업자나 이직(구직) 준비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심화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여 국비 지원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 교육인 핀에듀 과정이 물리적 제약이 없음에도 10개 신규 과정 중 8개가 개설되지 않은 것은 수탁기관의 과업 이행과 부처의 사업 관리가 미흡했던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차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연초에 신속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내 전 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탁기관의 과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전면적인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교육 시장의 콘텐츠와 중복되거나 수요가 저조한 기초 과정은 통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용역계약 체결 업체 집중 재검토 필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교육, 행사, 보안·클라우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외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체결한 용역계약은 총 49건, 279억 9,168만원 규모임.

□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사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수 과업이 동일 기관에 의해 장기간 수행되고 있어 경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4년간 체결된 용역계약 279억 9,200만원 중 47.1%(131억 8,500만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최근 4년간 집행된 전체 용역비(279억 9,200만원) 중 (주)코스콤 단일 기관이 절반 이상인 51.7%(144억 7,000만원)를 수주하였으며,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이하 ‘유니원’, 14.5%),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능률협회’, 12.2%), (주)어텐션포인트(4.7%), 법무법인(유한)화우(이하 ‘화우’, 4.3%)를 포함한 상위 5개사가 전체 용역 금액의 87.4%(244억 6,100만원)를 점유하고 있음.

〈수행기관별 용역계약 체결 현황(2023~2026년 누적)〉

(단위: 건, 백만원, %)

수행기관	건수	계약금액	전체 용역비 대비 비중	수행연도	수의계약 금액
(주)코스콤	10	14,470	51.7%	2023~2026	10,895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3	4,052	14.5%	2023~2025	1,400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8	3,429	12.2%	2023~2026	-
(주)어텐션포인트	1	1,310	4.7%	2026	-
법무법인(유한) 화우	4	1,200	4.3%	2023~2026	-
(주)스토리앤데이터	3	1,038	3.7%	2023~2025	370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2	890	3.2%	2023·2026	458
기타 9개 기관	18	1,603	5.7%	-	61
합계 (16개 기관)	49	27,992	100.0%	2023~2026	13,185

(자료: 금융위원회)

○ 과업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15개 과업군 중 금융클라우드, D-테스트베드, 샌드박스 컨설팅, 일자리 매칭존, 통번역존,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 6개 과업은 4개년 연속 동일 기관이 수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154억 1,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3개년 이상 동일 기관이 수행한 과업군도 8개(4개년 연속 6개 포함)에 달하며, 그 규모는 221억 8,000만원(79.2%)임.

〈과업군별 연도별 수행기관 현황〉

과업군	2023	2024	2025	2026	지원액
금융클라우드	코스콤	코스콤	코스콤	코스콤	88.5억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유니원	유니원	유니원	어텐션포인트	53.6억원
D-테스트베드	코스콤	코스콤	코스콤	코스콤	38.4억원
교육·인력양성	코스콤	코스콤	능률협회	능률협회	23.6억원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	-	능률협회	능률협회	19.9억원
핀테크 큐브	스토리앤데이터	스토리앤데이터	스토리앤데이터	컴퍼니엑스	14.1억원
샌드박스 컨설팅	화우	화우	화우	화우	12.0억원
보안 지원사업 점검	금융보안원	-	-	금융보안원	8.9억원
일자리 매칭존	능률협회	능률협회	능률협회	능률협회	8.6억원
통번역존	렉스코드	렉스코드	렉스코드	렉스코드	4.6억원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케이토마토	오케이토마토	미디어젠	미디어젠	3.3억원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이씨이십일	이씨이십일 ~	이씨이십일	이씨이십일	2.0억원
테스트베드 홍보대행	리컴나인	-	-	-	1.5억원
정산 회계검증	신우회계	신우회계	삼화회계	-	0.9억원
상담시설 공사	스튜디오469	-	-	-	0.1억원

주: 별표 표기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

(자료: 금융위원회)

○ 화우는 샌드박스 컨설팅을 4개년 연속 수행(2억 5,000만원→3억 5,000만원→3억원→3억원, 총 12억원)하였으며, 능률협회의 경우 초기 일자리 매칭 사업(연 2억 1,000만원)에서 출발하여 2025년부터는 교육(2억 9,000만원)과 해외진출 프로그램(10억원)까지 수주 범위를 확장하며 연간 15억원 규모를 수주하는 등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용역계약이 수의계약 중심으로 체결되고, 다수 과업군에서 동일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수행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과업별 계약 방식 및 수행기관 선정 사유, 반복 계약의 불가피성,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 과업에 대한 경쟁입찰 확대 및 신규 수행기관 참여 기회 제고 등 용역계약 체결·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27]: 미흡한 사업 계획 수립 보완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은 금융혁신 기술의 사업화와 청년 실무인재 양성을 연계하여, 청년층 창업·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7년도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	-	-	5,000	5,000	신규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	-	-	3,000	3,000	신규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	-	-	2,000	2,000	신규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은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과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예산안 요구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었음.

27) 세부사업: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1134-303)

○ 이 중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 핀테크 기업 12개사[28]를 선정하여 합성데이터 기반의 1차 AI 테스트와 정량·정성·보안성 검증을 거쳐, 이 중 우수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데이터 환경에서 2차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금융 AI 실증 · 매칭 지원 예산안 세부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전산 구축·운영비	430	테스트환경 구축 100, 운영 100, GPU 180, 법률자문 50
테스트용 데이터	300	신용정보원 합성·샘플데이터 100, 데이터 확보 관리 200
실증·검증·보안검증	2,020	과제실행 지원 576, 정량 검증 600, 검증도구 50, 정성 평가 84, AI 보안성 검증 360, 연동 대응비 300, 성과공유회 50,
사업관리	250	자문 20, 사후 모니터링 60, 통합관리 60, 사업운영 110
합계	3,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내역사업은 청년인재 교육과 인턴십,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예산안 세부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세부내역
교육과정 운영	855	5개 권역별 교육(1,000명), 실무 프로젝트 8주(200명)
인턴십·자격취득 패키지 지원	915	인턴십 3개월(100명, 월 223만 원 지원), 자격 응시료 지원(600명)
채용연계·사업관리	230	채용연계 연 5회 등
합계	2,000	

(자료: 금융위원회)

28) 금융위원회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 시 우대하겠다는 방침임.

○ 동 사업은 5개 권역별 교육, 실무 프로젝트(8주), 인턴십(10~12월), 채용연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생 1,000명, 프로젝트 200명, 인턴 100명(3개월, 월 223만원 지원), 자격 응시료 지원 600명, 채용연계 연 5회로 구성됨. 세부 사업비는 교육과정 운영 8억 5,500만원, 인턴십·자격취득 패키지 지원 9억 1,500만원, 채용연계·사업관리 2억 3,000만원임.

2) 검토의견

(1) 신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적격성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 동 사업은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 미반영 및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협의 등 사전 재정절차가 미흡한바,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연 50억원 규모의 지원이 2년 이상 이어져 중기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 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29]에 따른 신규 보

2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적격성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

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바, 추후 적격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청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제1항[30]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협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반영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현재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함.

(2)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미흡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산 요구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됨에 따라 사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 수요조사[31])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층과 사업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근거로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한국갤럽 위탁

□ 첫째, 설문 문항이 단순 의향조사에 머물러 있어 문항과 실제 사업 내용 간 연계성이 미흡함.

○ 설문 문항(A5~A7, A9)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인가(A5)”, “매칭 서비스가 있다면 참여할 것인가(A6)”, “본 사업 참여 의향(A9)” 등 단순 의향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수요조사 설문지 문항 원문>

문항 번호	문항 원문
A1	귀사(기관)의 업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2	귀사(기관)의 기술(또는 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무엇입니까?
A3	귀사(기관)는 현재 금융 분야 AI 서비스·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고 계십니까?
A4	AI 서비스를 금융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수응답)
A5	정부·유관기관이 실증(PoC) 환경 지원 시 귀하(귀사)의 사업화 속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6	귀사의 AI 기술(또는 수요)과 적합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7	청년인재 실무교육·인턴십·프로젝트 매칭 신설 시, 채용 연계 목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8-1	귀사는 최근 1~2년간 AI 관련 직무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A8-2	청년인재 프로그램 신설 시, 귀사의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9	본 사업 추진 시 귀사(기관)의 참여 의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자료: 금융위원회)

○ 실제 예산 집행 시 수반되어야 할 자부담(비용 매칭) 의향, 구체적인 인턴 채용 확약, 실증(PoC) 시 내부 데이터 제공 의무 등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이나 책임에 대한 질의가 누락되어 있으며, 참여 조건이나 의무 없이 정부 지원 여부만을 묻는 질문 구조상 높은 긍정 응답이 도출되는 것을 근거로 50억원 규모의 실수요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A5(“사업화 속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와 A8-2(“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는 지원 시 ‘도움’과 ‘기여’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정도를 묻는 가정형 구조로서 비용 대비 효과나 대안과의 비교 없이 효과만을 묻고 있어 중립적인 실효성 평가로 보기 어려움.

□ 둘째,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실제 사업 대상 기업 간 매칭 기준이 미흡함.

○ 동 사업의 실질적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① 인프라와 금융데이터를 연동해 줄 대형 금융회사와 ② 인턴을 수용하고 직접 기술을 실증할 적격 핀테크·AI 기업(12개사 내외)의 명시적인 참여 의향이 필수적이나, 설문의 업종 보기(A1)는 개인(예비창업자)·핀테크·AI·IT·그 외 분야로만 구성되어 금융회사를 구분할 수 없으며, 본 조사는 센터 포털 가입자 중 홍보 수신에 동의한 자가 자발적으로 응답한 230명(핀테크 70명, 그 외 분야 60명, AI·IT 56명, 예비창업자 44명)에 불과함.

○ 또한 금융위원회는 표본을 ‘230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구성하였다고 설명하나, 예비창업자 44명이 “귀사(기관)”를 주어로 하는 실증·매칭 문항(A3, A5, A6, A9)에도 기업·기관과 동일하게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문항 해석상 기업·기관의 수요와 구분되지 않음. 대표적으로, 본 사업 종합 참여 의향(A9)의 전체 긍정 응답률 60.4%는

예비창업자의 응답률(81.8%)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기업·기관(186개사)만을 기준으로 재환산하면 약 55.4%(103개사) 수준으로 하락함.

□ 셋째, 설문 문항 구성 및 응답의 타당성이 미흡함.

○ 종합 참여 의향을 묻는 A9 문항은 '금융 AI 실증·매칭지원'과 '청년 인재육성'이라는 성격이 판이한 2개 세부사업을 단일 문항("본 사업(금융 AI 실증·매칭지원, 청년인재육성)")으로 일괄 질의하고 있어, 응답자가 실증 인프라를 원하는 것인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것인지 사업별 개별 수요 파악이 불가능함.

○ A3 문항 역시 금융 AI 서비스·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고 있는지 묶어서 질문하여, 기술을 공급하는 AI·핀테크 기업의 수요와 이를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의 수요가 전혀 분리되지 않음. 대외적으로 제시된 '금융 AI 도입 현황(77.8%)' 수치 또한 '실제 도입 중(27.8%)'에 아직 계획 단계인 응답(50.0%)'을 합산한 것이어서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보기 어려움.

(3)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금융회사 참여 여건 조성 및 보안대책의 면밀한 점검 필요

□ 2027년도 신규 편성된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내 AI 실증 테스트 단계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8개 금융회사에 연동 대응비(3억원) 및 데이터 확보 관리비(2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나

수요조사가 금융회사의 참여 의향을 구분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모델의 전제인 금융회사 매칭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확실함.

□ 첫째, 참여 대상 금융회사 풀(Pool)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사업 착수 단계의 매칭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매칭 목표는 8개사이나, 현재 후보로 거론된 금융회사는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에 그치고 있으며, 7개사 모두 2026년 9월 말 기준 참여 여부가 '미정'이고 제공 데이터도 '협의 예정'인 상태임.

□ 둘째,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고' 등 보안위협 관점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9월 30일경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 등[32]에서 AI 기반 침투테스트 도구('ARTEX' 등)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쇄 공격으로 고객 및 외주직원 정보가 유출되었음.[33]

32) [은행] 신한, 국민, 부산, 하나, [저축] 예가람, 웰컴, 디비, 오케이 [여신] 현대캐피탈, 산은캐피탈, [온투] PFCT, 모우다, [전금] 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 스트리미, 프라뱅, [상호] 새마을금고중앙회

33) 금융위원회,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2026.10.14.

○ 이번 해킹 사고의 핵심 특징은 경계가 엄격한 본점 핵심 전산망이 아니라 외부 제휴 채널,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외주 솔루션, 그리고 관리가 취약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외부 접점이자 '제3자 IT 리스크'를 집중 타격하였다는 점임.

○ 금융위원회는 기존 D-테스트베드 사업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데이터를 단독 활용하는 반면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사업'은 합성데이터와 매칭 금융회사의 실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을 차별화 사유로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이 통제한 엄격한 환경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보안원과의 통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참여 팀의 보안 적격성 검증, 이상 징후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이고 사업 수행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4-1)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청년기업 고용유지 여력 검토 필요

□ 본 사업은 청년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에 인턴 인건비(6억 6,900만원, 월 223만원×3개월×100명)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인턴 채용대상 기업(안)으로 실증참여 기업 12개사, 협력기업 20개사, 센터 보육기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인턴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액 지원(월 223만원×3개월)하도록 설계한 정책적 취지는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다수 기업의 인턴 채용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4대 보험 기업부담금 및 기타수당은 기업이 자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실질적 고용 의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턴십이 연말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34]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7년도 12월 근무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며, 이후 근무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인턴의 근로관계는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 대상 기업군의 재무 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원이 청년 고용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에 그쳐 OECD 주요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35].

○ 혁신 핀테크를 표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 또는 자금난 위

3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5) 김진철,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제21-25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12, p. 1.

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청년 인턴을 투입하고 자금 지원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회사의 폐업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이어져 구직자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성과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2)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기업 수요를 고려한 자격취득패키지 재설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인턴 참여자 100명 및 교육 우수 수료자 500명 등 총 600명을 선정하여 SQLD(SQL개발자),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처리기사, KBI 금융DT테스트 등 자격증 5종에 대한 응시료 전액 및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응시료 지원 대상 자격증 5종 현황>

자격명	시행기관	국가/민간	응시료	시행횟수
SQLD(SQL개발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간	5만원	연4회
ADs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간	5만원	연4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	필기 1.78만+실기 4.08만원	연2회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	필기 1.94만+실기 2.26만원	연3회
KBI 금융DT테스트	한국금융연수원	민간	4.4만원	연2회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필기시험 위주의 범용 자격증이 많아 고도의 데이터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을 다루는 핀테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5년 SW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SW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30.0%)'으로 나타났음[36].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스펙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실무와 괴리된 자격취득 패키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인턴십 성과지표 재설계 필요

□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인턴 채용 100건(3개월 이상 수행)'으로, 이는 사업 지원기간(3개월) 동안 인턴 100명을 배치한다는 사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경우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정규채용 전환율 및 6개월 고용유지율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나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결과지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3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5년 SW산업 실태조사』, 2025, p. 30

○ 동 지표의 2027년 목표치(100건)는 ‘예산·사업규모에 기반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인턴 채용지원금의 산출내역(100명×3개월×223만원=6억 6,900만원)에 반영된 인원과 동일함. 따라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는 구조로서 고용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 국회예산정책처도《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기존 청년 인턴 사업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단순 참여 인원 지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노동시장 진입자 수’ 및 ‘진입 이후 재직기간’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장기적인 고용효과 지표를 통해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37].

○ 과거 유사 사업의 선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실시했던 ‘Pre-인턴십’은 2020회계연도 정무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17.86%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38], 당시 국회는 교육 수료 후 채용된 인턴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개편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후속사업으로 실시된 ‘핀테크 인턴십(2022~2024년)’에서도 2023년 인턴 27명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관리되지 아니하였음.

37)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2013. 10, p. 28, pp. 34~35.
38) 국회 정무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21.8. pp.130-132

<본 사업의 인턴십, Pre-인턴십, 핀테크 인턴십 비교>

구분	Pre-인턴십 (1134-301, '20~'21)	핀테크 인턴십 (1134-301, '22~'24)	본 사업 인턴십 (1134-303, '27~')
지원대상·연령	핀테크 기업 인턴십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구직자 등(연령제한 없음)	청년(19~39세) 금융도메인 특화+AI실증사업과 연계한 채용연계 지원
지원 내용	'20 연 1.5억 '21 연 1.62억	'22 연 1.62억원 '23 연 1.62억원 '24 연 0.6억원	'27 연 6.69억원
인턴 참여 인원	'20 25명 '21 27명	'22 27명 '23 27명 '24 10명	100명
1인당 지원단가	인턴 인건비 ('20 200만원x3개월) ('21 200만원x3개월)	인턴 인건비 ('22 200만원x3개월) ('23 200만원x3개월) ('24 240만원×3개월)	인턴 인건비 (월 223만원×3개월)
참여기업 부담	자부담 없음	자부담 없음	4대보험 기업부담금 및 기타수당
참여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권고)
최근 수료·취업(전환) 실적	'22년부터 핀테크 인턴십으로 명칭변경	'24년 사업 종료	사업 신규 편성('27년 최초)
당시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	'20 예산: 3억 '20 집행액: 2.91억 '21 예산: 3억 '21 집행액: 2.84억	'22 예산: 3억원 '22 집행액: 2.88억원 '23 예산: 4.55억원 '23 집행액: 4.43억원 '24 예산: 2.5억원 '24 집행액: 2.07억원	-

주: 내역사업 중 인턴십 비용만 기재(예: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은 2,000백만원이나, 세부사업 중 인턴 채용지원금 669백만원만 기재

(자료: 금융위원회)

□ 본 사업은 'Pre-인턴십', '핀테크 인턴십' 등 과거 사업 대비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편성한 만큼, 정규직 전환율 등을 공식 성과지표로 도입함으로써 인턴십이 단기 근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규 채용 등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참여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연계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질적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자금세탁방지추진[39]: 특정 업체 중심의 예산안 산출 및 해외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미흡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과 CTR(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1,900만원(239.3%) 증가한 32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금세탁방지추진	805	969	969	3,288	2,319	239.3
-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738	884	884	1,117	233	26.4
- FATF 상호평가 후속 점검대응	5	24	24	121	97	404.2
-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61	61	61	120	59	96.7
-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구축	-	-	-	1,930	1,930	-

(자료: 금융위원회)

39) 세부사업: 자금세탁방지추진(1331-303)

2) 검토의견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추진” 세부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으로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추적 솔루션 도입 예산 19억 3,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제도권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만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지갑 등 블록체인상 거래(온체인 거래)는 흐름 파악과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가상자산거래소 의심거래보고 접수 및 분석 건수>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분석건수
2023년	16,076	1,778
2024년	19,658	1,496
2025년	62,055	1,953
2026. 1. 1.~9. 28.	59,577	522
합계	157,366	5,749

(자료: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 접수건수는 2023년 16,076건에서 2025년 62,055건으로 약 3.9배 증가하였고, 2026년에도 9월 28일까지 59,577건이 접수되었음. 다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로, 온체인 거래의 증가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는 아님.

□ 한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운영(7135-324)」 사업에서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Reactor 1개 계정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으로 계정당 계약 단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음.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한 Reactor 단가(계정당 1억 3,000만원)와 다른 등 동일 제품이 부서별로 별도 도입되고 있음.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 · 추적 솔루션 도입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	산식	계정 수	금액
Data Solutions	600 × 1계정	1	600
AI Agent	400 × 1계정	1	400
Reactor	130 × 6계정	6	780
교육·자문료	150(연간 1식)	-	150
합계			1,930

주) 솔루션 이용료는 Data Solutions, AI Agent, Reactor의 합계 1,780백만원이며, 교육·자문료 150백만원을 포함하면 1,930백만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자료: 금융위원회)

(1) 특정 업체(체이널리시스) 독점 전제 예산 편성의 타당성 검토

□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용 온체인 솔루션 시장의 타사 제품과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복수 견적을 확보하고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 절차 없이 특정 업체의 단일 견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금융정보분석원은 예산안 산출내역에 특정 업체 체이널리시스

(Chainalysis)의 고유 상품명인 'Data Solutions', 'AI Agent', 'Reactor'를 명시하였음. 이 중 심사분석실에서는 Data Solutions 1개, AI Agent 1개, Reactor 3개 계정을, 심사분석 3개 과에서는 Reactor를 과별 1개 계정씩 사용하여 Reactor는 총 6개 계정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함.

<주요 온체인 분석 솔루션 기능 비교>

기능	Chainalysis	TRM Labs	Elliptic
시각화 수사	Reactor	TRM Forensics	Elliptic Investigator
데이터·모니터링·API	Chainalysis DS	TRM Transaction Monitoring	Elliptic Lens
AI·자동화	Rapid(공식 AI 제품), Reactor 연계 AI 기능	자동 탐지·행동·노출 리스크 모델, AI 기능 내재화	Elliptic AI & Agents (공식 AI 제품), Lens 실시간 모니터링·자동화

(자료: 각 업체 공식홈페이지 제품 소개 자료 기반 재구성)

○ 금융정보분석원은 체이널리시스가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40]은 단순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전제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을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특정 기업의 과금 체계와 고유 제품명을 명시하여 편성할 경우 특정 회사 중심으로 제품 사양서가 설계되어 타 경쟁사의 진입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 추진 시 최소 2개사 이상의 복수 견적 및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확보하여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완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41]

(2) 해외 클라우드(SaaS) 기반 작동에 따른 보안 대책 마련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체이널리시스 등 주요 해외 온체인 분석 솔루션은 외부 인터넷 연동형 클라우드(SaaS)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수사 기밀의 해외 유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심사분석관이 외부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해외 SaaS 검색창에 특정 범죄 의심 지갑 주소를 조회할 경우,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이 현재 어떠한 지갑과 의심 자금을 분석·추적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회 내역 등이 민간 사업자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잔류하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국가 핵심 금융정보와 법집행기관 연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음.

○ 또한, 동 솔루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가 아니라 해외 민

41) 금융위원회는 특정 업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입찰공고 시 정보보안 등 요건을 입찰 참가자격 또는 기술규격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간 사업자의 통제 아래 운영되므로, 해당 사업자의 서버 장애·보안 사고·정책 변경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공공·금융 데이터의 분석·처리가 국내 법령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데이터 주권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력 정보의 범위 제한, 외부 사업자의 로그 기록 삭제 및 비식별화 의무, 그리고 솔루션 추출 결과를 내부망으로 반입할 때 요구되는 '망간 자료전송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5.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4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이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FIU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억 6,100만원(205.4%) 증액된 146억 6,2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870	4,801	4,801	14,662	9,861	205.4
- FIU전산망구축운영	4,373	4,801	4,801	4,079	△722	△15.0
- AI기반 심사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	-	-	8,104	8,104	-
- RBA시스템 개선구축	497	-	-	2,479	2,479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결과를 환류(Feedback)받아 AI 혐의도 산정 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나, 현행 사후관리 통계 체계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함.

42) 세부사업: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1332-501)

□ 첫째, 사후관리 통계가 단순 누계로 관리되고 있어 시계열적 성과 검증에 한계가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따라 제공한 총 건수는 29만 3,833건이나, 통계 추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연도별 회신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단순 누계로만 운영하고 있음.

<법집행기관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기 관	제 공			처리중	처리완료			
	소계	피드백 대상[2]	피드백 미대상[3]		소계	소 극[4]	중 간[4]	적 극[4]
검찰청	2,999	2,378	621	1,271	1,107	202	651	254
경찰청	3,875	3,206	669	1,893	1,313	316	567	430
국세청	282,660	211,032	71,628	22,381	188,651	67,734	73,490	47,427
관세청	1,861	1,099	762	485	614	179	356	79
금융위	7	6	1	4	2	-	2	-
선관위	5	4	1	-	4	-	4	-
해경청	240	144	96	14	130	37	52	41
국정원	24	18	6	9	9	-	9	-
공수처	26	25	1	25	-	-	-	-
행안부	2,136	871	1,265	284	587	299	178	110
합 계	293,826	218,783	75,043	26,366	192,417	68,767	75,309	48,341

주1. 2018.1.1.~2026.8.31.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라 회신한 정보제공 회신서 기준(정보 부존재 회신 포함)
주2. 정보제공 회신서에 정보제공 요구한 대상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주3. 정보제공 회신서에 정보제공 요구한 대상자 정보가 없어 정보 부존재 회신된 경우
주4. 피드백 기준(적극, 중간, 소극)
- 소극 : 무혐의, 입건유예(검찰청), 공소권 없음(검찰청), 내사종결(경찰청) 등
- 중간 : 기소중지(검찰청), 내사중지(검찰청, 경찰청), 누적 자료 활용(국세청) 등
- 적극 : 기소(검찰청), 검찰송치(경찰청), 고발.추징(국세청) 등

(자료: 금융위원회)

○ 범죄 수사의 핵심 기관인 경찰청(피드백 완료율 41.0%, 미완료 1,893건)과 검찰청(피드백 완료율 46.6%, 미완료 1,271건)의 피드백 완료율이 가장 저조하며, 누적 집계 기간이 8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미완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처리 중'이 아니라 피드백 미이행일 가능성이 있으나 경과기간별 분포 통계가 부재하여 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연도별 성과 추이, 수사·과세기관의 시계열별 정보 활용도 및 환류 실적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 제공 연도별 처리 결과(적극·중간·소극)를 시계열로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보 제공 실적이 특정 기관(국세청)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사기관의 장기 미회신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8년 8개월간 전체 정보 제공 건수(29만 3,833건) 중 96.2%에 달하는 28만 2,660건이 국세청 단일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리 완료 건수(19만 2,417건) 기준으로는 국세청의 비중이 98.0%(18만 8,651건)에 이름.

○ 이에 따라 전체 완료율이 87.9%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세청의 높은 비중 및 완료율(89.4%)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청 처리 완료건 중 35.9%(약 6만 7,734건)는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 '소극' 판정

건으로 확인됨.

○ 반면 국세청을 제외한 9개 법집행기관(검찰청·경찰청·관세청·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및 기타 4개 기관)의 제공 건수는 동 기간 1만 1,173건으로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으며, 피드백 대상 7,751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3,766건(완료율 48.6%)에 머무르는 반면, 과반인 3,985건(51.4%)은 수년째 '처리 중(미회신)'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① 시계열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② 국세청에 편중된 사후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검찰청·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정보 활용 결과를 지연 없이 피드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절차적 인센티브나 기관 간 협약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4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소요의 불확실성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1억 5,200만원(△62.1%) 감소한 470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46,758	124,185	124,185	47,033	△77,152	△62.1
- 기여금 지원	336,804	119,446	119,446	45,429	△74,017	△62.0
- 인프라 구축	9,707	4,737	4,737	1,604	△3,133	△66.1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247	2	2	-	△2	△-100.0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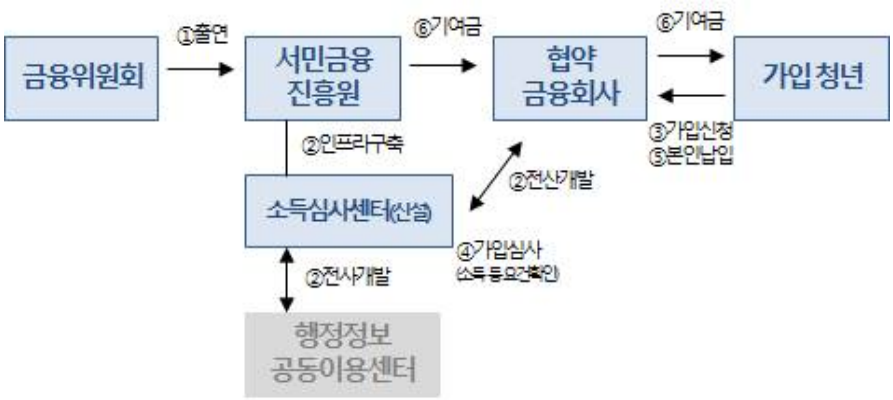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

43)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 동 상품의 기본구조는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협약은행[44]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3.0%~6.0%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45]을 제공하는 것임.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44)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4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편,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말 신규 가입을 종료하고, 2026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계좌 유지·관리 및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갈아타기)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23.7.10.~'25.12.31.) 동안 총 255.4만명이 가입한 후 가입유지자 수가 2026년 1월초 기준 205만명, 9월말 기준 153만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1차 가입기간('26.7.27.~8.7.) 동안 138.5만명이 가입하였고,[46] 이 중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한 인원은 26.2만명임.

○ 또한 2026년 2차 가입기간('26.10.7.~10.16.)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한 인원은 68.8만명이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로서 갈아타기를 신청한 인원은 9.8만명임.[47]

○ 2027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40억 1,700만원 감소한 45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2026년 중 약 15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것으로 가정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48]

---

46)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에는 총 234.3만명이 신청하였고,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7만명 중 138.5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최종 가입하였음.

47) 2차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48) '26~'27년 중 가입유지자 수 변동 추정치('26.1월 205만명 → '27년말 48만명: 약 150만명 갈아타기 가정), 가입자별 기여금 매칭비율과 월 납입액을 감안한 1인당 평균 월 기여금(약 2.55만원, 일시납입자의 경우 2.30만원) 등을 고려해 산출

□ 참고로,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기준 청년이 매월 5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6%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일반형), 일반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한 청년 및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49] 보다 강화된 12%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음(우대형).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② 총급여 7,500만원 이하[50]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③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임.

○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단축된 3년이고, 본인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51]하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52]

□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은 2026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2027년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전년 대비 9,564억 6,400만원(128.4%) 증가한 1조 7,010억 8,900만원이 편성됨.

---

49) (중소기업 재직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영세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50) 단,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

51)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2~3%

5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계획안(미래대응기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청년미래적금	-	744,625	744,625	1,701,089	956,464	128.4
- 기여금 지원	-	736,688	736,688	1,691,412	954,724	129.6
- 인프라 구축	-	7,627	7,627	9,367	1,740	22.8
-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	310	310	310	-	-

주: 2026년도 계획은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53]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54]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으로,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53) (기존)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변경) 가입요건 폐지

54) (기존) 12%(월 최대 6만원) → (변경) 15%(월 최대 7.5만원 지원), 25%(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월 최대 12.5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기존안-변경안 비교>

구분			기존(2026년)	변경(2027년 안)
개인소득[1]	무소득자[2]		가입불가	일반형으로 가입가능
	기여금 미지급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입자 전체 기여금 지급
	일반형	일반 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개인소득요건 폐지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매출요건 폐지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좌동
가구 중위소득	일반형		200% 이하	가구소득요건 폐지
	우대형		150% 이하	좌동
기여금 비율	일반형		6%	좌동
	우대형		12%	15% 또는 25%[3]
대상자 수			580만명('24년)	960만명('26년)
지원규모			최대 약 320만명 * 실가입자 약 200만명 예상	누적 440만명 * '26년 가입 200만명 + '27년 신규 240만명
기여금 예산			7,367억원	1조 6,914억원

주1) 총급여 1억원 초과 청년(4.8만명)은 전체 소득있는 청년(719만명)의 약 0.7%('25 복지패널, 금융연)

주2) 무소득·유소득 포함 전체 청년(만19~34세) 수 약 960만명

주3) 우대형 대상자 중 지방 중소기업 근무청년에 대해 정부기여금 추가 매칭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소요의 불확실성

□ 2027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40억 1,700만원(△62.0%) 감소한 45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2026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약 15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가입유지자 수의 감소와 가입자별 정부기여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까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변동 및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실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기여금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2027년도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실적을 보면, 2026년 1차 가입기간 중 26.2만명이 전환하였고, 2차 가입기간 중 9.8만명이 전환을 신청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중 갈아타기 규모를 약 32~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가정한 2026년 전체 전환 규모 150만명의 약 21~24%에 해당하는 수준임.

- 따라서 당초 전환 가정에 부합하려면 2027년 중 약 114~118만명의

추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2027년 추가 갈아타기 실시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 수는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외에 일반 중도해지 등에 따라서도 변동되고 있음.

- 2026년 1~8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건수는 총 50.6만건으로, 이 중 일반 중도해지가 22.8만건(45.1%), 특별 중도해지가 27.8만건(54.9%)이며, 특별 중도해지 중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가 26.2만건을 차지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현황>

(단위: 만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1~8월	합계
총 해지 건수	4.2	19.2	27.3	50.6	101.3
일반 중도해지	4.2	19.0	26.4	22.8	72.4
특별 중도해지	0.0	0.2	0.8	27.8	28.9

주: 2026년 특별중도해지 건수에 '미래적금 갈아타기' 건수 26.2만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이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 수는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일반 중도해지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가입유지자 수 및 정부기여금 소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 역시 2027년 중 추가 갈아타기 실시 여부 및 전환 규모 등에 따라 기여금 예산 소요의 변동성이 크고, 이를 사전에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은 종료되었으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2027년 실제 가입유지자 수가 많을 경우에도 기여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 및 해지 실적과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가입자 변동에 따른 정부기여금 소요를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당초 예상보다 예산 소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고 일부 가입자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원 수준이 높으며, 2027년에는 지원대상 및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청년들이 각 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전환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2)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원의 회계 · 기금 분리 편성 부적정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모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의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방식이 유사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음.

○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급 소요는 감소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지급 소요는 증가하는 등 두 사업의 재정소요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그런데 2026년에는 두 사업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7년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일반회계에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됨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서로 다른 회계·기금에서 운영될 예정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계획안	
청년도약계좌	일반회계	124,185	일반회계	47,033
청년미래적금		744,625	미래대응기금	1,701,089

○ 이처럼 사업목적과 수행기관, 정부기여금 지급방식 등이 유사하고 가입자 전환 규모에 따라 재정소요가 상호 연동되는 사업을 일반

회계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은 재정운용의 일관성 및 사업 간 연계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 두 사업의 예산 소요가 함께 변동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간 재원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목적과 지원방식의 유사성, 사업 간 재정소요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 필요가 있음.

7.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55]: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햇살론유스 공급목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8억 8,400만원(△36.1%) 감소한 828억 1,6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129,700	129,700	82,816	△46,884	△36.1

(자료: 금융위원회)

□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정부 출연금(일반회계 및 복권기금)과 금융권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을 공급해 왔으며, 2026년도 중에는 총 6조 2,100억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5) 세부사업: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1831-889)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및 보증공급액>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예상)	'27년(예상)[1]
	민간 출연금	2,296 (44.3%)	2,741 (52.5%)	3,028 (45.3%)	4,396 (52.7%)	5,759 (54.6%)	9,321 (50.1%)
	정부 출연금	2,890 (55.7%)	2,480 (47.5%)	3,660 (54.7%)	3,939 (47.3%)	4,797 (45.4%)	9,301 (49.9%)
보증재원 합계		5,186	5,221	6,688	8,335	10,556	18,622
	민간	37,346	33,500	27,500	38,800	35,800	42,800[2]
	정부	16,254	16,800	23,300	23,300	26,300	32,800
공급규모 합계		53,600	50,300	50,800	62,100	62,100	460,802

주1) 재원 및 공급규모에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 외 민생지킴대출 수치도 포함
주2) 햇살론 특례보증 재원 중 민간재원(56,219백만원) 공급규모 2,500억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2021년 6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이라 함) 개정을 통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었음.

<금융회사 출연 현황>

(단위: 억원)

업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은행	1,078	1,184	1,291	2,162
저축은행	126	478	562	597
상호금융	736	729	780	1,110
여신전문금융	166	159	178	241
보험	191	190	217	287
합계	2,296	2,741	3,028	4,396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진흥원에 출연하게 된 금융기관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속적으로 신설[56]하는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57]

□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품 유사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를 통합·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성격이 유사한 기존 진흥원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하고,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하도록 함.

---

56) 근로자햇살론(2010. 7.), 햇살론15(2019. 9.), 햇살론유스(2020. 1.), 햇살론카드(2021.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022. 9.),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3. 3.), 햇살론119(2025. 4.)

57)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에 따른 불편사항(예시)(자료: 금융위원회)

❶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취급)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도 은행 방문시 은행은 근로자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15 신청

※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11.5% 內 + 진흥원 보증료율 2.5%(최초 납부) = 14% 內
(햇살론15) 대출금리 6% + 진흥원 보증료율 9.9% = 15.9%

❷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국민도 일단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된 후에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 (햇살론15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근 3개월 내 햇살론15 보증신청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❸ 신용평점 하위 10%를 초과하는 국민은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되어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불가하여 사각지대 발생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민간**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에 정부재정 총 5,273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2조 5,300억원 규모의 대출(햇살론 특례보증 2조 2,300억원, 햇살론 유스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828억 1,600만원, 복권기금 계획액으로 4,445억 7,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정부재정 및 보증공급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안)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00	-	129,700	82,816	-	82,816
복권기금	303,900	46,100	350,000	397,591	46,980	444,571
정부재정	433,600	46,100	479,700	480,407	46,980	527,387
공급규모	2,330,000	300,000	2,630,000	2,230,000 (2,480,000)주)	300,000	2,530,000

주: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500억원) 합산 시 햇살론 특례보증의 총 공급규모는 2조 4,8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정부는 미취업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 지원 및 저소득·저신용 청년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에 청년기회자금 사업 계획안 1,026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7년도 청년기회자금 사업 계획안(미래대응기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청년기회자금	-	-	-	102,676	102,676	순증
- 보증재원	-	-	-	90,000	90,000	순증
- 이차보전·이자면제 재원	-	-	-	12,676	12,676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기회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의 취업준비 기간 중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생애 총 2,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 대한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를 통해 금리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2027년에 연간 약 8만명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4,5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임.

<청년기회자금 사업(미래대응기금) 개요>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 **(상품조건(안))** 생애 총 2,000만원 한도로 장기·저리 대출
○ 생애 2,000만원,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6개월 간격) 한도로 대출
○ 상환방식은 거치 최대 8년, 상환 최대 7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취업준비 청년의 경우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별도 신청·증빙)

<이자면제 프로그램 운영(안)>

대상	○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운영 방식	○ **(이자면제 방식)** 취업준비의 거치기간(최대 8년) 중 이자 납입 면제를 적용하고 면제기간 중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대납 ○ **(취업준비 증빙 방식)** 실업급여 등 旣운영 제도의 증빙 수준에 준하여 운영 ○ **(이자면제 기간)** 면제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기간 만료 전 재증빙시 기간 연장

○ 일반 미취업자는 연 4%(1%p 보증료율 별도)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1.6%p 이차보전(잠정)

<대상별 금리수준(안)>

일반	4% (1%p 보증료율 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9% (△1.6%p 이차보전, △0.5%p 은행 자체 금리 인하) (0.1%p 보증료율 별도)
고졸 미취업청년	2.4% (△1.6%p 이차보전) (0.1%p 보증료율 별도)

□ **(공급목표)** 연간 약 8만명 대상으로 총 4,500억원 공급

□ **(재원소요)** 보증재원 및 이차보전·이자면제 재원으로 총 1,027억원 소요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햇살론유스 공급목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현재 햇살론유스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및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2027년 미취업 청년에 특화된 청년기회자금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서 미취업 청년을 제외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2027년 청년기회자금을 통해 약 8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4,5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인 한편,[58] 햇살론유스의 공급목표도 전년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었던 미취업 청년이 청년기회자금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58) 청년기회자금 연간 공급목표 4,500억원 산출근거(자료: 금융위원회)

4,500억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대학(원)생 제외) 약 267만명 × 예상 이용률 3% × 인당 이용금액 550만원 - 예상 이용률 3% : 햇살론유스 실적상 유형별 대상자의 1.7%(미취업자)~5%(사회적배려대상자)가 햇살론유스를 이용함을 고려 - 인당 이용금액 550만원 : 1회 한도 500만원 × 80% + 연간 한도 750만원 x 20%(햇살론유스 운영실적 감안)

□ 우선, 햇살론유스는 2020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2026년 8월말 기준 전체 보증잔액 8,408억원 중 미취업 청년의 보증잔액이 4,561억원으로 54.2%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 8월말 기준 햇살론유스 대상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증잔액	보증잔액 비중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3,231	38.4%
	미취업청년	**4,561**	**54.2%**
소계		**7,791**	**92.7%**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541	6.4%
사업자	청년사업자	76	0.9%
합계		**8,408**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 햇살론유스의 주요 지원대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햇살론유스의 신규 보증수요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햇살론유스의 최근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신청인원 10만 6,547명 중 8만 6,361명(81.1%), 2026년 8월까지는 신청인원 7만 2,307명 중 5만 7,724명(79.8%)에 대해 대출이 실행되는 등 최근 신청인원의 약 80%에 대해 대출이 실행되고 있음.

○ 신규 보증공급액은 2024년 1,856억원, 2025년 2,41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연간 3,000억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26년 8월말 기준 신규 보증공급액은 1,609억원임.

〈햇살론유스 보증 공급 현황〉

(단위: 건,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8월
신청인원(A) (신청건수)	71,007	103,126	114,243	135,721	92,951	106,547	72,307
지원인원(B) (실행건수)	57,868	91,222	97,110	106,533	66,462	86,361	57,724
지원율 (B/A)	81.5	88.5	85.0	78.5	71.5	81.1	79.8
신규 보증공급액	2,234	3,452	3,094	3,016	1,856	2,410	1,609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을 모두 포함한 상황에서도 최근 보증공급 실적이 연간 3,0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7년부터 주요 지원대상인 미취업 청년이 제외됨에도 공급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실제 보증수요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전반의 금융이력 부족[59] 등에 따른 제도권 금융 이용의 어려움과 자금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공급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청년층의 정책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햇살론유스의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60] 취급 기관의 자체 홍보를 통한 고객 유입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 확대[61] 등도 함께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59) 3년간 신용거래 이력 미보유자 비율 : 20대 이하 47.6%(350만명), 30대 23%(191만명)(NICE, '26.6.)
60) '27년 국민, 우리, 농협은행 신규 출시 예정(현재 8개 은행)
61) 위탁보증의 경우 고객이 취급 은행에서 보증 심사·대출 신청을 함께 처리하여 취급 은행의 자체적인 홍보 유인이 높음(현재 전북, 하나, 케이뱅크 도입 중, 기업은행 '26년 중 도입 예정)

○ 그럼에도 기존 보증잔액에서 미취업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과 최근 보증공급 실적 등을 고려하면,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햇살론유스의 공급목표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만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햇살론유스의 최근 보증공급 실적과 청년기회자금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햇살론유스의 공급목표 및 보증재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년기회자금 별도 신설의 적정성 및 상품 간 중복 이용에 따른 채무부담 관리 필요

□ 금융위원회는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신설되면서 상품 체계가 복잡해지고, 유사한 상품 간 지원대상 및 취급 금융기관 등의 차이로 인해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를 통합·개편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는 한편, 햇살론유스는 별도 상품으로 유지하였음.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품체계 개편 이후 1년 만인 2027년에 기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미취업 청년을 분리하여 별도의 청년기회자금 사업을 신설할 계획임.

○ 청년기회자금은 기존 햇살론유스와 지원대상의 연령 및 소득요건이 동일하고 보증비율도 100%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취업준비 기간 중 이자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상품임.

〈 '청년기회자금' 및 '햇살론 유스'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청년기회자금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원)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대출한도	1인당 생애 2,000만원 *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 900만원
대출금리	일반: 4% (보증료 1.0%p 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고졸 미취업자: 2.4% (이차보전 △1.6%p)(보증료 0.1%p 별도) * 취업준비 기간 중 거치기간 이자면제	일반: 4% (보증료 1.0%p 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보증비율	100%	100%
2027년 공급목표	4,500억	3,000억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8년 이내 상환기간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8년 이내 상환기간 7년 이내)

주: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은 2027년 개편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기회자금의 신설은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는 청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햇살론유스보다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기존 햇살론유스 역시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증상품으로, 기존 상품 내에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26년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이 유사 상품의 통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존 햇살론유스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청년기회자금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별도 상품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기회자금과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구분되어 중복 이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청년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금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상품 간 중복 이용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임.

○ 이처럼 청년의 취업·창업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청년기회자금과 햇살론유스의 생애 대출한도가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설정되어,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할 경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누적되면서 청년의 상환능력에 비해 채무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년기회자금의 별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신설할 경우 청년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상품 간 중복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대출규모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62]할 필요가 있음.

62)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청년기회자금은 저금리·이차보전·이자면제·장기간의 상환기간 등 상품 이용 청년이 본인의 상환여력 내에서 안정적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청년기회자금 이용자에게 재무상담 등 안내를 강화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8. K-민생지킴대출[63]: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 상품설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K-민생지킴대출" 사업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하고,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과 복지연계 기능을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7년도 K-민생지킴대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K-민생지킴대출	-	-	-	300,000	3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K-민생지킴대출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K-민생지킴대출: 3,000억원(사업출연금(350-02목))**
- 기본대출 4,000억원(= 40만명 × 100만원) + 추가대출 2,000억원(= 기본대출의 50% 예상)
※ 매년 6,000억원 공급, 매년 5%씩 최종(10년간) 연체율 50% 가정, 상환기간 10년(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상품안 가정
→ 연 6천억원 공급 시 27년도 정부재정 투입은 연 3,000억원 필요
(연도별 공급분에 필요한 직접대출 재원을 정부·민간[64]이 50%씩 부담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63) 세부사업: K-민생지킴대출(1831-894)
64) 민간 재원 부담분은 전신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같이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2027년 3,000억원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2027년 중 원리금상환액 및 휴면예금운용수익 등 2,600억원 예상)과 금융회사 특별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구성할 계획임.

□ 진흥원은 서민·취약차주가 소액의 급전 필요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2023년 3월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 대출)을 공급해왔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로, 금리 12.5%, 대출한도 100만원, 만기 2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구조임.

□ 그러나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평점 하위 20% 초과인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이 불가능한 등 다소 엄격한 신용·소득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일부 취약차주에게는 높은 수준의 금리(12.5%)[65] 및 제한적인 한도(최대 100만원)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2027년 중·저신용자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상품인 K-민생지킴대출을 출시할 계획임.

○ K-민생지킴대출의 지원대상은 신용 하위 50% 이하로 소득요건이 없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금리 4.5%, 대출한도 200만원(최초 100만원,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 만기 10년으로 설계되었음.[66]

○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 부담 최소화[67] 및 장기적인 재기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였다는 입

65)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월 원리금상환액은 100만원 대출 시 47,307원임.
66) K-민생지킴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비교(자료: 금융위원회)

장으로,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취약차주와 장기 접점을 유지함으로써 필수 복지, 제도권 금융 진입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음.

<K-민생지킴대출 사업 개요>

○ **(내용)** 한도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금리 **4.5%**, 만기 **10년**
*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1만원)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 시**

❶ 이후 추가 **6개월**(총 **1년**)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연계**
* 금리 4.5%, 한도 **500만원**內,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거치 최대 1년)

❷ 이후 추가 **1년**(총 **2년**)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최근 3년) 또는 성실상환자(2년 이상) 대상, 9% 이하, 3,000만원內

○ **(대상)** 대출 거절, 고금리 부과가 빈번한 **신용 하위 50% 이하**

○ **(채널) 대면채널**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② **복지멤버십(복지서비스 163종 맞춤 안내)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 **(복지연계)**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연체 지속 시(예:3개월↑)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 등

(자료: 금융위원회)

구분	K-민생지킴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유형	직접대출	직접대출
지원대상	신용 하위 50% 이하 (연체자, 소득증빙곤란자 등 포함, 체납자·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체자, 소득증빙곤란자 등 포함, 체납자·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대출한도	200만원 (최초 100만원 +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	100만원 (연체자는 최초 50만원 + 6개월 성실상환 후 추가 50만원, 연체자가 의료비, 주거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에는 최초 100만원 가능)
대출금리	4.5%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전액 상환 시 이자 50% 페이백 및 연 4.5% 금리로 재대출 가능)
상환조건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전국 52개)

67) 대출금액 100만원, 연 4.5%,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매월 10,364원 납입

2) 검토의견

(1)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 상품설계의 적정성 검토 필요

□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달리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출금리 4.5%, 대출한도 최대 200만원,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대출금리와 월 상환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구조임.

○ 이와 같이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자를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금융권의 2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신규취급 규모가 약 93만명(2.2조원)에 달하고,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연체자는 약 200만명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차주 전체 또는 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이용현황에 관한

것으로,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의 금융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

○ 해당 신용구간에 속한 차주들의 소득 수준과 기존 금융권의 대출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규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과 금융이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100~200만원의 소액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간 차주와의 접점을 유지하며 복지서비스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대출금액이 100~200만원의 소액임에도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차주의 채무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대출채권 관리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차주별 소득 수준과 상환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차주에게 동일한 10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기보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본 10년 분할상환 약정 후 최초 상환계획 대비 추가 상환이 가능하여[68] 중도 조기 완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차주의 자발적인 추가 상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대출약정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와는 구분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기존 금융상품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등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실상환자 연계대출 지원 시 금융접근성 확대와 채무부담 완화의 균형적 고려 필요

□ K-민생지킴대출은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1년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2년 성실상환 시 은행권 징검다리론(최대 3,000만원)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기존 K-민생지킴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후속 대출상품으로 연계함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한

68)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이 가능

다는 입장으로, 상환기간 조건 충족만으로 연계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별 고유 심사[69]를 통해 상환능력이 입증된 경우에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이 차주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와 금융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K-민생지킴대출은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1~2년간 성실상환한 이후에도 상당한 대출잔액이 남아 있게 되는바, 후속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기존 채무에 새로운 채무가 추가되는 구조임.

○ 이러한 방식은 차주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채무의 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반복될 경우 총 채무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물론 금융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후속 대출상품별로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연계대출이 곧바로 과도한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의 목적이 단순한 대출기회 확대를 넘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와 금융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출상품으로의 연계 과정에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

69) 미소금융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소득·채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징검다리론은 은행 자체 내부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

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연계대출 지원 시 기존 대출잔액을 포함한 차주의 총 채무 수준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고금리 채무의 대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등 금융접근성 확대와 채무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회수·잔여재원의 관리체계 마련 필요

□ 2027년도 동 사업 예산안 3,000억원은 전액 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진흥원이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원리금 회수액은 진흥원에 유보하여 다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며, 사업 종료 이후 잔여 재원에 대해 국고 반납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집행잔액과 대출원리금 회수액을 진흥원에 유보하여 반복적으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재정적 통제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신규재원 조성 부담을 줄이고 정책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동 사업은 별도의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정부출연금을 신규 편성하면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 회수액과 집행잔액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므로, 재원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향후 정부 출연 규모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당초 국회에서 심의한 사업목적과 규모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 종료 시 국고에 반납할 재원의 범위 및 정산방식 등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대출원리금 회수액 및 잔여재원의 활용과 국고 반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예상 손실률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금융위원회는 원금회수 등을 감안한 K-민생지킴대출의 최종 예상 손실률을 약 52.4%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 2026년 8월말 기준 43.7%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 실적 및 연체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말	누계
공급건수	165,325	180,947	174,974	93,840	615,086
공급액	958	983	1,326	835	4,101
연체율	11.7	32.2	37.8	43.7	-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중인 차주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손실이 누적될 경우 대출원리금 회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고, 향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대출 만기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리금 회수와 손실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해연도 공급실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부담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연체 차주에 대한

조기상담·복지연계 등을 통해 대출 부실을 적절히 관리하여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70]: 지원실적 및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6,600만원(19.2%) 증가한 22억 7,2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49	1,906	1,906	2,272	366	19.2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71]에

70)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7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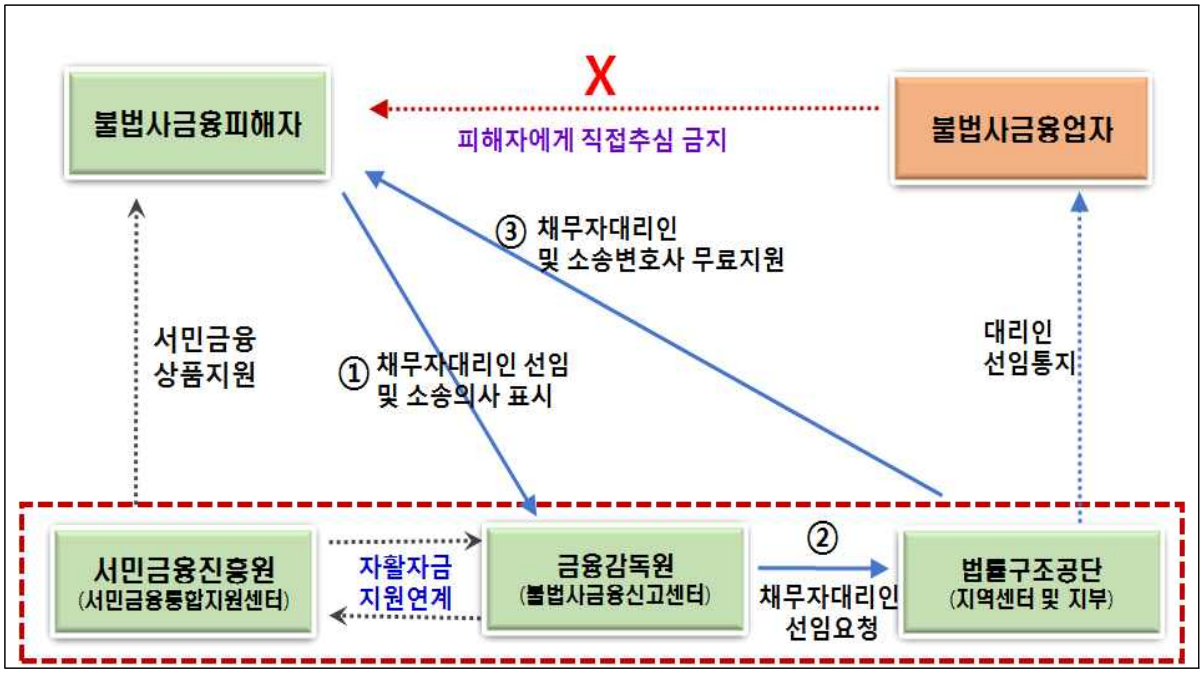
-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 (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리인 선임” 사업의 경우 채무자등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6,600만원(19.2%) 증가한 2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지원실적 증가를 반영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을 1만 3,000건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2026년도 미지급금 예상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2027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ㅇ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26) 1,906백만원 → ('27안) 2,272백만원 (+19.2%)**
- **(채무자대리인 선임): ('26) 1,854백만원 → ('27안) 2,104백만원 (+13.5%)**
  ‣ **4,000건**×208천원 + **9,000건**×138천원 + **30백만원('26년 예상 미지급금)**
  * 연간 13,000건 지원 및 다중채무자 차등단가 적용
  * '26년도 30백만원 미지급금 예상 발생분 반영(145건*208,000원)
- (관계인 지원): ('26) 1백만원 → ('27안) 8.4백만원 (+740%)
- (부수사건 소송대리): ('26) 51백만원 → ('27안) 60백만원 (+17.6%)
- (홍보비): ('26) 0백만원 → ('27안) 100백만원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2025년 신청양식 개선, 신청창구 및 전담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과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72]에 맞춘 집중 홍보 등에 따라 최근 지원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만 1,08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8월말 기준 이미 1만 1,023건을 지원하여 2025년 연간 지원실적에 근접한 수준임.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지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말
신청건수[1](A)	1,252	5,657	5,225	3,760	3,489	12,162	11,920
지원건수[2](B)	**919**	**4,841**	**4,510**	**3,249**	**3,096**	**11,083**	**11,023**
지원비율(B/A)	73.4	85.6	86.3	86.4	88.7	91.1	92.5

주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주2) 소송구조, 소송전구조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채무자 본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 지원실적은 2026년 8월말 기준 1만 897건으로,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약 1만 6,300건에 달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건수 1만 3,000건을 상회함.

○ 향후 지원 수요 및 다중채무자 차등단가 적용[73] 등에 따라 실제 예산

7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주요 내용: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 전체 무효,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 상향 등

73) (1건) 208천원, (2건 이상 시) 1건 208천원, 추가 건별 138천원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지원 건수 1만 3,000건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건)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463	442	412	736	902	896	1,344	1,264	1,284	948	1,218	1,041	10,950
부수사건 소송대리	-	42	-	-	1	-	-	76	1	2	-	-	122
채무자관계인 지원	3	-	-	-	-	-	-	1	2	-	-	5	11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1,345	1,159	1,506	1,456	1,166	1,679	1,370	1,216					10,897
부수사건 소송대리	1	-	1	-	1	2	1	1					7
채무자관계인 지원	-	-	28	26	26	21	7	11					119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이러한 지원실적의 증가로 2025년도에 4억 4,5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6년에도 8월말 기준 예산액 19억 600만원이 전액 집행된 상황임.

〈2026년 8월말 기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906	1,906	-	-	1,906	1,906	1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2026년도 총 소요예상액은 2025년도 미지급금 4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 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별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6년도 예산액 대비 약 14억 6,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집행 전망>

(단위: 억원)

예산액	'26년 8월 누계(A)[1]	9~12월 추계(B)[2]	총 소요예상액(A+B)
19.1	26.6	7.1	33.7

1) '25년 미지급금 4억 4,500만원 포함
2) '26년 8월까지 지원실적 연 환산치에 다중채무자 단가 조정 비율(△26.3%)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26년도 미지급금 예상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바, 부족한 예산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6년 다른 사업의 집행 추이를 점검하여 불용 예상 재원을 파악한 후, 피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실제 전용 가능한 재원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미지급금 예상액 3,000만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년도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연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2026년도 최종 소요예상액과 전용 가능한 재원의 규모, 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예상액 및 2027년도 지원 건수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 22억 7,200만원이 실제 수요에 부합한 적정 규모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부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74]: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한 모펀드 유보금 과다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00억원이 편성됨.

<2027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50,000	5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7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76]과 한국산업은행에서 출자하여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74)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75)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 7. 12.
76)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77],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78]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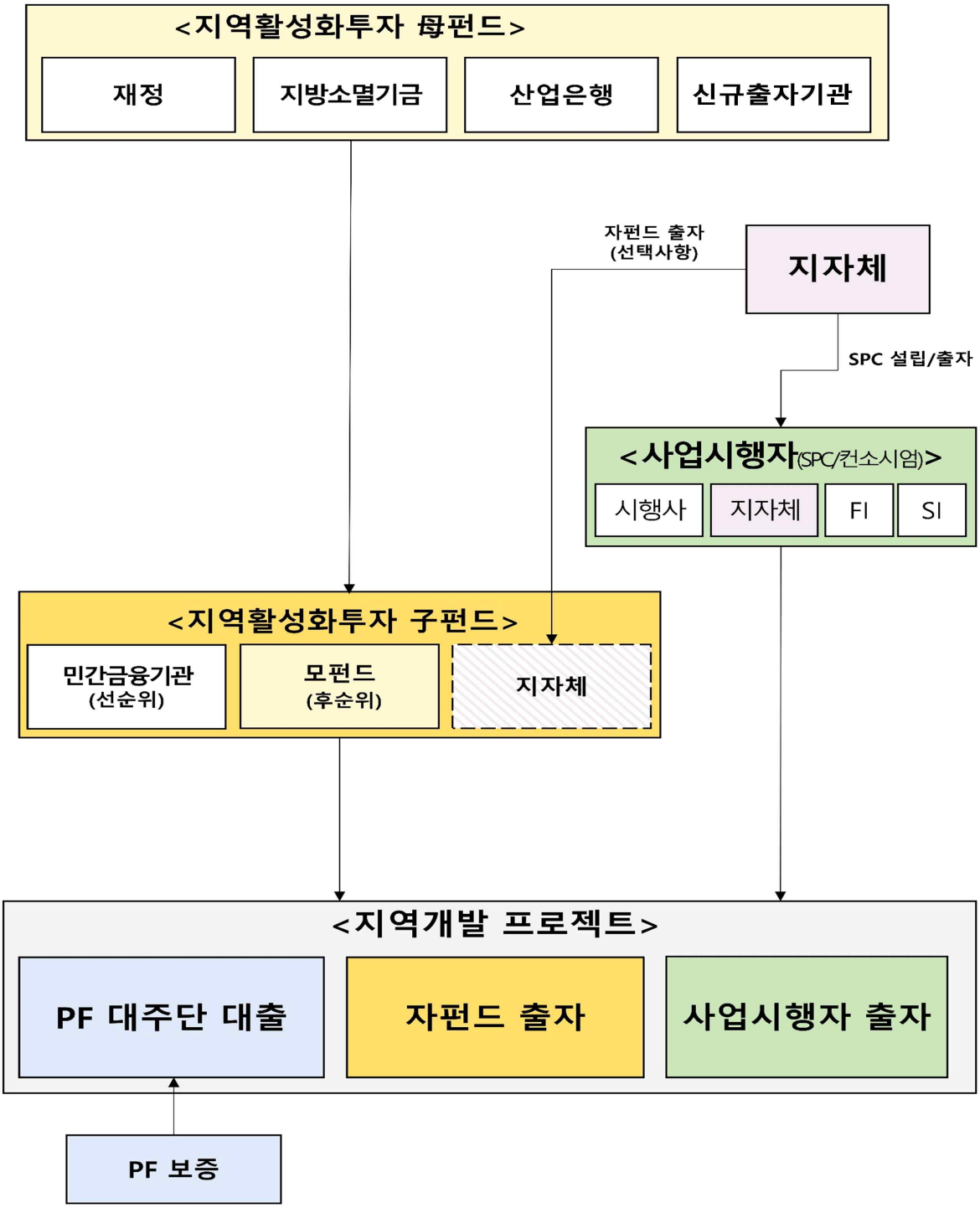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77) 광역도 외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광역도 및 통합특별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모펀드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8)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 9월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1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2024년 5개, 2025년 3개, 2026년 3개)하여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2) 검토의견

(1) 자펀드 결성 지연 등으로 인한 모펀드 유보금 과다

□ 동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민간투자자 모집 등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이 모펀드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 신규 추진 이래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자금이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 추진 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에 따라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하고 “모펀드 유보금을 다음 연도 출자금 예산 규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 2026년 9월 말 기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2025년 선정 프로젝트 중 일부는 여전히 자펀드 결성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선정된 5개 프로젝트 중 1건(단양역 복합관광단지)은 투자집행기한 내 민간 투자자의 투자 미이행으로 사업 선정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4건 중 1건(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여전히 사업 내용 변경(가스 공급 계약 관련 협의 지연)으로 재심사 중에 있음.

2025년 선정된 3개 프로젝트 중 1건(태안 Seed Farm) 또한 현재까지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조건 협의 등으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

(단위: 억원)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4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1차) 2024.12.24. (2차) 2025.9.29. (3차) 2025.8.25.	2025.8.21.	876억원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024.8.29.	2025.4.2.	2025.2.28.	1조 4,362억원
	경북 경주	강동 수소 연료전지발전	(1차) 2024.11.26. (2차) 재심사 중	(1차) 2025.9.29. (2차) 재심사 중	재심사 중	8,191억원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차) 2024.12.24. (2차) 2025.9.26.	(1차) 2025.4.24. (2차) 2026.5.4.	2026.4.9.	900억원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5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025.11.4.	2026.8.28.[주2)]	2026.8.25.	7,200억원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025.11.4.	2026.3.5.	2025.12.10.	3,959억원
	충남 태안	Seed Farm	2025.11.28.	2026.10.1.	결성 중	177억원
2026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2026.7.28.	2026.8.28.[주2)]	2026.8.27.	6,000억원
	전남 광주 영광	배터리에너지저장 시스템	2026.8.3.	2026.8.28.[주2)]	2026.8.25.	1,798억원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2026.8.26.	2026.8.28.[주2)]	2026.8.28.	380억원

주1) 자펀드 결성 기한은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개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연장된 경우, 연장된 결성 기한으로 표기

주2) 투자 예정 모펀드(2024년 모펀드)의 투자가능기간(2026.8.28.)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결성된 자펀드에서 개별 프로젝트로의 투자액은 총 2,150억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모펀드에서 자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총 1,075억원, 동 사업 출자금에서 집행(모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359억원에 불과함.

2024년 프로젝트의 경우 ①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78억원, ②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1,077억원이 투자되었고, 2025년 프로젝트의 경우 장성 첨단데이터센터 사업에 745억원, 광주 영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250억원이 투자되었음. 나머지 사업의 경우 자펀드 미결성 또는 민간 투자자 모집 지연 등에 따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자펀드별 약정액 및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지역명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자펀드 약정액	투자집행액		
				자펀드	모펀드[1)]	재정[2)]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	78	78	39	13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2,872	1,077	539	180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8,191	-	-	-	-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900	180	-	-	-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7,200	840	-	-	-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3,959	745	745	372	124
충남 태안	Seed Farm	177	35	-	-	-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6,000	1,315	-	-	-
전남 광주 영광	배터리에너지 저장시스템	1,798	360	250	125	42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 센터	380	76	-	-	-
합 계		43,843	6,501	2,150	1,075	359

주1) 모펀드는 자펀드의 최대 50% 출자 (광역도 및 통합특별시)

주2) 모펀드는 재정(한국산업은행 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에서 동일 비율(1:1:1)로 출자하여 조성

(자료: 금융위원회)

□ 결과적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4~2026년 정부 출자금 2,500억원 중 지역활성화투자 모펀드로 투입된 자금은 363억원[79)]에 불과하여 총 2,137억원[80)]이 계정에 유보되어 있음.

79) 모펀드 계좌에 4억원 추가 유보 (359억원 + 4억원 = 363억원)

80) 2,500억원(2024~2025년 각 1,000억원, 2026년 500억원 정부 출자) - 363억원 = 2,137억원

□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모펀드 조기소진 및 사업발굴 채널 다각화를 목적으로 복수 운용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용사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 추가 발굴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고, 실제로 2026년 선정된 3개 프로젝트의 경우 자펀드가 조기에 결성되는 등 2027년에는 투자집행 실적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6년 9월 말 기준 2,137억원에 달하는 유보금의 투자집행 완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안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유보금의 투자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출자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81].

81)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재정투입 중단 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사업 추진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모펀드 유보금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신규 사업 선정 및 투자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펀드 운용사가 2026년 내 신규 선정 검토 중인 사업(8건)의 모펀드 약정액 규모는 3,392억원 수준임.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인프라 투·융자)의 투자 대상 중복 문제

□ 국민성장펀드[82]는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말까지 7조 6,232억원의 투자가 승인되었음.

주요 승인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경북 영양 육상풍력, 야월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과, 전남 해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스마일게이트 AI 데이터센터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으로 구분됨.

<국민성장펀드 인프라투·융자 승인사업 사례>

(단위: 억원)

승인 월	기업 및 프로젝트명	지역	지원 방식	국민성장펀드 승인금액		
				첨단 기금	민간 자금	합계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호남	인프라	7,500	26,500	34,000
4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	호남	인프라	180	3,820	4,000
5월	스마일게이트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금융지원	경기	인프라	6,000	16,962	27,962
6월	AWP 영양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프라투융자	영남	인프라	600	2,100	2,700
9월	야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호남	인프라	1,300	6,270	7,570
합계				15,580	55,652	76,232

(자료: 금융위원회)

82) 미래대응기금 - 국민성장펀드(4335-300)

□ 그런데,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서도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전남 장성 첨단데이터센터,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양 펀드의 투자 대상에 차별성이 크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양 펀드 모두 정부 재정 및 한국산업은행의 재원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방 관련 프로젝트를 우대[83] 한다는 점에서 지원 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양 펀드의 투자대상 및 지원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 특정 펀드가 타 펀드의 투자 수요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중복 신청에 따른 심사·평가 절차의 반복으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중복되는 등 정책자금 배분 및 사업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양 펀드의 투자대상 및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3) 국민성장펀드 : 조성액 중 4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 지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수도권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신규)[84]: 매입 대상채권 규모 재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여,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출자금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	-	500,000	5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1억원 미만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매입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신청 또는 동의 등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①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매입채권을 소각’하고, ②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84)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2432-306)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기존 채무조정 사업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 등 제공특례[85]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

□ 동 사업과 대상 및 방식이 유사한 사업으로는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새도약기금")과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 있는데, 동 사업은 지원대상 측면에서는 새출발기금과, 사업 수행 방식 측면에서는 새도약기금과 유사해 보임.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사업이며, 새출발기금은 2020.4.~2025.6.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하는 사업으로 소각제도는 두고 있지 아니함.

---

8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이하 생략)

<유사사업 비교>

구 분		새도약기금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사업기간		2025.10.- (채권 매입기간)	2027.상반기.- (채권 매입기간)	2022.10.-2026.12. (채무조정 신청기간)
사업규모		0.84조원	0.5조원	7.8조원
	재정투입	0.4조원(47.6% 지원) 나머지는 금융회사 부담	0.5조원(전액 지원)	'26.9.기준 2.91조(현물출자 0.5조원 포함) 투입. 나머지는 캠코 부담
채권 매입 목표		16.4조원	5.4조원(추정금액)	33.4조원
실적	채권액	11.9조원(2026.9.기준)	-	17.4조원(2026.9.기준)
	매입가액	0.3조원(2026.9.기준)	-	7.6조원(2026.9.기준)
총 채권소각액		3.9조원(2026.10.2. 기준)	-	소각제도 없음
지원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2020.4.-2025.6. 기간 중 사업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
대상채권		2018.6.19 이전에 발생(2025.6.19.기준 7년이상 연체)한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개인+개인사업자대출)	2023.6.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1억원 미만 연체채권 (가계+사업자대출)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연체채권 (가계+사업자대출)
채권형태		신용·보증채권		신용·보증·담보채권
채권매입 방법		대상채권 일괄 매입		차주의 신청을 받아 개별 매입
지원내용	채권소각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기준 등 고려하여 검토예정	소각제도 없음
	채무조정	30~80% 원금 감면		30-80% 원금 감면 (저소득차주·취약계층은 9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매입 대상채권 규모 재검토 필요

□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매입 대상채권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예상 매입가율 9.5%를 적용하여 산정한 채권 매입 소요액 5,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할 계획임.

> **대상채권 약 5.4조원**(개인사업자 약 5.1조원 + 법인소상공인 약 0.3조원)
> × **예상 가중평균 매입가율 약 9.5%**(새출발기금 매입시가테이블 활용) ≒ **0.50조원**

□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사업자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 6월 이전부터 2026년 8월까지 계속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의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이 약 4.2조원임을 확인하고, 여기에 같은 차주의 가계대출과 법인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추정·합산하여 매입 대상채권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의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 업권별 현황>

(2026. 8.기준, 단위: 조원)

금융권								기타 공공기관**	기타	합계
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카드	대부	금융 공공기관*			
0.6	0.05	0.2	0.08	0.2	0.07	0.1	0.7	2.2	0.02	4.2

* 금융공공기관 :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업은행 등
** 기타공공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매입 대상채권 규모에는 권리행사불가 채권 등 소액으로 매입 가능한 채권과, 보유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각·채무조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매입 대상채권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액으로 매입 가능한 권리행사불가 채권 등의 규모 고려 필요)**

○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및 소각 현황을 보면, 인수(1-6차) 누계 11조 7,378억원 중 소각(1-4차) 누계는 3조 8,551억원임.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 채권이 2조 6,840억원(69.7%)이고, 인수 전 시효완성·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 불가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인수 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이 1조 1,711억원(30.3%)임.

즉,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은 인수 누계 대비 10%에 해당하고, 소각 누계 대비로는 30.3%에 달함.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및 소각 현황>

인수(1~6차)	소각(1~4차)		
117,378 억원	38,551 억원		100%
	심사생략 대상*	26,840 억원	69.7%
	권리행사불가 등**	11,711 억원	30.3%

* 심사생략 대상 채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관련 채권
**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인수전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불가 채권 및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권리행사 불가 채권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액으로도 매입 가능한 채권임에도, 예산안 산출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매입 대상채권은 매입 시점 기준 3년 6개월 이상 연체채권[86]으로, 7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이 짧아 시효완성 채권의 비중은 낮을 수 있음. 그러나 채무자 사망, 파산·면책 확정 등은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동 사업 대상채권에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업무보고(2026. 7. 15.)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시효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여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조건부 대손인정[87]을 2026년 10월 시행하였음[88].

이에 따르면 동 사업 대상채권 중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5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등 일부는 재정 매입 없이도 보유기관

86)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여 동 사업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까지 연체 중인 채권

87)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으면 세법상 손실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음. 그런데 금융회사가 대손인정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세제혜택은 받으면서도 장기연체채권을 오래 보유하며 추심을 계속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도래하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채권 포기를 의미함),

8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 10. 12.(「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

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시효완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체 소각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채권 규모 제외 필요)

○ 금융위원회가 매입 대상채권 규모 추정에 사용한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89]과 기타공공기관[90]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2.9조원으로 전체 연체채권 4.2조원의 68.7%를 차지함.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의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 업권별 현황>

(2026. 8.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업권	대상채권금액	구성비
공공	기타공공기관	2.2	52.1
	금융공공기관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포함)	0.7	16.6
	소 계	**2.9**	**68.7**
민간 금융권[91]	은행·저축·여전·대부·상호·카드·보험	1.30	30.8
기타	기타	0.02	0.5
합계	-	**4.22**	**100.0**

※ 개인사업자의 2023.6월 이전 연체 및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2026년 8월, 신용정보원 자료로 추정), 법인소상공인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금융공공기관 보유분에는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채무조정기구가 보유한 채권을 재정으로 다시 매입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89) 금융공공기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90) 기타공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15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91) 민간 금융권 소계(1.3조원) = 은행 0.6 + 보험 0.05 + 저축 0.2 + 상호 0.08 + 여전 0.2 + 카드 0.07 + 대부 0.1

실제로, 새출발기금의 경우 2026년 9월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액의 약 54%, 매입가액의 약 55%가 공공기관[92] 보유분이었음.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채권 중 공공기관 보유분〉

(2026년 9월 기준)

구분	전체 채권	공공기관 보유분	공공기관 비중
채무조정 대상 채권액	11.55조원	6.21조원	약 54%
새출발기금 매입가액	3.20조원	1.76조원	약 55%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6년 3월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액의 약 71%, 누적 소각액의 약 74%가 공공기관 보유분이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93]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통해 각종 정책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공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조정·정리가 미흡해, 2025년 말 기준, 연체 기간 5년~10년 이하의 개인금융부실채권 5조 7,601억원, 10년 초과 개인금융부실채권 6조 1,669억원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함.

〈새도약기금 매입 · 소각 채권액 중 공공기관 보유채권액〉

92)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캠코, 공공기관(캠코 제외, 17개), 보증기관(21개)을 말함.

구분	채무조정 대상 채권액(억원)	새출발기금 매입가액(억원)	매입가율
캠코	2,891	487	16.8
공공기관(캠코 제외, 17개)	15,973	4,627	29.0
보증기관(21개)	43,266	12,447	28.8
공공기관 소계	62,130	17,561	28.3
금융회사 등	53,382	14,448	27.1
합계	115,512	32,009	27.7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3) 국회예산정책처「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이병철, 2026. 6.

(2026.3.기준)

구분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비중
매입 채권액	5.85조원	8.25조원	약 71%
누적 소각액	1.30조원	1.76조원	약 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이병철, 2026.6., p.93자료 재구성)

<공공기관[94] 개인금융부실채권 연체 기간별 현황>

(2025년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5년 미만 금액	5년~10년 이하 금액	10년 초과 금액	합계 금액
채권액	324,914	57,601	61,669	444,184
비중	73.1	13.0	13.9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이병철, 2026.6., p.71자료 재구성)

○ 한편, 정부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026.10.)은 "20년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5년 시효완성(채무종결) 등"을 제시하였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므로, 늦어도 2028년 6월까지는 모두 연체 5년에 도달함. 따라서 '5년 시효완성' 방침이 시행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보유채권 중 일부는 동 사업의 매입 시점(2027년 상반기)으로부터 길어도 1년 남짓 안에 재정 매입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임.[95]

94)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을 말함.

95)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 부실 관리 개선 방안」(2026.10월)에 따른 5년 시효완성 방침은 ① 7개 금융공공기관(신보, 기보, 주금공, 농신보, 예보, 서금원, 캠코)이 보유·관리하는 연체채권에 한정되며, ② 대상채권도 사회취약계층 채권, 500만원 이하 소액채권, 채무자가 상환능력심사를 신청한 5,000만원 이하 채권에 국한되므로, 그 외 대다수 채권은 5년 시효완성방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동 사업과 같이 한 채무자의 여러 채무를 하나의 기구가 일괄 매입하여 정리하는 방식은 채무자 단위의 통합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보유채권을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은 공공부문 내부에서 자금이 이전되는 데 그칠 뿐, 채무자 지원 효과는 채권 보유기관이 직접 소각·조정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자체 정리 등 공공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산·소득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은 별도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매입하기보다는 채권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직접 소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권리행사불가 채권, 공공기관 등이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채권 등을 매입 대상채권에서 제외하여 2027년도 소요 예산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기준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대상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과 일부 겹치므로, 같은 채무자가 어느 제도를 거치느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신청을 받아 개별 매입하는 반면, 동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속되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1억원 미만 채권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려는 것인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두 사업의 대상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새도약기금의 요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5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의 채권은 동 사업의 연체기간·금액 요건도 함께 충족함.

□ 동 사업과 새출발기금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면, 새출발기금은 채권을 소각하지 않으며 매입형 약정자의 실제 감면율은 2026년 9월 기준 채무자 평균 74.1%(저소득차주 85.8%, 취약계층 83.4%)임.

반면, 동 사업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하고, 그 밖의 채무자에게는 '기존 채무조정 수준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임.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6.9. 약정완료 건 기준, 단위: 억원, 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9.기준)	합계
약정 체결 채무자 수		-	15,417	14,266	27,808	22,542	80,033
채무 조정 약정	조정 전 채무액	-	12,183	13,620	26,551	20,644	72,998
	조정 후 채무액	-	3,403	3,595	6,985	5,430	19,413
약정 채무액	채무자 평균	-	0.89	0.98	0.94	0.85	0.91
	저소득차주*평균	-	0.59	0.67	0.56	0.53	0.54
	취약계층** 평균	-	0.82	0.90	0.88	0.80	0.85
감면율***	**채무자 평균**	-	71.5	73.3	74.5	75.5	74.1
	저소득차주 평균	-	78.2	83.2	86.2	85.6	85.8
	취약계층 평균	-	82.3	82.2	84.0	84.0	83.4

* 저소득차주 : 중위소득 60% 이하(취약계층 제외)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 감면율 : 채무자별 조정 전 채무액 대비 회수예상액을 고려한 실제 감면율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상환능력이 비슷한 채무자 사이에서도 새출발기금 약정 여부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동 사업의 '강화된 채무조정'이 새출발기금 감면 수준(평균 74.1%, 저소득차주 85.8%, 취약계층 83.4%)을 웃돌게 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성실히 상환해 온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고 연체를 이어 온 채무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상환능력 심사 기준과 채무조정 감면 수준을 정할 때,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기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환능력이 비슷한 채무자 간 지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회수재원 국고 환수 기준 등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매입채권 중 채무조정분에서 상환금이 매년 발생하고 그 발생이 사업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구조이나, 회수재원의 귀속·사용·국고 환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출자 전에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회수금 발생 구조를 살펴보면, 새도약기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최대 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추심이 재개되므로, 회수재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는 잔여재원 등이 발생할 경우 "잔여재원 국고환수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할 방침"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회수재원 처리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채 출자가 이루어지면, 출자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채무조정기구의 자본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귀속 및 환수 기준을 사후에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출자 전에 회수금의 귀속 주체와 계정 분리, 사용 범위, 국고 환수 시기·방법, 잔여재원 반환 조건, 채무조정기구의 존속기간 및 청산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96] :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 과 동시시행 시 혼란 최소화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1,200,000	-	200,000	2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당초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그 지원대상을 2020.4.~2025.6.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하였음.

96)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table>
<tr><th></th><th>종전</th><th colspan="2">2024. 9.</th><th>2025. 3.</th><th colspan="2">2025. 7.</th><th>2026. 6.</th></tr>
<tr><td>채권 매입</td><td colspan="4">총 30조원의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 매입계획</td><td colspan="3">총 33.4조원 매입계획</td></tr>
<tr><td rowspan="2">지원 대상</td><td>2020.4.-2023.11.</td><td colspan="2">2024.6.까지</td><td>2024.11.까지</td><td colspan="3">2025.6.까지</td></tr>
<tr><td colspan="7">2020.4.부터 위 기간 중 사업(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td></tr>
<tr><td>신청 기간</td><td>2022.10.-
2025.10.까지</td><td colspan="6">2026.12.까지</td></tr>
<tr><td>채무 감면</td><td>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td><td colspan="3">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td><td>저소득차주[97]
90% 감면</td><td>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5~30%p 축소
1년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경우
잔여채무부담
액의 5~10%
추가 감면</td></tr>
<tr><td>대상 채무</td><td colspan="7">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td></tr>
<tr><td rowspan="3">제외 채무</td><td colspan="7">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td></tr>
<tr><td>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td><td colspan="6">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td></tr>
<tr><td>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td><td colspan="6">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td></tr>
<tr><td>만기 연장</td><td colspan="5">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td><td colspan="2">취약계층·저소득차주: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20년 분할상환</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2조 9,100억원(현물출자 5천억원 포함)의 국가 재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

97) "저소득차주"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를 말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출발기금(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고, 출자받은 국가 재정과 공사채 발행으로 자체 조달한 자금을 새출발기금에 대여해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새출발기금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기준)	합계
국가재정(출자)	11,000	2,800	3,300	12,000	-	29,100
캠코차입(공사채)	-	3,600	15,600	15,500	15,900	50,600
합 계	11,000	6,400	18,900	27,500	15,900	79,700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동 프로그램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로, ① 부실차주[98]의 신용·보증 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99]에 대해서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매입형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채권)
채무조정 범위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만 감면(금리 인하방식)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

(자료: 금융위원회)

98)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99)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2026년 9월 기준 새출발기금은 총 17조 3,928억원 규모의 채권을 7조 6,452억원(매입가율 44%)에 매입해 매입형 및 중개형 채무조정을 시행하였음. 이와 별도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조정하는 중개형으로 6조 3,426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음.

채무조정 수준을 보면, 매입형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약 74.0%와 이자 전액이 감면되었고, 중개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약 5.4%p~ 7.3%p 인하되었음.

<새출발기금 연도별 채무조정 현황>

(2026.9.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9월 기준)	합계
새출발기금 매입 완료 채권액	매입형	2,647	18,484	27,721	40,041	26,647	115,540
	중개형 100)	305	7,661	14,582	22,499	13,341	58,388
	합계	2,952	26,145	42,303	62,540	39,988	173,928
새출발기금 매입가액	매입형	603	5,385	8,188	10,969	6,872	32,017
	중개형	260	5,923	11,016	17,123	10,113	44,435
	합계	863	11,308	19,204	28,092	16,985	76,452
중개형(금융회사등) 약정 완료 채권액		217	8,513	14,720	17,471	22,505	63,426

(자료: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매입형 및 중개형 지원 현황 >

(2026.9.기준)

매입형			중개형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원금감면율	이자감면율	분할상환	이자율인하(%p)	분할상환	이자율인하(%p)	분할상환
74.0%	100%	10.4년	7.3%	19.9년	5.4%	9.9년

100)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함.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 과 동시시행 시 혼란 최소화 필요

□ 새출발기금은 정부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채권매입 소요재원 중 예상 손실분을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구조로, 동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에 종료됨.

2027년도 예산안은 신청 마감 전 접수된 채권 중 2027년에 매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의 손실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매입대상 채권액(a)	매입가율(b)	추정부도율(c)	예상손실액 (a×b×c)	예산요청액
1.5조원	44.4%	33.0%	2,161억원	2,000억원

1. 신청부터 인수까지의 기간(평균 3개월) 고려(2026년말 신청분은 2027년에 매입)
2. ‘매입대상채권액’=2027년 예상 매입액 1.18조원(‘26년도 월평균 매입액 5,641억원 × 70% × 3개월) + 2027년 중개형 실효채권 매입액 0.29조원
3. ‘매입가율’은 2022.10월~25.12월말까지 누적 인수채권의 매입가율
4. ‘추정부도율’은 상환예상액(채권액-감면액)과 예상실효율(3개월 이상 연체 후 약정해지 등) 등을 고려하여 추정(2025년 추경 시 예상손실률 33% 동일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27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지속된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이하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이라 함)이 5,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음.

□ 새출발기금과 신규 편성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유사하며, 대상채권, 매입방법, 지원수준, 국가부담방식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
2027년도 예산안	2,000억원	5,000억원
산출 산식	매입대상 채권액 1조 4,746억원 × 매입가율 44.4% × 추정부도율 33.0%	장기연체채권 5.4조원 × 매입가율 9.5%
지원대상	2020.4.-2025.6.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기간 중 사업영위 조건)
대상채권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신용·보증·담보채권	2023. 6.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1억원 미만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 방법	차주 신청에 따라 개별 매입	대상채권 일괄 매입
지원 내용	30-80% 원금 감면 (저소득·취약계층 90%)	기존 채무조정 대비 강화된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기준 등을 고려해 검토 예정)
국가 부담	매입가액 × 추정부도율(손실분)	매입가액 전액
신청 및 매입 시기	신청 2022.10.-2026.12., 2027년에는 잔여분 매입	2027년 상반기부터 매입 (사업기간 2027.1.-2029.12.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두 사업의 지원대상을 비교하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2020.4.~2025.6.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의 지원대상(코로나 기간 중 사업영위)을 대체로 충족함. 또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은 새출발기금 협약가입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채권 보유기관도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에서 ‘다른 채무조정기구와 채무조정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새출발기금의 2027년 매입대상은 신청만 하고 아직 매입·약정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이 2027년도 새출발기금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에 그치는 새출발기금 보다 ‘기존 채무조정 대비 강화된 채무조정’과 ‘채권 소각’까지 가능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채권을 두 사업에서 이중으로 매입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을 어느 사업에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규사업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이 확정·발표된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신규사업 매입대상에 대해 채무자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할 예정(신규사업 매입대상은 새출발기금 매입에서 제외)으로, 대상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라 설명함.

□ 그러나, 2027년도에 새출발기금의 잔여분 매입과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의 채권 매입이 함께 진행되므로, 같은 채무자의 채권이 해당 채권의 형태나 연체기간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으로 나뉘어져 그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과 달리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은 협약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그 매입순서로 인한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및 장기연체채권 매입사업이 혼란 없이 신속히 채무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새출발기금의 사후관리 및 재기지원 노력 제고 필요

□ 새출발기금은 2026년 12월 신청 마감 이후에도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이 이어지는데,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중개형 채권의 상환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추가 감면의 활용도도 저조하므로, 상환실적 관리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기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환실적 관리)**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상 상환예정액 대비 실제 상환액을 보면, 중개형은 2023년 84.5%에서 2024년 74.4%, 2025년 63.6%, 2026년(9월 기준) 56.2%로 매년 낮아져, 최근에는 약정상 상환예정액의 절반 남짓만 실제로 상환되고 있음.

반면, 매입형은 2026년(9월 기준) 157.1% 등 매년 100%를 넘는데, 이는 일시상환(완제) 등으로 분할상환 예정액보다 많이 입금된 결과로서,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의 상환 이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새출발기금 매입채권 관련 원금·이자 상환 실적>

(2026.9.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9월)	합계
매입형	약정상 상환예정액(A)	1,545.2	20,321.5	67,610.4	79,373.7	168,850.8
	실제 상환액(B)	8,163.6	38,400.3	97,258.8	124,671.1	268,493.8
	매입형 상환율(B/A)	528.3	189.0	143.9	**157.1**	159.0
중개형	약정상 상환예정액(C)	304.0	1,388.0	2,903.5	3,523.6	8,119.1
	실제 상환액(D)	257.0	1,033.0	1,848.0	1,981.0	5,119.0
	중개형 상환율(D/C)	**84.5**	**74.4**	**63.6**	**56.2**	63.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약정 실효 사유의 대부분은 장기연체(금액 기준 매입형 97.6%, 중개형 92.2%)이고, 2023년 약정 체결자의 실효율(인원 기준)은 매입형 25.0%, 중개형 54.0%에 이름. 최근 연도 체결자는 관측 기간이 짧아 실효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 대규모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의 약정 실효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약정 실효 사유(2022 ~ 2026.9.기준)>

(단위: 억원, 명, %)

구 분	장기연체		다른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기타	
	채무액	채무자수	채무액	채무자수	채무액	채무자수	채무액	채무자수
매입형	6,471(97.6)	6,489(97.9)	56(0.8)	47(0.7)	18(0.3)	16(0.2)	86(1.3)	80(1.2)
중개형	19,674(92.2)	18,130(90.8)	1,628(7.6)	1,785(8.9)	-	-	43(0.2)	50(0.3)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약정 실효 현황>

(2026.9.기준, 단위: 억원,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9월)		합 계	
		채무자 수	채무액	채무자 수	채 무 액	채무자 수	채무액	채무자 수	채무액	채무자 수	채무액	채무자 수	채무액
매입형	체결	-		15,417	12,183	14,266	13620	27,808	26551	22,542	20,644	80,033	72,998
	실효	-		3,853	3,618	2,104	2,331	638	647	37	35	6,632	6,631
	비율	-		25.0	29.7	14.7	17.1	2.3	2.4	0.2	0.2	8.3	9.1
중개형	체결	305	217	13,234	8,513	17,513	14,720	25,876	22,285	19,699	26,158	76,627	71,893
	실효	156	134	7,152	7,519	7,050	7,462	4,783	5,058	824	1,171	19,965	21,344
	비율	51.1	61.8	54.0	88.3	40.3	50.7	18.5	22.7	4.2	4.5	26.1	29.7

1. 여기에서 말하는 실효율이란 해당연도 채무조정 확정자 중 2026년 9월 기준 시점 실효자 수 비율
2. 중개형 약정 실효액은 최초 약정자의 약정 금액과 새출발기금(주) 매입 후 추가된 금액이 실효 시 소급되어 해당 년도 실효금액으로 집계되어 불일치 발생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상환단계 관리 계획[101]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개형 상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환이 지연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실효되기 전에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조기 개입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재기지원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추가 감면)** 새출발기금은 폐업자가 재기 의지를 가지고 취·창업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원금을 최대 10%p 추가로 감면하여 직업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9월 기준 추가 감면 신청자는 재취업 교육 1,004명, 재창업 교육 787명 등 1,791명으로, 매입형[102] 약정 채무자(80,033명)의

101) 금융위원회는 상환이 지연되는 채무자의 약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2026년 2월)하였으며, 향후 채무조정 신청 마감 이후 사업 관리의 중심을 상환 단계로 전환하여 약정 유지율과 실효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102) 중개형 채무자는 추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2%에 불과하고, 평균 추가 감면율도 5.3%p(재취업 교육 7.4%p, 재창업 교육 2.7%p)로 최대치(10%p)의 절반 수준임.

<취 ·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의 추가 감면 신청 현황>

(2026.9.기준,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 (9월기준)	합계	평균 추가 감면률(%p)
재취업 감면신청자	105	198	535	166	1,004	7.4
재창업 감면신청자	167	202	305	113	787	2.7
합계(A)	**272**	**400**	**840**	**279**	**1,791**	**5.3**
매입형 약정 체결 채무자 수(B)	15,417	14,266	27,808	22,542	80,033	-
비율(A/B) %	**1.8**	**2.8**	**3.0**	**1.2**	**2.2**	**-**

1. 비율은 해당 연도 감면 신청자 수를 같은 연도 매입형 약정 체결 채무자 수로 나눈 값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으로, '취·창업 연계 등을 통해 사업영위를 지속하거나 폐업 후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재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채무조정이 원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소득 회복과 지속적인 상환으로 이어지려면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을 높이고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안내 실적 등을 점검하여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창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창업 여부와 상환 이행 등 재기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소송 수행 비용[103]: 소송 패소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소송 수행 비용'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 중인 소송의 대리인(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45.5%) 증가한 16억원이 편성됨.

<2027년도 소송 수행 비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소송 수행 비용	900	1,100	1,600	500	45.5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 예산안의 증가는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행사로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리인 선임 비용 소요가 확대됨에 기인함.

<2021~2025년 금융위원회 소송 제기 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소송	헌법재판	집행정지 등	합계
2021	35	14	3	0	16	68
2022	34	24	2	4	18	82
2023	66	43	2	4	21	136
2024	84	21	1	2	30	138
2025	**100**	**26**	**2**	**5**	**45**	**178**

(자료: 금융위원회)

103) 세부사업: 소송 수행 비용(7135-318)

2) 검토의견

(1) 소송 패소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원회가 수행 중인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소송 패소 건수가 2024년 2건에서 2025년 5건, 2026년 8월 기준으로 9건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소율도 2024년 93.3%에서 2025년 67.9%, 2026년 8월 기준 50.0%로 하락한 바, 소송 패소 확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2026년 연도별 소송 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8.	전체 평균
종결 사건	35	17	24	36	31	22	165
승소(A)	28	9	15	28	19	10	109
일부 승소(B)	1	-	-	-	4	1	6
패소(C)	3	5	5	2	5	9	29
기타	3	3	4	6	3	2	21
승소율 (A/(A+B+C))	87.5%	64.3%	75%	93.3%	67.9%	50.0%	75.7%

주: 기타는 소취하, 소취하 간주, 소장 각하명령, 화해 등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종결 사건의 건수가 많지 않아 특정 연도에 패소가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2026년에는 8월까지의 패소 건수(9건)가 이미 2025년 연간 패소 건수(5건)를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소송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6년 소송 패소 현황 및 쟁점사항>

(단위: 건, %)

종결일	사건번호	사건명	주요 쟁점 및 패소 사유
01-1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492	업무정지처분취소	○ 절차 하자(공시송달)
04-02	대법원 2026두30014	문책경고처분 취소	○ 법령 미비(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근거법령 미비함에도 처분하여 위법) ○ 법령해석·적용 위법('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없음)
04-09	대법원 2025두35983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04-16	대법원 2025두33515	업무일부정지 등 취소의 소	○ 법령해석·적용 위법(펀드 판매행위 설명의무 위반 해당하지 않음)
04-16	대법원 2026두301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과징금액 과다)
05-04	대법원 2025두33025 (위헌제청 2025아1061)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 법령해석·적용 위법 - 처분사유(대주주 형사처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였으나, 그 처벌 사유가 된 행위의 일부가 시행일 이전에 존재한 경우 처분 불가
07-17	서울고등법원 2025누8684	업무정지처분취소	○ 법령해석·적용 위법 - 원고(보험설계사)의 소속이 변경된 사안에서, 근무기관별로 별도 처분한 것은 쪼개기 처분으로 위법
07-23	대법원 2024두40387	업무일부정지 등 취소의 소	○ 법령해석·적용 위법 (은행계정대 조정은 단순 회계상 조치에 해당함)
09-15	대법원 2026두31033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절차 하자(처분사유 미기재)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패소 사건을 대상으로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판단의 적정성 및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행정처분 및 소송 수행 과정에 반영하는 등 소송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제재처분의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처분 이전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패소가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제재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례적인 소송 수행 비용 차년도 지급 개선 필요

□ 금융위원회는 소송 수행 비용 예산 부족으로 매년 소송 대리인 착수금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적정한 집행 관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차년도 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소송대리인 착수금은 2023년 1억 5,200만원, 2024년 1억 4,600만원, 2025년 1억 1,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억원 이상의 차년도 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특히 예산은 2023년 4억 2,500만원에서 2024년 8억원, 2025년 9억원, 2026년 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차년도 지급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음.

<2023~2025년 연도별 차년도 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차년도 지급금	발생 사유
2023년	425	425	152	차년도 지급청구 및 소송 예산 부족 등
2024년	800	799	146	
2025년	900	900	110	
2026년	1,100	704 (9월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소송 수행 비용의 일부를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행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송 수행 비용의 일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송 수행 재원을 제약하고, 연도별 실제 소송 수행 비용 소요 파악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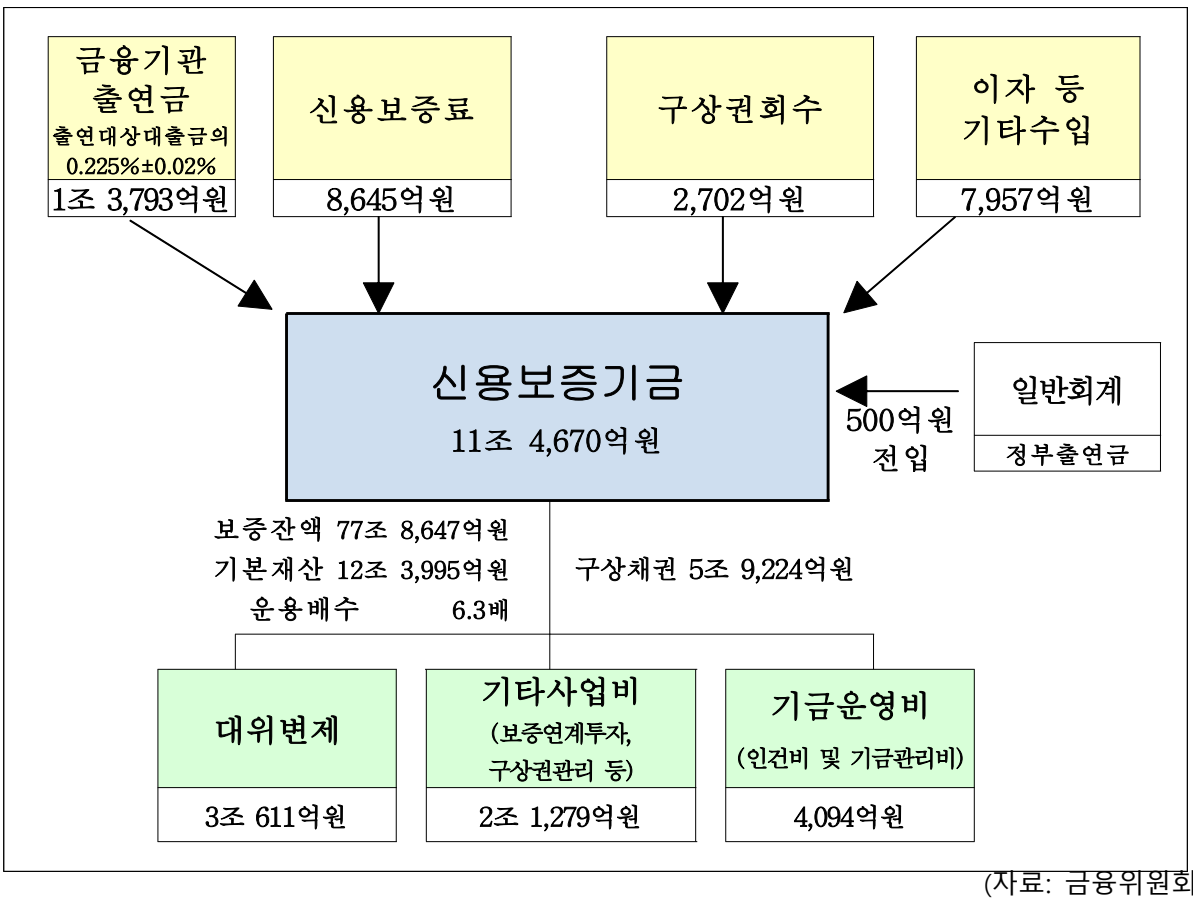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7년 증액된 5억원의 예산으로 차년도 지급금의 해소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소송 대리인 선임 및 비용 지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79조 1,342억원, 보증업체수는 26만 5,376개임.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11조 4,670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1조 3,793억원), 신용보증료(8,645억원), 구상권 회수(2,702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7,957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대위변제(3조 611억원), 기금운영비(4,094억원), 보증연계투자 등 기타사업비(2조 1,279억원)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3년 12조 3,287억원 수준에서 2024년 11조 4,703억원, 2025년 11조 6,125억원, 2026년 10조 7,51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7년 11조 4,67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4,670억 1,800만원으로 2026년 수정계획 대비 7,155억 800만원(6.7%) 증액 편성됨.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381,044	10,701,510	10,751,510	11,467,018	715,508	6.7
□ 재산수입	208,870	122,422	122,422	167,163	44,741	36.5
□ 경상이전수입	2,674,023	2,306,207	2,306,207	2,231,882	△74,325	△3.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32,814	955,188	955,188	910,688	△44,500	△4.7
□ 관유물매각대	-	3,626	3,626	-	△3,626	순감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465,337	7,234,067	7,234,067	8,107,285	873,218	12.1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	80,000	130,000	50,000	△80,000	△61.5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 투자배당금, 건물대여료 등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47억 4,100만원(36.5%) 증가한 1,671억 6,3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 새출발기금 등으로의 채권매각대금, 공탁금 반환 등으로 채권매각규모 감소, 공탁금 지출 절감에 따른 반환 규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43억 2,500만원(△3.2%) 감소한 2조 2,318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각종 수수료, 위탁보증 부담금, 고정자산매각익 등으로, 소상공인위탁보증 및 대환보증 잔액 감소에 따른 위탁보증 부담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5억원(△4.7%) 감소한 9,106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매각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로 건물 등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미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확대에 따른 수익증권 매각금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732억 1,800만원(12.1%) 증가한 8조 1,072억 8,5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수입으로, 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00억원(△61.5%) 감소한 5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4,670억 1,800만원으로 2026년 수정계획 대비 7,155억 800만원(6.7%) 증액 편성됨.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합 계	9,381,044	10,701,510	10,751,510	11,467,018	715,508	6.7
□ 사업비	3,506,183	4,748,238	4,748,238	5,188,945	440,707	9.3
○ 신보대위변제	3,020,576	3,411,099	3,411,099	3,061,068	△350,031	△10.3
○ 기타사업비	485,607	1,337,139	1,337,139	2,127,877	790,738	59.1
□ 기금운영비	390,706	388,809	388,809	409,351	20,542	5.3
○ 인건비	296,255	300,820	300,820	316,337	15,517	5.2
○ 기타운영비	94,451	87,989	87,989	93,014	5,025	5.7
□ 여유자금운용	5,484,155	5,564,463	5,614,463	5,868,722	254,259	4.5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5조 1,889억 4,500만원으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신보IT운영 증액 등으로 인해 2026년도 계획 대비 4,407억 700만원(9.3%)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4,093억 5,100만원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6년도 계획 대비 205억 4,200만원(5.3%) 증가함.

○ 2027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조 8,687억 2,200만원으로 2026년도 계획 대비 2,542억 5,900만원(4.5%) 증가함.

□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31,899	33,240	36,935	37,351	41,161	41,169
기금운영비(3300)	3,695	3,770	3,700	4,134	3,676	3,810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
여유자금운용(9700)	85,287	92,871	82,652	81,802	69,866	69,724
합 계	**120,881**	**129,881**	**123,287**	**123,287**	**114,703**	**114,703**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도 계획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44,119	44,119	47,482	47,482	51,889
기금운영비(3300)	3,742	3,835	3,888	3,888	4,094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67,264	68,171	55,645	56,145	58,687
합 계	**115,125**	**116,125**	**107,015**	**107,515**	**114,670**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5조 1,889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7억 700만원(9.3%)이 증가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계획 대비 유동화보증직접발행 7,945억 4,300만원(104.8%),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406억 300백만원(141.5%) 등이 증액 편성되고,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1,657억 5,900만원(△39.4%), 일반보증 대위변제 1,273억 3,100만원(△4.7%)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3,506,183	4,748,238	4,748,238	5,188,945	440,707	9.3
○ 신보대위변제	3,020,576	3,411,099	3,411,099	3,061,068	△350,031	△10.3
- 일반보증 대위변제	2,436,184	2,693,940	2,693,940	2,566,609	△127,331	△4.7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214,876	438,446	420,446	254,687	△165,759	△39.4
-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188,499	109,590	109,590	37,438	△72,152	△65.8
- 대환보증 대위변제	181,017	158,425	158,425	133,033	△25,392	△16.0
-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	10,698	28,698	69,301	40,603	141.5
○ 기타사업비	485,607	1,337,139	1,337,139	2,127,877	790,738	59.1
- 보증료환급	79,843	86,852	86,852	83,934	△2,918	△3.4
- 구상권관리	58,503	99,462	99,462	90,089	△9,373	△9.4
- 업무용건물	22,936	19,533	19,533	22,722	3,189	16.3
- 경영지도	16,083	20,052	20,052	19,027	△1,025	△5.1
- 보증연계투자	66,763	67,540	67,540	67,540	-	-
- 미래성장성평가	4,721	6,335	6,335	6,381	46	0.7
- 프론트원운영	5,851	6,876	6,876	7,065	189	2.7
- 이차보전지원	9,928	1,372	1,372	21	△1,351	△98.5
- 팩토링금융	200,128	250,200	250,200	250,255	55	-
- 신용정보(정보화)	2,020	2,244	2,244	1,907	△337	△15.0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1,131	2,440	2,440	2,440	-	-
- 유동화증권직접발행	-	758,014	758,014	1,552,557	794,543	104.8
- 신보IT운영(정보화)	17,700	16,219	16,219	23,939	7,720	47.6

(자료: 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예상 부실률, 대위변제발생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73억 3,100만원(△4.7%) 감소한 2조 5,666억 9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발생 예상금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57억 5,900만원(△39.4%) 감소한 2,546억 8,700만원이 편성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감소, 부실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21억 5,200만원(△65.8%) 감소한 374억 3,800만원이 편성됨.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53억 9,200만원(△16.0%) 감소한 1,330억 3,300만원이 편성됨.

○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및 부실률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6억 300만원(141.5%) 증가한 693억 100만원이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선취한 보증료를 중도해지 시 환급하여 주는 의무적 지출로, 보증해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9억 1,800만원(△3.4%) 감소한 839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발생기업 및 대위변제기업 등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3억 7,300만원(△9.4%) 감소한 900억 8,900만원이 편성됨.

○ ‘업무용건물’ 사업은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지점 건물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억 8,900만원(16.3%) 증가한 227억 2,200만원이 편성됨.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2,500만원(△5.1%) 감소한 190억 2,700만원이 편성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은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수기술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성장성 중심의 조사·심사·평가체계 구축·정보 수집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0.7%) 증가한 63억 8,1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됨.

○ ‘프론트원운영’ 사업은 전문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2.7%) 증가한 70억 6,500만원이 편성됨.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5,100만원(△98.5%) 감소한 2,100만원이 편성됨.

○ ‘팩토링금융’ 사업은 구매기업의 신용거래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0.02%) 증가한 2,502억 5,500만원이 편성됨.

○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기업 데이터와 신용정보서비스를 공공·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 데이터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700만원(△15.0%) 감소한 19억 700만원이 편성됨.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학술협력 기반 형성 및 금융교육 수행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4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사업은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금융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사업으로, 직접발행 규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945억 4,300만원(104.8%) 증가한 1조 5,525억 5,700만원이 편성됨.

○ ‘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억 2,000만원(47.6%) 증가한 239억 3,9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4,093억 5,100만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5억 4,200만원(5.3%) 증가함.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기금운영비	390,706	388,809	388,809	409,351	20,542	5.3
○ 인건비	296,255	300,820	300,820	316,337	15,517	5.2
○ 기타운영비	94,451	87,989	87,989	93,014	5,025	5.7
- 기금관리비	94,451	87,989	87,989	93,014	5,025	5.7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5억 1,700만원(5.2%) 증가한 3,163억 3,7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50억 2,500만원(5.7%) 증가한 930억 1,400만원이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풀,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542억 5,900만원(4.5%) 증가한 5조 8,687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5,484,155	5,564,463	5,614,463	5,868,722	254,259	4.5
○ 정기예금	3,068,427	1,456,801	1,456,801	1,291,119	△165,682	△11.4
○ 연기금투자풀	1,958,000	3,723,067	3,773,067	4,102,237	329,170	8.7
○ 국채	196,087	145,680	145,680	181,930	36,250	24.9
○ 국채외채권(금융채 등)	211,534	174,816	174,816	217,143	42,327	24.2
○ 기타유가증권	50,107	64,099	64,099	76,293	12,194	19.0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9.	2027(전망)
□ 예치금	2.16	3.89	4.30	3.40	3.06	3.41
□ 채권	△1.86	6.38	4.59	2.47	0.52	2.89
□ 수익증권	△4.38	8.15	6.84	10.33	10.41	4.29
계	△0.63	6.04	5.72	8.12	8.15	4.00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7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61.3조원, 위기대응 특례보증 3.8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0.2조원, 대환보증 0.7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1.9조원 등 77.9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임.

□ 2027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6년 계획(전망치) 대비 6,032억원 감소한 12조 3,995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는 6.3배로 예상됨.

〈2027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704,242	655,382	683,256	663,380	△19,876	△2.9
□ 보증잔액	776,786	770,943	779,775	778,647	△1,128	△0.1
□ 기본재산	133,043	108,677	130,027	123,995	△6,032	△4.6
□ 운용배수	5.8	7.1	6.0	6.3	0.3	5.0

주: 총보증 기준

〈최근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 보증공급	653,758	652,866	646,493	669,483	678,702	704,242
□ 보증잔액	671,531	785,888	833,689	816,227	794,711	776,786
□ 기본재산	81,922	88,791	105,482	117,227	121,795	133,043
□ 운용배수	8.2	8.9	7.9	7.0	6.5	5.8

주: 총보증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일반보증 대위변제[104]: 대위변제 부실률 산정근거 불명확 등

1) 사업 개요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73억 3,100만원(4.7%)이 감소한 2조 5,666억 9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일반보증 대위변제	2,436,184	2,693,940	2,693,940	2,566,609	△127,331	△4.7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대위변제 계획액의 부실률 추계 근거와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으로 임시전용한 2,000억원의 상환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04) 세부사업: 일반보증 대위변제(2431-300)

□ 첫째, 대위변제 계획액과 성과목표에 적용되는 부실률의 산정 근거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하고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계획액은 '(전년도 말 부실잔액 + 당기 부실순증액) × 대위변제발생률 5년 누계값'으로 산출하며, 당기 부실순증액에는 부실률 추계값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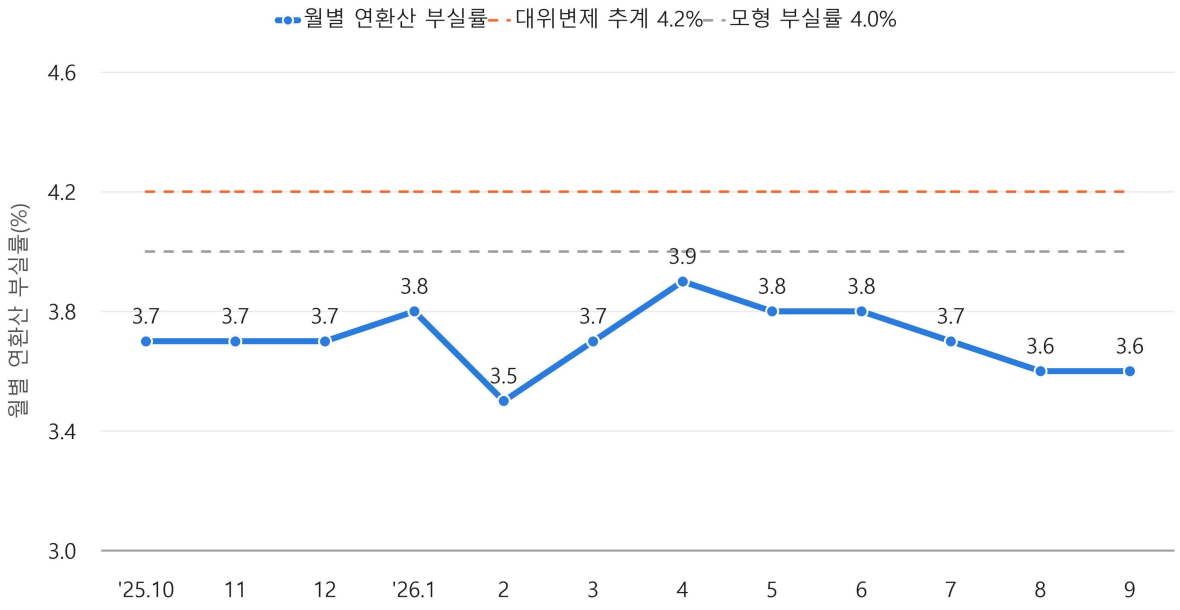
<대위변제 계획액 및 부실순증액 산출식>

• 2027년도 대위변제 계획액 = (2026년 말 부실잔액 + 2027년 부실순증액) × 대위변제발생률 5년 누계값
• 2027년 부실순증액 = 2027년말 보증잔액 × **예상 부실률**

○ 신용보증기금은 부실예측모형으로 2027년 부실률을 4.0%로 도출하였으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2025년 9월)에 따른 이연부실 우려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여기에 4.0%의 5%(0.2%p)를 더한 4.2%를 계상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조치 종료 후 1년간(2025년 10월~2026년 9월) 월별 연환산 부실률은 최대 3.9%, 평균 약 3.7%에 그침.

〈만기연장 · 상환유예 종료 후 월별 연환산 부실률〉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대위변제는 의무지출이므로 보수적으로 추계할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은 추계모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고, 산술적 근거가 불명확한 위험완충계수(buffer)를 임의로 적용하면 계획안 편성의 타당성이 저해됨.

○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로 부실률 추계치 4%에 10%(0.4%p)를 가산한 4.4%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어 계획안 추계(4.2%)와 성과지표 간 일관성도 미흡함.

□ 둘째, 일반보증계정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으로 임시전용된 2,000억원의 상환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국비 출연(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전용된 재원의 상환 일정을 점검하는

등 신규 출연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동 전용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지침」 변경에 따라 2024년 7월· 11월에 각각 1,000억원씩 일반보증계정에서 전용된 것으로, 일반보증계정의 대위변제 이행 재원과 직결되나 2026년 9월말 현재 상환일정이 협의되지 않았음.

○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위탁보증의 잔여재원이 2032년에도 2,8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내여건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들며 예산당국 등과 상환 일정·조건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소상공인위탁보증 잔존재원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2e
잔여재원	8,497	6,322	1,893	1,207	2,529		2,815

주1) 24.7월 및 11월 일반보증 계정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계정으로 각 1,000억원씩 전용

주2) '25.7월 저금리대환보증 계정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계정으로 2,000억원 전용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위탁보증 계정의 부실률은 2024년 16.7%에서 2025년 12.5%로 개선되었으며, 2027년 말 예상 기본재산(2,370억원)이 보증잔액(2,094억원)을 상회하여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가 0.9배로 낮아질 전망임.

□ 신용보증기금은 본 사업의 성과목표와 대위변제 예산 추계의 부실률을 일원화하고, 위험완충계수가 필요하면 그 수치와 산출근거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전용된 재원의 상환 일정과 조

건을 우선 수립하되, 향후에는 소상공인위탁보증 계정의 재무 여력을 감안하여 신규 국비 출연 소요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용건물[105]: 사전 안전진단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증가

1) 사업 개요

□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1억 8,900만원(16.3%) 증액된 227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업무용건물	22,936	19,533	19,533	22,722	3,189	16.3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업무용 건물 사업은 대구지점 재건축 설계비, 성남지점 및 부평지점 등 자가점포 매입, 지방 4개 지점 합숙소 취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05)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업무용 건물 계획안 2027년도 세부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7년 계획안
업무용건물	227.22
- 대구지점 재건축 설계비	12.34
- 성남지점 매입	120.00
- 부평지점 매입	56.00
- 지방 4개 지점 합숙소 취득(12채)	21.28
- 기타	17.60

(자료: 금융위원회)

□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대수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2026년도 대수선 설계비 10억원이 전액 불용될 예정이고, 대수선이 재건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에 재건축 설계비 12억 3,4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재건축 연차별 소요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계
2027년	1,234	-	-	-	1,234
2028년	1,177	133	11,211	-	12,521
2029년	-	133	11,211	-	11,344
2030년	-	177	15,961	1,460	17,598
2031년	100	-	3,283	50	3,433
합 계	2,511	443	41,666	1,510	46,130

(자료: 금융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은 육안검사와 기본 측정장비로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파괴검사·재료시험·구조해석·내진성능평가 등으로 주요 구조부의 내력과 결함 원인을 정밀 계측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 절차임.

○ 따라서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한 건축물을 골조만 남기고 일괄 교체하려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으로 주요 구조부(보·기둥·슬래브)의 내력과 내진성능 확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수선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신용보증기금은 1980년 준공된 대구지점(2026년 기준 46년 경과)에 대해 2024년 3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B등급)을 바탕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수선 설계비 10억원을 요구하였고, 이 안은 2025년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그 후 2025년 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대구지점은 주요 부재의 내력 부족 등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내진 설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방향이 대수선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대수선(162억 8,400만원) 대비 298억 4,600만원(183.3%) 증가한 461억 3,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연면적은 51.7% 증가하였으나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목공사비 등이 추가되어 공사비는 190.9% 증가하여 ㎡당 공사비 또한 약 300만원에서 575만원으로 상승하였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및 재건축 공사 소요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대수선 (A)	재건축 (B)	증감 (B-A)	(B-A)/A
공사비	14,324	41,666	27,342	190.9%
실시설계비	1,074	2,341	1,267	118.0%
기본조사설계비	86	170	84	97.7%
감리 및 부대비	800	1,953	1,153	144.1%
합 계	16,284	46,130	29,846	183.3%
연면적	4,775	7,242	2,467	51.7%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골조를 제외하고 리모델링하는 대수선 공사를 계획했던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예산 요구 전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아 2026년도 예산 1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미비했던 측면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노후 건물 관련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선행 확보한 후 요구하여, 2026년도 설계비 불용과 재건축 전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재건축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연면적이 4,775㎡에서 7,242㎡로 확대되었는데, 이 중 창업지원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3.6%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시설의 활용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재건축계획에 따르면 연면적을 기존 4,775㎡에서 7,242㎡로 2,467㎡(51.7%) 확장하면서, 신용보증기금 자체 업

무공간은 기존 4개 층(2~5층)에서 3개 층(5~7층, 2,161㎡, 전체의 29.8%)으로 축소하는 반면, 1~4층(공유·개방공간 각 800㎡)과 8층(IR라운지 등 681㎡) 등 총 3,881㎡(53.6%)에 창업지원허브(가칭 NEST 대구)를 신설할 계획임.

<대구지점 재건축 시 층별 공간 구성(안)>

층	세부내용				면적(㎡)
8	개방공간	NEST Square		■ IR라운지(대강당), 회의실(세미나실), IR룸 등	681
7	업무공간	KODIT SPACE		■ 신용보증기금 영업조직	681
6					680
5					800
4	공유·개방공간	NEST 오피스 (폐쇄형, 개방형, 맞춤형)		■ 기업규모를 고려한 독립형 공간(15개) (NEST AX Lab)	800
3		NEST 오피스 (폐쇄형)	NEST Partners	■ 기업규모를 고려한 독립형 공간(10개) ■ 글로벌 미팅룸(GMR), 소형 오피스 공간 등	800
2		Edu-Complex	Innovative Plaza	■ 가변형 강의실 ■ 스튜디오(Innovative Studio)	800
1		마주침공간 (Lobby)		■ 카페형 전시홍보공간(Innovative Lounge) ■ 팝업스토어(Innovative Store)	800
B1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600
B2		지하주차장			600

(자료: 금융위원회)

○ 단순 면적 비례 적용 시 총사업비 461억 3,000만원 중 약 247억원이 창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시설별 사업비는 공용공간 및 시설별 공사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창업지원공간 입주수요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노후 건물 관련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선행 확보한 후 요구하여 2026년도 설계비 불용과 재건축 전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창업지원공간 입주수요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고, 총사업비 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3. 보증연계투자[106]: 민간 후속투자 유치성과 저하 및 투자수익률 관리체계 미흡

1) 사업 개요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 등의 주식·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및 「상법」상 지분 등을 인수하여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보증연계투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보증연계투자	66,763	67,540	67,540	67,540	-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대출·보증 중심의 정책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자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106) 세부사업: 보증연계투자(2431-308)

□ 보증연계투자는 민간 자본이 진입하기 어려운 유망 초기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후속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투자의 핵심 취지인 민간 후속투자 유치 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투자 후 2년 내 외부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비율은 2020년 투자분 50.0%에서 2021년 41.8%, 2022년 28.6%, 2023년 7.3%로 3년 만에 42.7%p 하락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투자액 대비 후속투자 유치 금액 또한 2020년 2.4배에서 2023년 0.5배(2020년의 약 20.8% 수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이후 2년 이내 후속투자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투자연도	신용보증기금 투자기업 수(A)	2년 내 후속투자 유치기업 수(B)	신용보증기금 투자액(C)	후속투자 유치금액(D)	후속투자 유치비율	
					개수 기준 (B/A)	금액기준 (D/C)
2014~2019(합산)	310	123	222,336	359,990	39.7%	1.6
2020	62	31	59,075	144,336	50.0%	2.4
2021	110	46	59,140	101,799	41.8%	1.7
2022	112	32	52,666	56,643	28.6%	1.1
2023	110	8	62,907	30,771	7.3%	0.5

(자료: 금융위원회)

○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2022~2023년 투자분은 초기 투자분보다 후속투자 관찰기간이 짧으며, 외부 투자여건도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투자기업 특성, 투자시장 여건 상황에 따른 후속투자 유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신규 보증연계투자 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벤처캐피탈(VC) 수준의 기본적인 현금흐름 기반 투자수익률 측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정책투자의 수익성이 왜곡되고 장기 미회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은 2021년 0.6%에서 2026년 9월 기준 9.2%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현금흐름 기반의 내부수익률이 아닌 '순수익 누계액을 투자액 누계액으로 나눈 단순 누적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에 해당함.

<보증연계투자 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21년(A)	'22년	'23년	'24년	'25년(B)	'26.9월	(B-A)
누적 수익률	0.6	0.1	3.0	3.8	7.1	9.2	6.5%p

주1. 누적 수익률(%) : [순수익액(누계액) ÷ 투자금액(누계액)] * 100%
주2. 다만, '26.9월말 수익률은 연말 손실처리 예정분 미반영된 수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보증연계투자 사업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누적수익률로 관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님.

○ 첫째, 단순 누적수익률 방식은 상환이 장기 지연되는 미회수 부실 자산의 기회비용 손실을 가리고, 초기에 회수된 소수 성공 사례가

전체 누적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는 왜곡을 초래함.

○ 둘째, 벤처투자 회수의 적정성 및 포트폴리오 건전성 진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벤처투자는 투자 초기 손실이 먼저 인식되다가 후기에 수익이 실현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투자연도별 IRR·MOIC 추적 체계가 부재할 경우 현재 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정상적인 회수 주기를 지나고 있는지 혹은 구조적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진단하기 어려움.

○ 벤처투자 성과는 자금이 투입되어 묶여 있는 기간(Duration)과 회수 시점(Timing)에 따른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107] 및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 등 투자업계 표준 기준[108]에서 단순 누적 수치가 아닌 현금흐름 기반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등을 투자연도별로 측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투자 성과 측정을 위한 업계 표준 지표〉

내부수익률(IRR)

투자·회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r, $\sum_{t=0}^{n} \frac{CF_t}{(1+r)^t} = 0$

107)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11., p. 9
108)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p. 3

○ 재무회계 기준상의 누적 수익 지표도 보조적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연간 67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성과를 연도별로 비교·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투자 사후관리 인프라 보완 및 질적 성과지표 도입이 권고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본질적으로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GVC)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109],민간주도형 벤처캐피탈(PVC) 투자 유치 기업 추적 관리를 통해 후속투자 견인효과를 관리하고, 현금흐름 기반의 내부수익률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9) 김정향, 윤병섭, '정부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보증연계 후속투자 증대효과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4권제1호, p.61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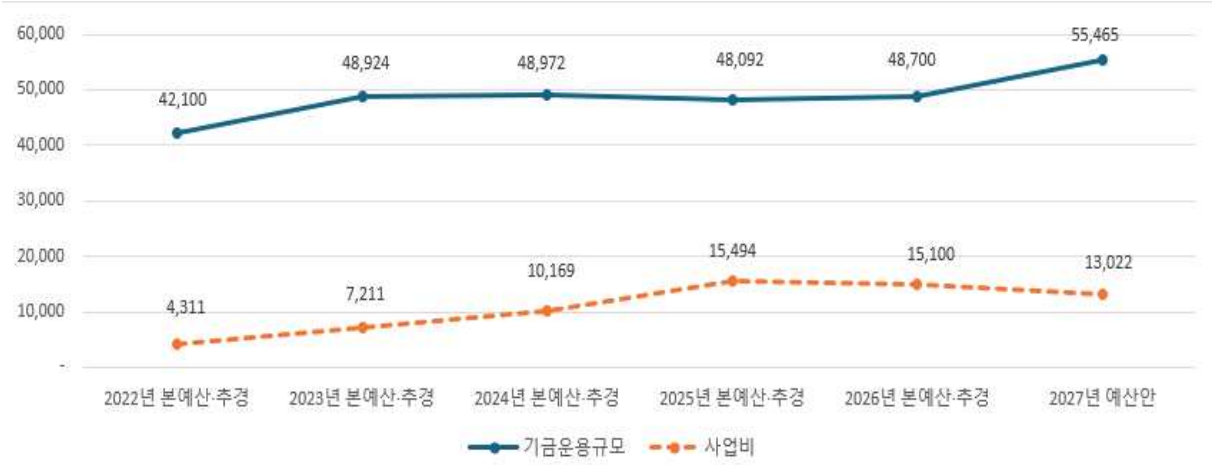
Ⅰ. 개 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설치근거법이 변경되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4조 2,100억원, 2023년 4조 8,924억원, 2024년 4조 8,972억원, 2025년 4조 8,092억원, 2026년 4조 8,700억원으로 4조원대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27년 5조 5,46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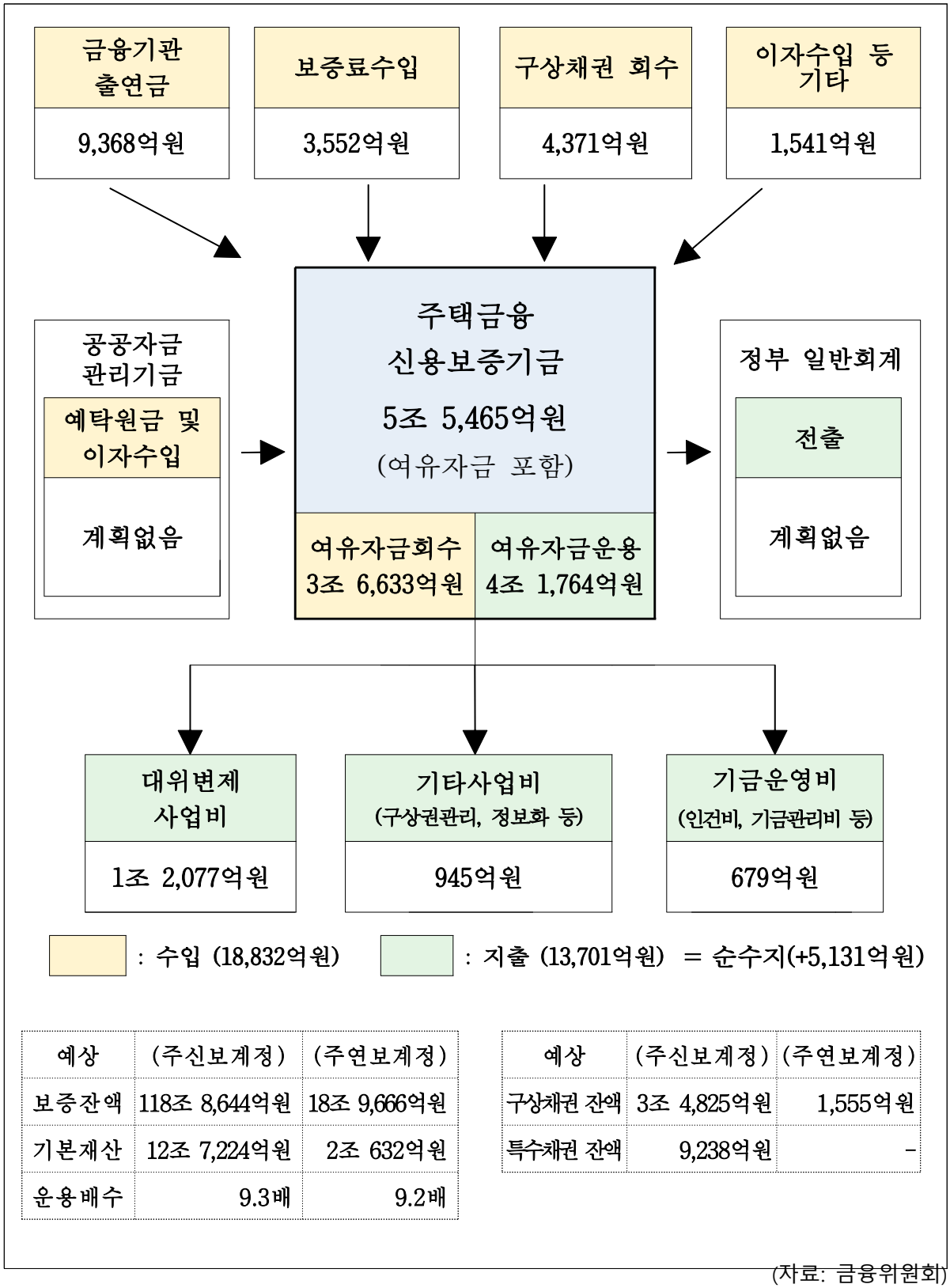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예상	(주신보계정)	(주연보계정)
보증잔액	118조 8,644억원	18조 9,666억원
기본재산	12조 7,224억원	2조 632억원
운용배수	9.3배	9.2배

예상	(주신보계정)	(주연보계정)
구상채권 잔액	3조 4,825억원	1,555억원
특수채권 잔액	9,238억원	-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5조 5,464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4억 9,200만원(13.9%)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합 계	5,173,276	4,869,986	4,869,986	5,546,478	676,492	13.9
□ 재산수입	150,145	139,136	139,136	153,973	14,837	10.7
□ 경상이전수입	1,312,187	1,320,712	1,320,712	1,373,890	53,178	4.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93,469	396,218	396,218	355,295	△40,923	△10.3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417,475	3,013,920	3,013,920	3,663,320	649,400	21.5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및 여유자금 운용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억 3,700만원(10.7%) 증가한 1,539억 7,3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등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위변제 원금 등 구상권회수 규모 증가로 전년 대비 531억 7,800만원(4.0%) 증가한 1조 3,738억 9,0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9억 2,300만원(△10.3%) 감소한 3,552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채,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7년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 회수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494억원(21.5%) 증가한 3조 6,633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으로, 2027년도는 예탁 및 회수계획이 없음.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5조 5,464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4억 9,200만원(13.9%)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173,276	4,869,986	4,869,986	5,546,478	676,492	13.9
□ 사업비	1,349,833	1,487,559	1,510,897	1,302,241	△208,656	△13.8
○ 대위변제	1,260,259	1,385,788	1,407,588	1,207,725	△199,863	△14.2
○ 기타사업비	89,574	101,771	103,309	94,516	△8,793	△8.5
□ 기금운영비	57,175	63,587	78,007	67,838	△10,169	△13.0
○ 인건비	44,781	50,641	50,641	54,593	3,952	7.8
○ 기타운영비	12,394	12,946	27,366	13,245	△14,121	△51.6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766,268	3,318,840	3,281,082	4,176,399	895,317	27.3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1조 3,022억 4,100만원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6년도 수정계획 대비 2,086억 5,600만원(△13.8%) 감소함.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78억 3,800만원으로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납부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2026년도 수정 계획 대비 101억 6,900만원(△13.0%) 감소함.

○ 2027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4조 1,763억 9,9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7년도 만기도래 여유자금 회수 증가의 영향으로 2026년도 수정 계획 대비 8,953억 1,700만원(27.3%) 증가함.

□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보전거래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택금융지원(2600)	4,023	4,311	3,959	7,211	7,814	10,169
기금운영비(3400)	633	660	638	754	579	588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2,320	2,320	-	-	-	-
여유자금운용(9700)	35,124	34,809	44,327	40,959	40,579	38,215
합 계	**42,100**	**42,100**	**48,924**	**48,924**	**48,972**	**48,972**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
주택금융지원(2600)	15,482	15,487	14,876	15,109	13,023
기금운영비(3400)	597	597	636	780	678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32,013	32,008	33,188	32,811	41,764
합 계	**48,092**	**48,092**	**48,700**	**48,700**	**55,465**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조 3,022억 4,100만원으로 2026년 수정 계획 대비 2,086억 5,600만원(△13.8%) 감액됨.

○ 2027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구상권관리 55억 8,600만원(16.1%) 증액 편성되었고, 대위변제 1,998억 6,300만원(△14.2%), 보증료환급 135억 3,400만원(△29.1%), 주신보IT운영 8억 4,500만원(△15.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수료 및 담보설정비용은 전년 동액으로 편성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사업비	1,349,833	1,487,559	1,510,897	1,302,241	△208,656	△13.8
○ 주신보운영	1,343,262	1,481,918	1,505,256	1,297,445	△207,811	△13.8
- 대위변제	1,260,259	1,385,788	1,407,588	1,207,725	△199,863	△14.2
- 보증료환급	34,501	37,034	46,429	32,895	△13,534	△29.1
- 구상권관리	35,138	42,605	34,748	40,334	5,586	16.1
- 사업수수료	11,036	13,369	13,369	13,369	-	-
- 담보설정비용	2,328	3,122	3,122	3,122	-	-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6,571	5,641	5,641	4,796	△845	△15.0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직접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연금보증의 대위변제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98억 6,300만원(△14.2%) 감소한 1조 2,077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 시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여 주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5억원 3,400만원(△29.1%) 감소한 328억 9,5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규모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5억 8,600만원(16.1%) 증가한 403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사업수수료’ 사업은 보증 취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및 기타 보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최근 금융기관 대상 위탁수수료의 지급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동액인 133억 6,900만원이 편성됨.

○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지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연금 가입주택 담보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7년말까지 연장된 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동액인 31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8억 4,500만원(△15.0%) 감소한 47억 9,6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78억 3,800만원으로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법인세 납부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101억 6,900만원(△13.0%) 감액 편성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기금운영비	57,175	63,587	78,007	67,838	△10,169	△13.0
○ 인건비	44,781	50,641	50,641	54,593	3,952	7.8
○ 기타운영비	12,394	12,946	27,366	13,245	△14,121	△51.6
- 기금관리비	12,394	12,946	12,946	13,245	299	2.3
- 법인세	-	-	14,420	-	△14,42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통 처우개선 및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수정 계획 대비 39억 5,200만원(7.8%) 증가한 545억 9,3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본지사 임차료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수정 계획 대비 2억 9,900만원(2.3%) 증가한 132억 4,500만원이 편성됨.

○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예산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았음

4) 정부내부지출

□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년과 동일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의 경우 예탁계획 없음.

○ '일반회계전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의 경우 전출계획 없음

5)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풀,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7년 운용자금 만기도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8,953억 1,700만원(27.3%) 증액된 4조 1,763억 9,9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3,766,268	3,318,840	3,281,082	4,176,399	895,317	27.3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
□ 예치금	2.16	4.18	4.15	3.49	2.42
□ 채권(직접운용)	△1.13	6.39	4.66	2.49	0.38
□ 수익증권	△5.13	10.00	7.40	10.95	8.91
계	△2.53	8.10	6.25	8.05	6.51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2027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획 대비 17조 2,000억원(△21.9%) 감소한 61조 5,000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계획 대비 20조 9,694억원(△15.0%) 감소한 118조 8,644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7년 주신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1조 3,260억원(11.6%) 증가한 12조 7,22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계획 대비 3.0배 감소한 9.3배가 될 것으로 계획하였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027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계획대비 3조 7,456억원(△15.5%) 감소한 20조 3,544억원, 연금지급잔액은 전년 계획 대비 2조 1,675억원(12.9%) 증가한 18조 9,666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7년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2,906억원(16.4%) 증가한 2조 63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계획 대비 0.3배 감소한 9.2배가 될 것으로 계획하였음.

<2027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686,779	787,000	787,000	615,000	△172,000	△21.9
○ 보증잔액(A)	1,267,373	1,398,338	1,398,338	1,188,644	△209,694	△15.0
○ 기본재산(B)	121,180	113,964	113,964	127,224	13,260	11.6
○ 운용배수(A/B)*	9.7	12.3	12.3	9.3	△3.0	△24.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72,370	241,000	241,000	203,544	△37,456	△15.5
○ 연금지급액	28,129	35,507	35,507	34,960	△547	△1.5
○ 연금지급잔액(C)	140,894	167,991	167,991	189,666	21,675	12.9
○ 기본재산(D)	15,670	17,726	17,726	20,632	2,906	16.4
○ 운용배수(C/D)	9.0	9.5	9.5	9.2	△0.3	△3.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646,593	650,943	729,907	755,260	762,576	686,779
○ 보증잔액(A)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1,267,373
○ 기본재산(B)	79,175	86,654	88,993	100,176	110,595	121,180
○ 운용배수(A/B)*	13.3	13.4	13.7	12.6	11.1	9.7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11,028	150,255	249,692	225,016	194,499	172,370
○ 연금지급액	12,105	14,547	19,242	23,856	26,406	28,129
○ 연금지급잔액(C)	52,484	62,811	78,860	98,466	119,582	140,894
○ 기본재산(D)	4,524	6,495	7,844	10,205	12,764	15,670
○ 운용배수(C/D)	11.6	9.7	10.1	9.6	9.4	9.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구상권관리[110]: 공탁금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계획액 규모 검토 필요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구상권관리” 사업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보전조치·소송·공탁·경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회수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6억 5,200만원(△8.9%)이 감소한 374억 5,300만원임.

<2027년도 구상권관리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구상권관리	33,011	41,105	41,105	37,453	△3,652	△8.9
- 구상권회수비용	8,477	9,556	9,556	11,536	1,980	20.7
- 공탁금	24,534	31,549	31,549	25,917	△5,632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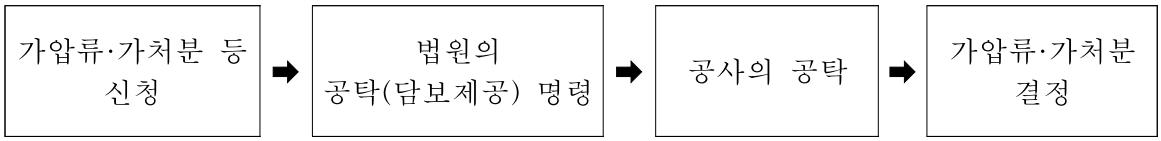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구상권회수비용과 공탁금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탁금” 사업의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6억 3,200만원(△17.9%) 감소한 25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110) 세부사업: 구상권관리(2631-301)

○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 사업은 공사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법원의 공탁(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필요한 공탁금을 지출하기 위한 것임.

<공탁금 집행 절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로, 법원은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 등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공탁 이후 본안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등의 경우, 공사는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111]

111) 주신보계정 공탁금 평균 환수 기간: 1년 2개월(2026년 6월 기준)

2) 검토의견

□ 공탁금 예산 집행률은 2023년 90.9%에서 2024년 82.1%, 2025년 77.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8월말 기준 계획액 315억 4,900만원 중 37억 5,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1.9%에 불과한 상황임.

<연도별 공탁금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21년	10,022	5,168	51.6
2022년	9,935	8,034	80.9
2023년	18,304	16,637	90.9
2024년	23,689	19,451	82.1
2025년	31,539	24,534	77.8
2026년 8월말	**31,549**	**3,758**	**11.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법원의 현금공탁명령 비율이 감소하고, 전세자금 보증에 대한 사전 채권보전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공탁금 지출이 수반되는 사후 채권보전조치가 감소한 것이 2026년도 공탁금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먼저, 채권보전조치 건수 대비 현금공탁 건수의 비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6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6년 8월말에는 21.3%로 크게 감소하였음.

- 공사는 가압류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시, 통상 가압류 청구금액의 20%에 대해 현금공탁명령이 있으나, 최근 법원의 현금공탁명령이 감소하고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함.

<채권보전조치 및 현금공탁 현황>

(단위: 건, %)

구 분	'21	'22	'23	'24	'25	'26.8
채권보전조치* 건수(A)	1,039	1,324	1,936	2,173	2,526	1,259
현금공탁 건수(B)	596	730	1,198	1,365	1,496	268
비중(B/A)	57.4	55.1	61.9	62.8	59.2	21.3

주: 질권, 채권양도 등 현금공탁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보전조치 제외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또한, 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취급 시 채권양도·질권설정 등 사전 채권보전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공탁금 지출이 수반되는 가압류 등 사후 채권보전조치가 감소한 것도 집행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공사는 2022년 10월 전세자금보증 2억원 초과 이용자에 대한 사전 채권보전조치를 의무화한 것에 이어, 2025년 8월에는 은행재원 및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에 대해서도 사전 채권보전조치를 의무화하였음.

□ 현금공탁 건수 비중의 감소와 사전 채권보전조치 확대 등은 공탁금 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과거에 비해 공탁금 소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7년도 공탁금 계획안은 전년 대비 56억 3,200만원(△17.9%) 감액된 25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2025년 집행액 245억 3,400만원보다 13억 8,300만원 많은 수준으로,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7년도 공탁금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개인·반환 대위변제 예상액 9,143억 2,000만원에 최근 3개년 중 최대 대위변제 대비 공탁발생률 2.82%와 9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직전년도 구상·특수채권 잔액 예상액 4조 18억 600만원에 최근 3개년 구상·특수채권 잔액 대비 공탁금 발생률 0.68%와 1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2027년도 공탁금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ㅇ **공탁비용 : ('26년) 31,549백만원 → ('27년안) 25,917백만원, △17.9%** - [914,320백만원(당해연도 개인·반환 대위변제 예상액) × 2.82%(최근 3개년 중 최대 대위변제 대비 공탁발생률) × 90%] + [4,001,806백만원(직전년도 구상·특수채권 잔액 예상액) × 0.68%(최근 3개년 중 구상·특수채권 잔액 대비 공탁금 발생률) × 10%]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현금공탁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탁금 소요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중 최대 대위변제 대비 공탁발생률 등을 적용한 산정방식이 향후 공탁금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공탁금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으로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채권보전조치가 지연될 경우 구상권 회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최근 공탁금 집행실적과 현금공탁 비중의 변화, 사전 채권보전조치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공탁금 예산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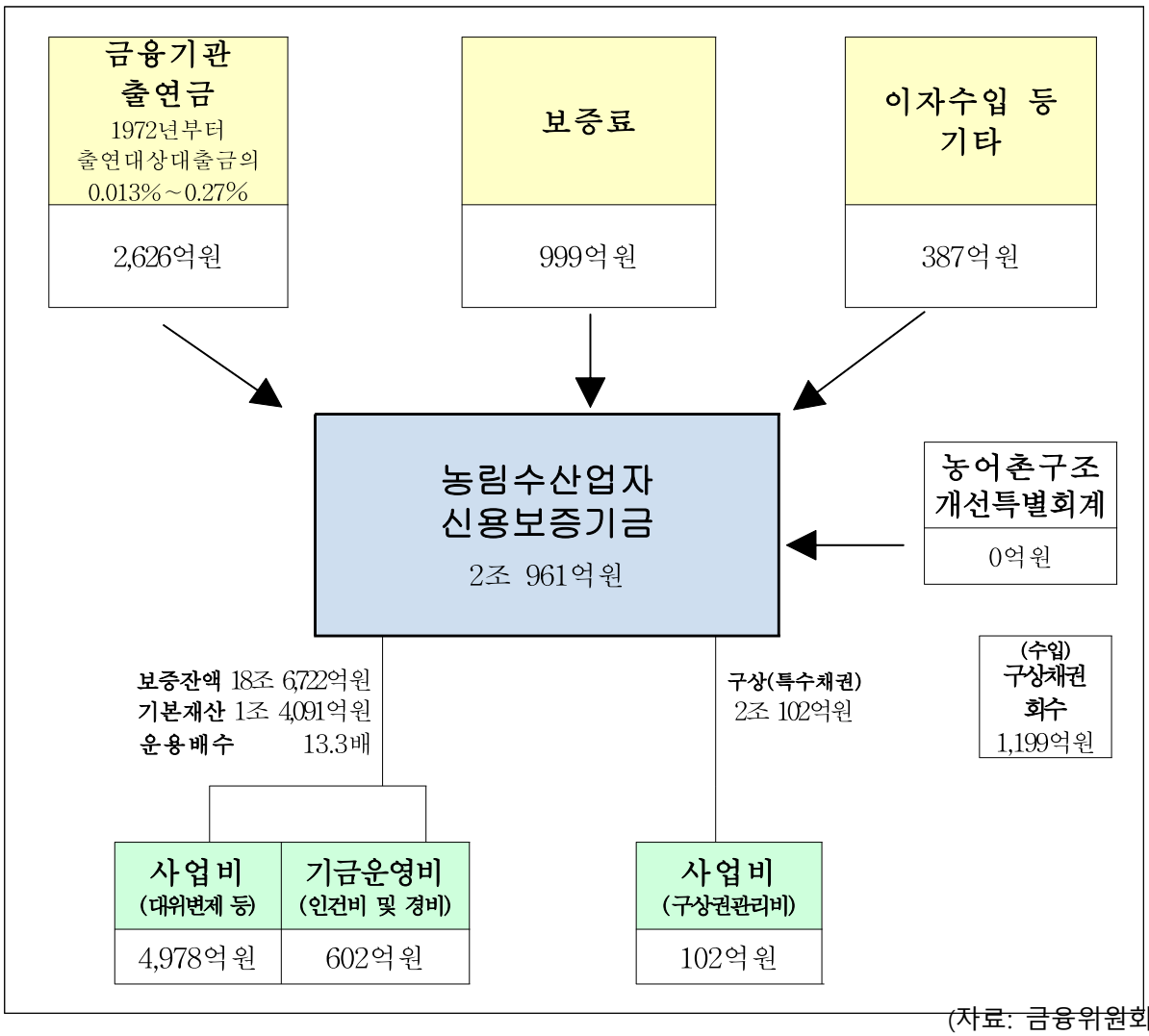
1971년 1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후 1972년 2월 기금 관리주체[112]인 농협중앙회가 1억원을 출연하며 보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7년도 계획안 기준 보증잔액은 18조 6,722억원임.

□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2조 961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2,626억원), 보증료수입(999억원), 이자수입 등(387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 이를 대위변제 등 사업비(5,080억원), 기금운영비(602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112)「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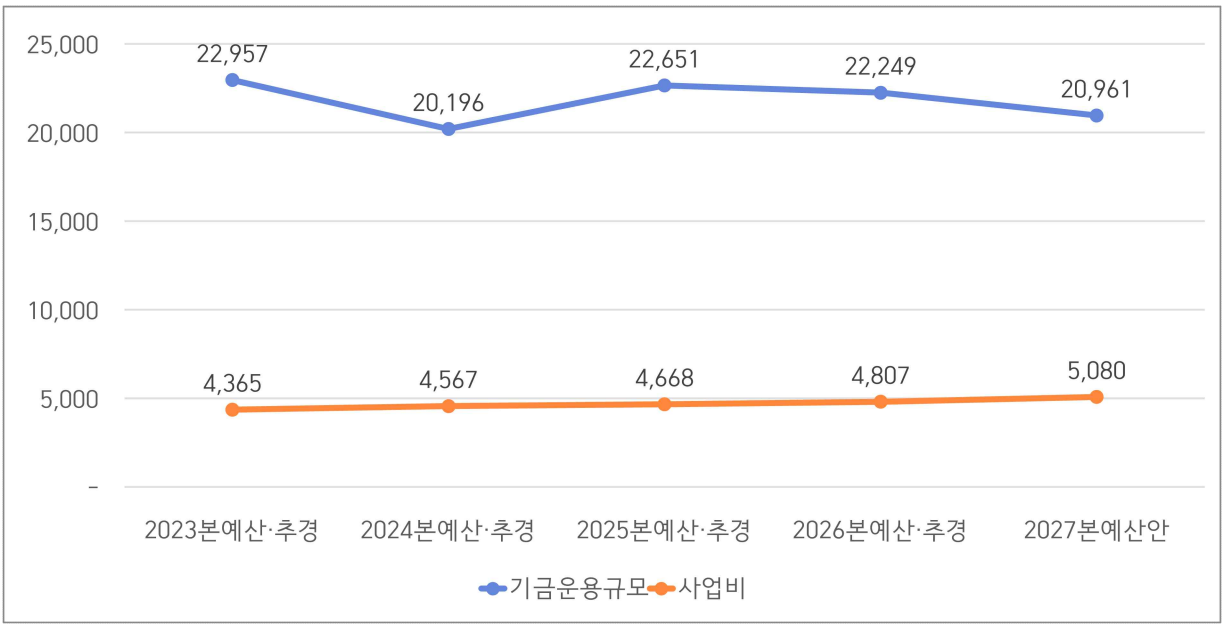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3년 2조 2,957억원, 2024년 2조 196억원, 2025년 2조 2,651억원, 2026년 2조 2,249억원이며, 2027년도 계획안은 2조 961억원으로 전년대비 운영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961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7억 9,900만원(△5.8%)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2,237,578	2,224,917	2,224,917	2,096,118	△128,799	△5.8
□ 재산수입	43,642	39,600	39,600	38,670	△930	△2.3
□ 경상이전수입	312,791	369,145	369,145	390,877	21,732	5.9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6,062	102,298	102,298	104,157	1,859	1.8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645,083	1,713,874	1,713,874	1,562,414	△151,460	△8.8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50,00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예치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2.3%) 감소한 386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2,626억 1,800만원), 구상채권 회수금 증가 등(1,280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억 3,200만원(5.9%) 증가한 3,908억 7,7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수수료, 매각채권 잔여 이익금 등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18억 5,900만원(1.8%) 증가한 1,04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7년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14억 6,000만원(△8.8%) 감소한 1조 5,624억원 1,4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농특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회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특회계 전입금 미반영되어, 0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961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7억 9,900만원(△5.8%)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2,237,578	2,224,917	2,224,917	2,096,118	△128,799	△5.8
□ 사업비	463,663	480,707	480,707	507,977	27,270	5.7
○ 대위변제금	437,813	454,500	454,500	484,100	29,600	6.5
○ 보증료환급	6,096	7,056	7,056	6,751	△305	△4.3
○ 구상권관리비	11,491	11,974	11,974	10,178	△1,796	△15.0
○ 위탁사업비	4,428	4,555	4,555	4,720	165	3.6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3,835	2,622	2,622	2,228	△394	△15.0
□ 기금운영비	56,983	57,882	57,882	60,223	2,341	4.0
○ 인건비	50,434	52,200	52,200	54,236	2,036	3.9
○ 기타운영비	6,549	5,682	5,682	5,987	305	5.4
□ 여유자금운용	1,716,932	1,686,328	1,686,328	1,527,918	△158,410	△9.4
○ 통화금융기관예치	873,292	1,656,328	1,656,328	730,763	△925,565	△55.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	797,155	797,155	-
○ 예치금유가증권매입	843,640	30,000	30,000	-	△30,000	순감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5,07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2억 7,000만원(5.7%)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0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100만원(4.0%)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5,279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4억 1,000만원(△9.4%) 감소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540	3,540	3,460	4,365	3,567	4,567
기금운영비(3300)	548	548	548	548	556	556
여유자금운용(9700)	17,941	17,941	18,948	18,044	16,073	15,073
합 계	**22,029**	**22,029**	**22,957**	**22,957**	**20,196**	**20,196**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4,640	4,668	4,807	4,807	5,080
기금운영비(3300)	572	572	579	579	602
여유자금운용(9700)	17,439	17,411	16,863	16,863	15,279
합 계	**22,651**	**22,651**	**22,249**	**22,249**	**20,961**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5,07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2억 7,000만원(5.7%) 증가함.

○ 주요 증감 내역으로 2026년도 계획 대비 ‘대위변제’ 296억원(6.5%) 증액 편성되고, ‘구상권관리비’ 17억 9,600만원(△15.0%) 감액 편성되었음.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63,663	480,707	480,707	507,977	27,270	5.7
○ 대위변제금	437,813	454,500	454,500	484,100	29,600	6.5
○ 보증료환급	6,096	7,056	7,056	6,751	△305	△4.3
○ 구상권관리비	11,491	11,974	11,974	10,178	△1,796	△15.0
○ 위탁사업비	4,428	4,555	4,555	4,720	165	3.6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3,835	2,622	2,622	2,228	△394	△15.0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296억원(6.5%) 증액된 4,841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3억 500만원(4.3%) 감액된 6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구상권관리비’는 전년 대비 17억 9,600만원(△15.0%) 감액된 10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6,500만원(3.6%) 증액된 4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는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15.0%) 감액된 2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금운영비

□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0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100만원(4.0%) 증가함.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기금운영비	56,983	57,882	57,882	60,223	2,341	4.0
○ 인건비	50,434	52,200	52,200	54,236	2,036	3.9
○ 기타운영비	6,549	5,682	5,682	5,987	305	5.4
- 기금관리비	6,525	5,543	5,543	5,848	305	5.5
- 선급법인세	24	139	139	139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억 3,600만원(3.9%) 증액된 542억 3,6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500만원(5.5%) 증액된 5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됨.

○ ‘선급법인세’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풀,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84억 1,000만원(△9.4%) 감액된 1조 5,279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여유자금운용	1,716,932	1,686,328	1,686,328	1,527,918	△158,410	△9.4

(자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9.	2027(전망)
□ 예치금	2.05	4.24	3.86	3.22	2.95	3.51
□ 채권	△0.32	4.75	3.72	3.23	-	-
□ 수익증권	△4.41	8.05	3.88	8.80	11.20	-
계	0.49	5.06	3.88	5.38	7.13	-

주: 2026년·2027년 직접운용 채권 미운용(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7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9조 18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6년 추정 규모인 17조 3,357억원 대비 1조 3,365억원 증가한 18조 6,722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7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6년도 추정 규모인 1조 5,229억원 대비 1,137억원 감소한 1조 4,09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2027년 운용배수는 13.3배로 추정됨.

〈2027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90,775	91,000	84,920	90,180	5,260	6.2
□ 보증잔액	180,097	183,700	173,357	186,722	13,365	7.7
□ 기본재산	14,814	14,642	15,228	14,091	△1,137	△7.5
□ 운용배수	12.2	12.6	11.4	13.3	1.9	16.7

* 2026년 연도말 추정치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보증공급	81,871	80,147	96,402	89,599	86,432	90,775
□ 보증잔액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 기본재산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14,814
□ 운용배수	16.7	15.2	14.6	16.8	17.3	12.2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구상권관리비[113]: 채권 회수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구상권관리비” 사업은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을 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억 9,600만원(△15.0%) 감소한 101억 7,8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구상권관리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구상권관리비	11,491	11,974	11,974	10,178	△1,796	△15.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함)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을 의미하는 대위변제율도 2025년에 2.43%를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113) 세부사업: 구상권관리비(2432-302)

<최근 5년(2021~2025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대위변제액	3,021	2,902	4,074	4,196	4,380
대위변제율	**1.85**	**1.69**	**2.31**	**2.33**	**2.4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9년부터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운영되다가, 2025년 정부출연금 1,500억원 전입 및 보증충당부채 산출방식 개선에 따른 보증충당부채 환입[114] 에 따라 2025년에는 적정 운용배수 이내인 12.2배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정부출연금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1,500
	금융기관출연금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2,207
	보증료,이자수입등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1,259
	계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5,732
지출	보증보조비용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3,759
	구상채권상각비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4,176
	관리업무비 등	666	590	566	633	660	626	635	655
	계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13,667
기본재산(A)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14,813
보증잔액(B)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운용배수(B/A)		**9.7**	**15.4**	**16.7**	**15.2**	**14.6**	**16.8**	**17.3**	**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4) 농신보는 그동안 보증잔액의 정상·부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 경험률을 적용하여 보증충당부채를 산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검사 및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등을 거쳐 보증잔액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하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보증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2025년도 보증보조비용이 △3,759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기본재산 증가 및 운용배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 출연금이 2026년과 2027년에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농신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지거나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과거와 유사하게 운용배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편, 동 사업은 농신보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신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상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농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상채권, 특수채권[115], 포기채권[116] 등 채권잔액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채권잔액은 전년 대비 1,033억 2,100만원(3.82%)이 증가한 2조 8,067억 4,100만원임.

○ 그런데, 농신보의 채권 회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25년의 경우 구상채권, 특수채권, 포기채권 등 채권 회수 실적은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한 667억 8,700만원임.

115) 특수채권 : 구상채권 중 회수 불가로, 상각기준에 따라 상각한 채권
116) 포기채권 :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경과 등에 따라 회수 포기한 채권

<최근 5년(2021~2025년) 채권잔액 현황>

(원금회수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잔액	**1,346,788**	**1,448,855**	**1,663,566**	**1,882,603**	**1,569,654**
증감	104,715	102,067	214,711	219,037	△312,949
증감률	8.4	7.58	14.82	13.17	△16.62
특수채권 잔액	**724,510**	**697,370**	**662,115**	**640,487**	**1,080,198**
증감	△48,355	△27,140	△35,255	△21,628	439,711
증감률	△6.3	△3.75	△5.06	△3.27	68.65
포기채권 잔액	**289,151**	**250,867**	**211,390**	**180,330**	**156,889**
증감	△77,284	△38,284	△39,477	△31,060	△23,441
증감률	△21.1	△13.24	△15.74	△14.69	△13.00
합계	**2,360,449**	**2,397,092**	**2,537,071**	**2,703,420**	**2,806,741**
증감	△20,924	36,643	139,979	166,349	103,321
증감률	△0.9	1.55	5.84	6.56	3.8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최근 5년(2021~2025년) 채권 회수 현황>

(원금회수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회수	**71,944**	**59,775**	**50,133**	**52,490**	**56,266**
증감	17,400	△8,236	△9,642	2,357	3,776
증감률	31.9	△12.11	△16.13	4.70	7.19
특수채권 회수	**24,131**	**15,868**	**12,095**	**11,262**	**8,608**
증감	△645	△5,497	△3,773	△833	△2,654
증감률	△2.6	△25.73	△23.78	△6.89	△23.57
포기채권 회수	**9,035**	**5,530**	**3,590**	**3,048**	**1,913**
증감	△155	△1,773	△1,940	△542	△1,135
증감률	△1.7	△24.28	△35.08	△15.10	△37.24
합계	**105,110**	**81,173**	**65,818**	**66,800**	**66,787**
증감	16,600	△15,506	△15,355	982	△13
증감률	18.8	△16.04	△18.92	1.49	△0.0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특히, 채권 잔액 대비 회수율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5년에는 2.32%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최근 5년(2021~2025년) 채권 회수율>

(원금회수기준,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5.3	3.96	2.93	2.71	3.46
특수채권	3.3	2.22	1.79	1.73	0.79
포기채권	3.1	2.16	1.67	1.66	1.20
합 계	**4.5**	**3.28**	**2.53**	**2.41**	**2.32**

※ 산식 = 채권별 회수액 / [채권별 잔액 + 채권별 회수액] * 1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채권 회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농신보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농어민의 상환 여력이 약화되었고,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채권회수 실익을 반영한 채무감면 조치 등으로 회수금이 자연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농어민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구상채권 회수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운용배수가 증가할 경우 신규 보증 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신보는 적극적인 채무 현황 파악 및 회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Ⅰ. 공적자금상환기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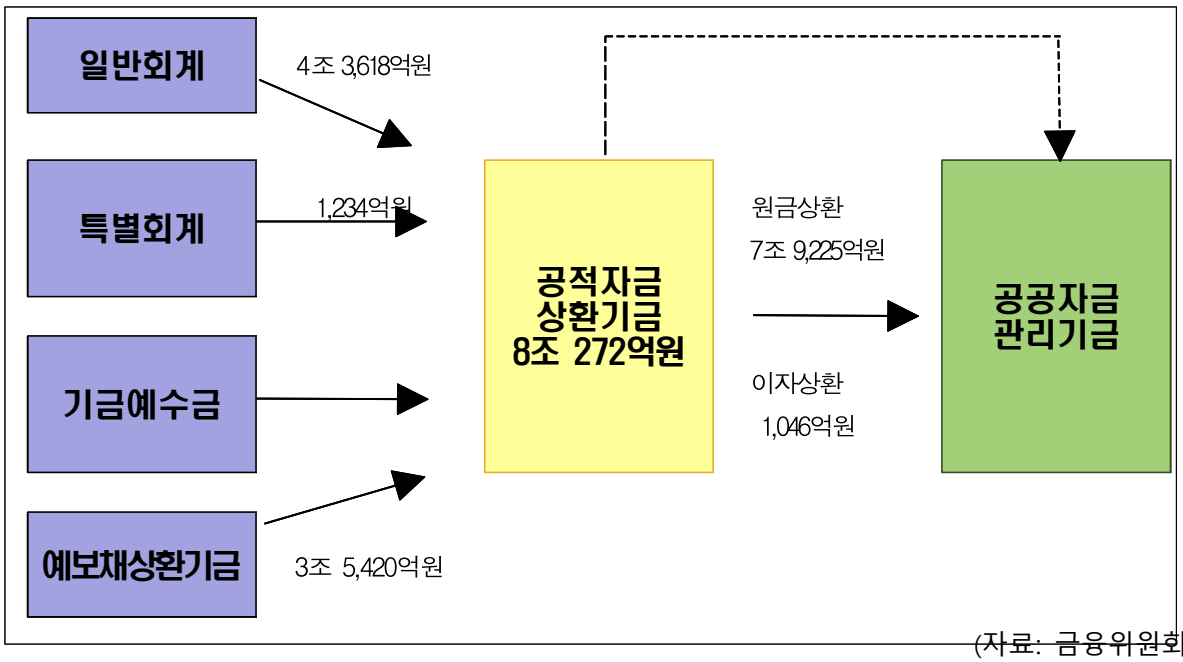
□ 정부는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117]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자금을 예탁받아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분인 49조원(원금 기준)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함.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규모는 8조 27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및 예수이자상환에 지출할 계획임.

117)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임(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20.8..)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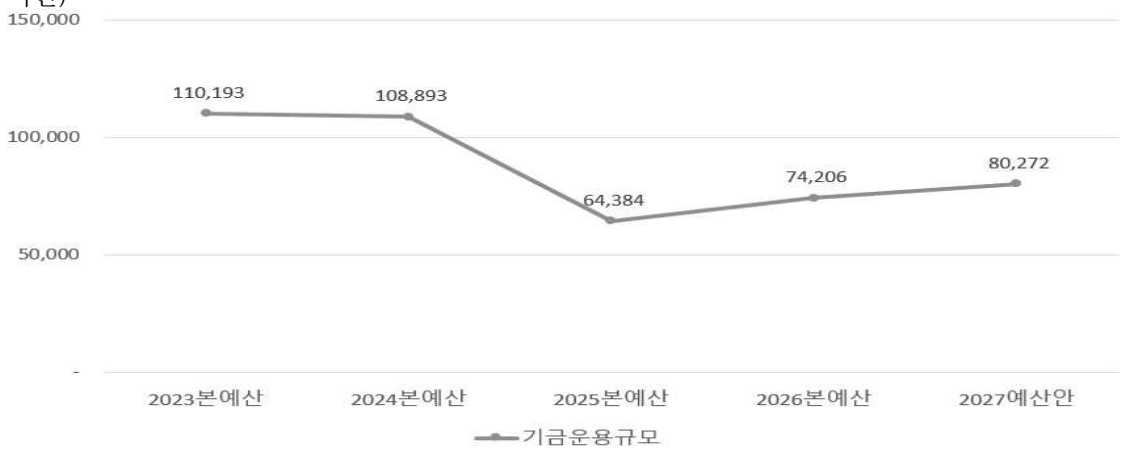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지출 계획 추이를 보면, 2023년 11조 193억원에서 2024년 10조 8,893억원, 2025년 6조 4,384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6년 7조 4,206억원, 2027년도 계획안은 8조 272억원임.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계획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8조 271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5억 1,800만원(8.2%)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950,405	7,420,637	7,420,637	8,027,155	606,518	8.2
□ 재산수입	666	-	-	-	-	-
□ 경상이전수입	3,200,000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 재고자산매각대	-	-	-	-	-	-
□ 세계잉여금	133,738	-	-	-	-	-
□ 일반회계전입금	2,500,000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 특별회계전입금	115,961	121,843	121,843	123,400	1,557	1.3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	-	-	-	-	-
□ 여유자금회수	4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일반회계전입금 4조 3,618억원, 경상이전수입 3조 5,42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1,234억원 등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8조 271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5억 1,800만원(8.2%)이 증액 편성됨.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950,405	7,420,637	7,420,637	8,027,155	606,518	8.2
□ 기금운영비	1	4	4	3	△1	△25.0
○ 기금관리비	1	4	4	3	△1	△25.0
○ 자산매각비	-	-	-	-	-	-
□ 정부내부지출	5,950,365	7,352,644	7,352,644	8,027,152	674,508	9.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5,540,024	7,148,632	7,148,632	7,922,520	773,888	10.8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410,341	204,012	204,012	104,632	△99,380	△48.7
□ 여유자금운용	39	67,989	-	-	△67,989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	-	67,989	-	-	△67,989	△100.0
○ 한국은행예치	39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8조 272억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운영비 등 기본경비성 프로그램과 내부거래·여유자금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	1	-	-	-	-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44,054	64,025	103,426	83,456	97,894	98,409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7,031	7,031	6,584	6,515	5,498	5,498
여유자금운용(9700)	283	283	182	182	5,500	5,500
합 계	**51,370**	**71,341**	**110,193**	**90,153**	**108,893**	**109,408**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	-	-	-	-
기금운영비(3500)	0.6	0.6	-	-	-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59,977	59,977	71,486	71,486	79,225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4,383	4,383	2,040	2,040	1,046
여유자금운용(9700)	23	23	680	680	-
합 계	**64,384**	**64,384**	**74,206**	**74,206**	**80,272**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영비

□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25.0%)이 감소함.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1	4	4	3	△1	△25.0
○ 기금관리비	1	4	4	3	△1	△25.0
○ 자산매각비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는 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0만원 감소함.

3) 정부내부지출

□ 2027년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8조 27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45억 800만원(9.2%)이 증가함.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5,950,365	7,352,644	7,352,644	8,027,152	674,508	9.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5,540,024	7,148,632	7,148,632	7,922,520	773,888	10.8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0,341	204,012	204,012	104,632	△99,380	△48.7

(자료: 금융위원회)

4) 여유자금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액 감액 편성됨.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39	67,989	-	-	△67,989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	-	67,989	-	-	△67,989	△100.0
○ 한국은행예치금	39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9	2027(전망)
□ 예치금	1.33	4.01	3.59	2.87	-	-
□ MMDA	0.2	-	-	-	-	-
계	1.33	4.01	3.59	2.87	-	-

(자료: 금융위원회)

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舊예금보험기금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118)119)] 2021년 8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는 3조 5,492억원으로 금융기관 특별기여금(2조 8,421억원), 출자주식 매각대금(4,363억원), 배당금(1,000억원) 및 이자수입 등(90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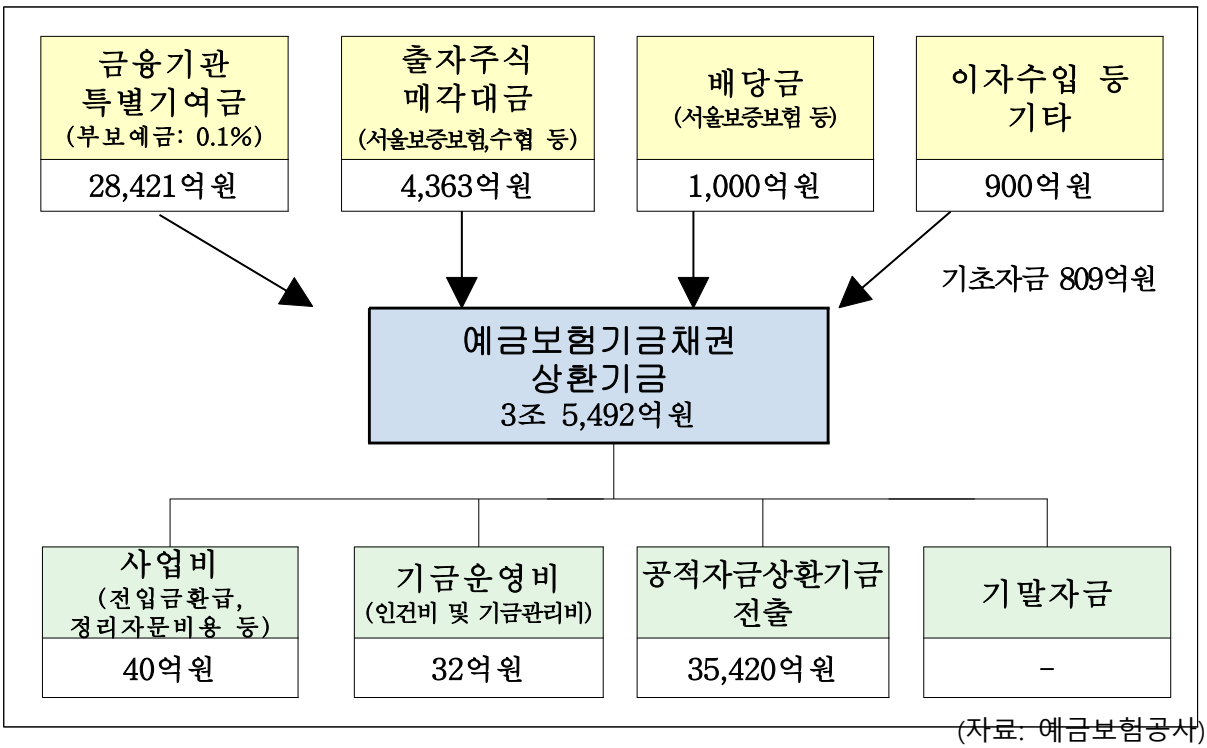
○ 이를 사업비(40억원), 기금운영비(3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3조 5,420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

118)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생 략)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119) 現 예금보험기금은 2003.1.1. 이후 예금자 보호 업무 등을 위하여 신규로 운영한 것임.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업무량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지속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따른 업무량 감소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 전체 운영경비의 3% 미만을 분담하고 있음.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예금보험공사)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3년 4.9조원, 2024년 5.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3.4조원, 2026년 4.9조원, 2027년 3.5조원으로 다시 감액 편성 계획임.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3조 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375억원(△27.4%)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합 계	3,434,340	4,886,680	4,886,680	3,549,178	△1,337,502	△27.4
□ 재산수입	233,451	310,347	310,347	190,002	△120,345	△38.8%
□ 경상이전수입	2,689,339	2,747,819	2,747,819	2,842,052	94,233	3.4%
□ 관유물매각대	261,536	1,818,514	1,818,514	436,260	△1,382,254	△76.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50,013	10,000	10,000	80,864	70,864	708.6%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재산수입’은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KR&C(정리금융회사) 대출금 이자수입 및 기금의 대기성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대기성 자금 운용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03억 4,500만원(△38.8%) 감소한 1,900억 2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금융권 특별기여금 수입 등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수납액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2억 3,300만원(3.4%) 증가한 2조 8,420억 5,2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수입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822억 5,400만원(△76.0%) 감소한 4,362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및 기초 보유자금으로 2027년에는 기초 보유자금만 존재하며, 전년 대비 708억 6,400만원(708.6%) 증가한 808억 6,400만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3조 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375억원(△27.4%)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3,434,340	4,886,680	4,886,680	3,549,178	△1,337,502	△27.4
□ 사업비	850	2,699	2,699	3,988	1,289	47.8
○ 전입금환급	-	2	2	2	-	-
○ 소송및법적절차비	-	5	5	5	-	-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850	2,692	2,692	3,981	1,289	47.9
□ 기금운영비	2,732	3,117	3,117	3,237	120	3.8
○ 인건비	2,489	2,542	2,542	2,641	99	3.9
○ 기금관리비	243	575	575	596	21	3.7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200,000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 채권 원리금 상환	-	-	-	-	-	-
○ 채권 원금 상환	-	-	-	-	-	-
○ 채권 이자 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230,758	80,864	80,864	-	△80,864	△1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39억 8,800만원으로 출자주식 매각 관련 기타정리자문경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8,900만원(47.8%)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3.8%) 증가함.

○ 2027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전액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에 따라 0원으로 전년 대비 808억 6,400만원(△100.0%) 감소함.

□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성격의 금융정책(1100), 경상비용 성격의 기금운영비(3500), 기말자금인 여유자금운용(9700),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로 구성됨.

<최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808	808	879	879	37	37
기금운영비(3500)	36	40	34	34	35	35
여유자금운용(9700)	7,126	7,123	7,716	7,716	3,839	3,839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24,000	24,000	26,000	26,000	42,500	51,900
합 계	**31,970**	**31,970**	**34,630**	**34,630**	**46,410**	**55,810**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27	27	27	27	40
기금운영비(3500)	31	31	31	31	32
여유자금운용(9700)	9,438	9,438	809	809	-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38,000	38,000	48,000	48,000	35,420
합 계	**47,496**	**47,496**	**48,867**	**48,867**	**35,492**

(자료: 예금보험공사)

2) 사업비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39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900만원(47.8%) 증가함.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사업비	850	2,699	2,699	3,988	1,289	47.8
○ 전입금환급	-	2	2	2	-	-
○ 소송및법적절차비	-	5	5	5	-	-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850	2,692	2,692	3,981	1,289	47.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전입금환급’ 사업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관련 사후정산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됨.

○ ‘소송 및 법적절차비’ 사업은 종결재단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사업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8,900만원(47.9%) 증가한 39억 8,1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3.8%) 증가함.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2,732	3,117	3,117	3,237	120	3.8
○ 인건비	2,489	2,542	2,542	2,641	99	3.9
○ 기금관리비	243	575	575	596	21	3.7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인건비’는 기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담액으로, 전년 대비 9,900만원(3.9%) 증가한 26억 4,1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2,100만원(3.7%) 증가한 5억 9,600만원이 편성됨.

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 상환 완료 이후 매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하고 있으며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조 2,580억 4,700만원(△26.2%) 감소한 3조 5,419억 5,3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200,000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자료: 예금보험공사)

5) 채권 원리금 상환

□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은 없음.

○ 2021년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채권 및 이자 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6) 여유자금운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말보유자금으로 전액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에 따라 미편성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 여유자금운용	230,758	80,864	80,864	-	△80,864	△1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9	2027(전망)
□ 예치금	2.45	4.05	3.67	2.12	1.72	-
□ 채권	2.28	3.80	3.67	-	-	-
□ 수익증권(MMF)	2.32	3.92	-	-	-	-
□ 수익증권(국공채형)	-	5.02	-	-	-	-
□ 수익증권(완전위탁)	-	-	3.81	2.97	2.93	3.52
계	2.40	4.12	3.78	2.97	2.93	3.52

(자료: 예금보험공사)

Ⅲ. 검토의견

1. 총괄: 기금 청산을 위한 구체적 준비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120]” 사업은 정부부담분 49조원(원금 기준)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도 7조 1,486억원 대비 7,739억원(10.8%) 늘어난 7조 9,225억원임.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5,540,024	7,148,632	7,148,632	7,922,520	773,888	10.8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121]”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예상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채무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도 4조 8,000억원 대비 1조 2,580억원(△26.2%) 감소한 3조 5,420억원임.

120) 세부사업: 공적자금관리기금_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9111-841)
121) 세부사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_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

<2027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200,000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122]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1~2025회계연도까지 원금 기준 총 35조 4,20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였음.

<2021~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5,540,024	35,420,624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체 부채 상환을 완료한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까지 총 14조 6,400억원을 전출하였음.

122)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250,000	2,400,000	2,600,000	5,190,000	3,200,000	14,640,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잔액은 원금 기준 15조 712억원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조 1,486억원, 2027년 7조 9,225억원을 상환한 뒤 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2026년 9월 기준 원금 상환 실적은 4조 6,230억원(계획의 64.7%)임.

〈 공공자금관리기금 부채(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계획 (9월기준)	2027계획
당초 계획	10,342,600	9,789,418	5,997,739	7,148,632	7,922,520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4,622,970	-
계획 달성도	80.7	90.3	92.4	64.7	-
잔여부채(원금)	28,011,614	20,611,176	15,071,152	10,448,182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1년 8월 차입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없으며, 2025년 말 순자산 4조 1,094억원은 출자주식(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 3조 1,954억원, 수협중앙회 국채 4,797억원, 연기금투자풀 운용자산 2,332억원, KR&C 대여금 2,003억원 등으로 구성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상태(2025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말 기준 평가
주식(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3,195,420
국채(수협중앙회)	479,728
연기금투자풀 운용자산	233,240
KR&C 대여금(대손충당금 차감 후)	200,270
기타자산(공사 임차보증금 등)	700
자산 계(= 순자산, 부채 없음)	**4,109,358**

(자료: 예금보험공사)

2) 검토의견

□ 「공적자금상환기금법」[123] 및 「예금자보호법」[124]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므로, 2027년도 계획안은 국회가 두 기금을 심사하는 마지막 계획안임.

□ 먼저 두 기금의 청산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자보호법」[125]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 자산·부채의 귀속주체를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에서 정해야

123)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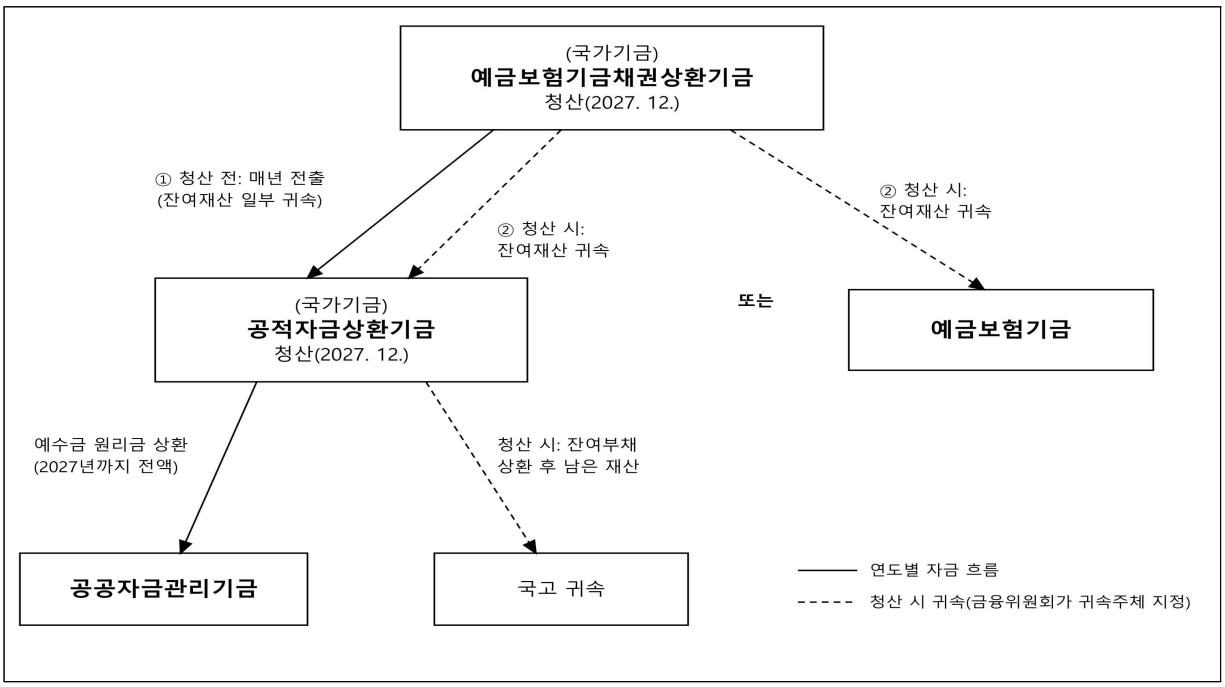
124)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이하 생략)

125)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126]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잔여부채를 전액 상환한 뒤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금 청산 전이라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면,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청산 전에 미리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음.

<기금 청산 시 부채 상환 및 잔여재산 귀속 구조>



참고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중 하나로 '예금보험기금'이 포함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특별기여금[127]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126)**「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127)**「예금자보호법」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 재원은 ① 세계잉여금, ②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③ 일반회계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결산	2026계획	2027계획
세계잉여금	1,684,340	-	133,738	-	-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110,705	112,873	115,961	121,843	123,400
일반회계 전입금	303,860	2,500,000	2,500,000	2,498,794	4,361,802
예보채상환기금 전입금	2,600,000	5,190,000	3,200,000	4,800,000	3,541,953
재고자산매각(한화오션 주식[128])	534	81,597	-	-	-
합 계	**4,699,439**	**7,884,470**	**5,949,699**	**7,420,637**	**8,027,155**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129]	4,124,204	1,441,900	-	-	-
부채(원금)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7,148,632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128)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오션 주식은 2024년도에 매각 완료됨.

129)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원금) 상환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다시 차입해 충당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자산 규모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수입이 2027년에도 계속되고, 정부가 2027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일반회계전입금(4조 3,618억원)을 계획대로 편성·집행하며, 매각 대상 자산이 2026년 9월 시세 수준으로 매각된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 재원은 산술적으로 확보 가능해 보임.

○ 2026년 9월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잔여부채(원금 10조 4,482억원)와 이자를 합한 상환 소요액은 10조 5,528억원으로 추정됨.

보유주식을 전혀 매각하지 않더라도 2027년도 일반회계전입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특별기여금 등 현금성 재원 약 9조 1,204억원으로 부채 상환 재원의 86.4%를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부족분 1조 4,324억원은 매각 대상 주식(서울보증보험 소수지분 28.91%및 한화생명 지분 10%)과 KR&C 대여금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임. 다만, 주식 대량 매각에 따른 할인이나 9월 수준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부 부족분이 생길 수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잔여부채 상환 소요와 재원(2026년 9월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추정금액	비 고
상환 소요(A)	잔여부채(원금)		104,482	2026.9. 상환 46,230
	2027년 예수금 이자		1,046	2027년 계획안
	소 계		**105,528**	
현금성 재원(B)	2027 일반회계전입금		43,618	공적자금상환기금 2027년 계획안
	2027 우체국특별회계전입금		1,234	공적자금상환기금 2027년 계획안
	예보채상환기금	미전출 수입	8,047	2026.9. 수입 30,047 − 전출 22,000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32,905	2026년 잔여분(5,405) 및 2027년분(약 27,500)
		2027 배당금 등 수입(주식매각 제외)	5,400	수협 국채수령액(약 4,400)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약 1,000)
	소 계		**91,204**	충당률(B/A) 86.4
부족분 (C=A−B)			**14,324**	
매각대상 자산(D)	서울보증보험 소수지분(28.91%)		8,337	2026.9.23. 종가 기준
	한화생명보험(10%)		4,899	〃
	KR&C 대여금		2,003	2025년 말 장부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소 계		**15,238**	
현물 반환 자산(E)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50%+1주)		14,418	2026.9.23. 종가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그런데, 일부 보유자산은 청산 시한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게 될 것으로 보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26년도 및 2027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보증보험 지분 중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50%+1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는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기금 청산 시에 현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6년도 및 2027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계획안		2027년도 계획안
한화생명보험	86,857,001주(10%) × 5,000원	434,285	-
서울보증보험	23,635,946주(33.85%) × 55,180원	1,304,229	-
수협중앙회 (국채 수령 예상액)	-	80,000	436,260
합 계		**1,818,514**	**436,260**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6년 9월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서울보증보험 지분 78.91%와 한화생명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 중 서울보증보험 소수지분 28.91%와 한화생명 지분 10%를 청산 시까지 최대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이 계획대로 매각되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50%는 현물로 남게 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출자주식의 처리 방향(2026.9.기준[130]) 〉

구 분	보유 주식수(지분율)	종가 기준 평가	처리 방향(금융위원회)
서울보증보험 소수지분	20,185,946주(28.91%)	약 8,337억원	청산 시까지 최대한 매각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34,910,800주(50%+1)	약 14,418억원	청산 시 귀속결정 대상 자산
한화생명보험	86,857,001주(10%)	약 4,899억원	청산 시까지 최대한 매각
합 계	-	**약 27,654억원**	-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이처럼 기금 청산의 관건은 부채 상환 재원 자체보다는 매각되지 않은 자산을 청산 시한까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넘기고, 청산 이후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데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130) 2026.9.23.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종가(서울보증보험 41,300원, 한화생명 5,640원) 기준 가상 계산으로, 매각 가능 금액이 아님.

있음.

□ 첫째, 현물 상환·귀속의 구체적인 방식과 근거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을 청산할 때에는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2024.3.)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은 청산 시점에 현물로 남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임.

〈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안)(2024.3. 공자위 의결) 〉

방식	IPO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5년 상반기 이내	상장 완료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최대 33.85%	50%+1주 이상

*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국채 발행 자금으로 조성되어 현금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물로 상환·귀속하려면 ① 현물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또는 국고 귀속으로 이어지는지 등 이전 경로, ② 현물의 평가 기준과 평가 시점, ③ 이전의 법적 근거와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④ 기금 청산 이후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관리 주체 등을 정해야 함.

□ 둘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와 배분 원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청산과 함께 국고로 귀속되고, 반대로, 예금보험기금에 귀속하면 금융권이 조성한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이 되므로,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 구조가 달라짐.

□ 셋째, 정리금융회사인 KR&C와 청산 이후 남는 권리·의무의 처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KR&C에 33.8조원을 대출하여 19.5조원을 회수하였고, 2026.9.23. 기준 미회수 원금 14.3조원과 미수이자 1.1조원이 남아 있음. 이 중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131] 대손충당금을 쌓고 장부에는 2,003억원(2025년 말)만 계상되어 있으나, 청산 시 이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야 함. 또한, 기금 청산 이후에도 우발 채무와 소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권리·의무를 승계할 주체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6년도 기금관리비에 기금 청산 대비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과업지시 사항으로서 '각 기금 현물자산 처리 및 귀속 관련 법률 쟁점', '각 기금 청산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잔여

131) 정리금융회사인 케이알앤씨(KR&C)는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동 회사에 대출해 준 금액 중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재산의 배분 시나리오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체계 지속 적용 여부', 'KR&C의 합리적 처리 방안', '기금 청산 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관련 연구용역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예산	3억 3,000만원
계약기간	2026. 4. ~ 11.30.
계약자	KDI, 법무법인 광장 및 삼일회계법인
주요 과업	잔여재산 규모 산정 및 배분 원칙, 현물자산 처리 및 사후관리, KR&C 처리,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방안, 법령 개정안 작성, 사후관리 약정서 검토
종료 예정	2026년 12월 중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금융위원회는 현물자산 처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용역 완료 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번 계획안 심사에서는 두 기금의 청산계획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현물 자산의 처리 방안,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와 배분 원칙, KR&C 및 청산 이후 권리·의무의 승계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일정을 미리 제시하여, 두 기금이 법정 시한 내에 차질 없이 청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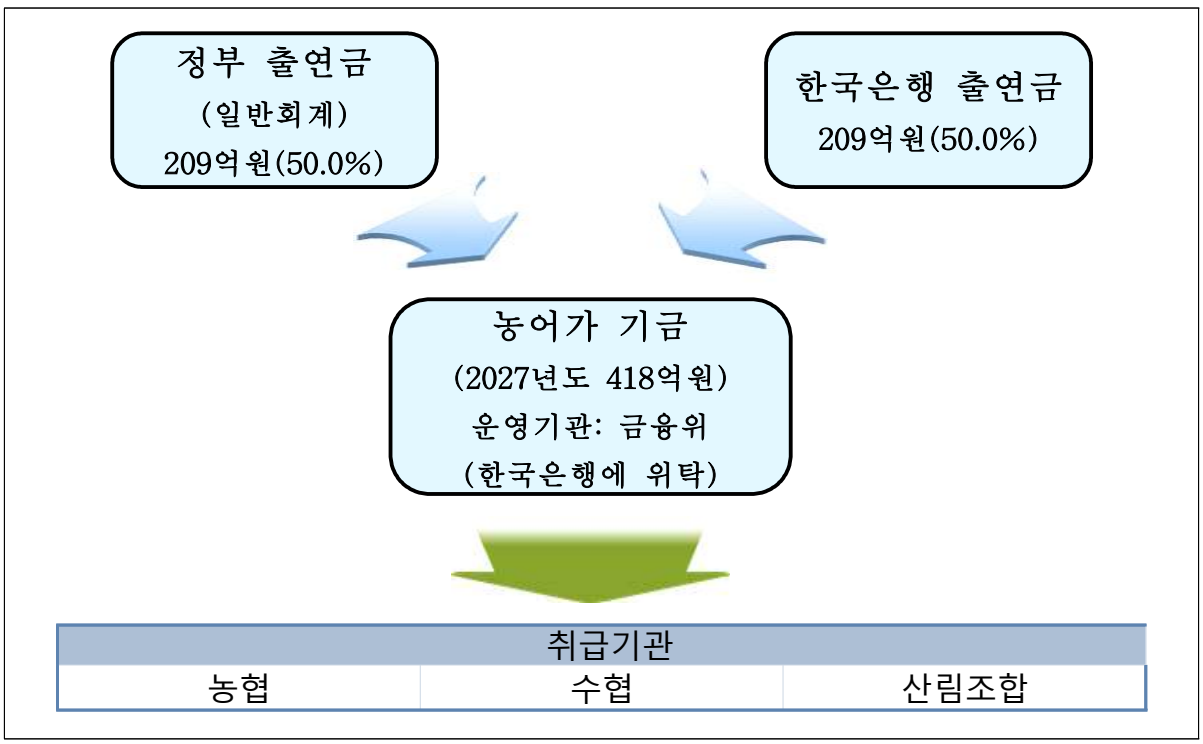
제6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저축장려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규모는 417억 87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209억원)과 한국은행 출연금(209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418억원) 사업에 집행할 계획임.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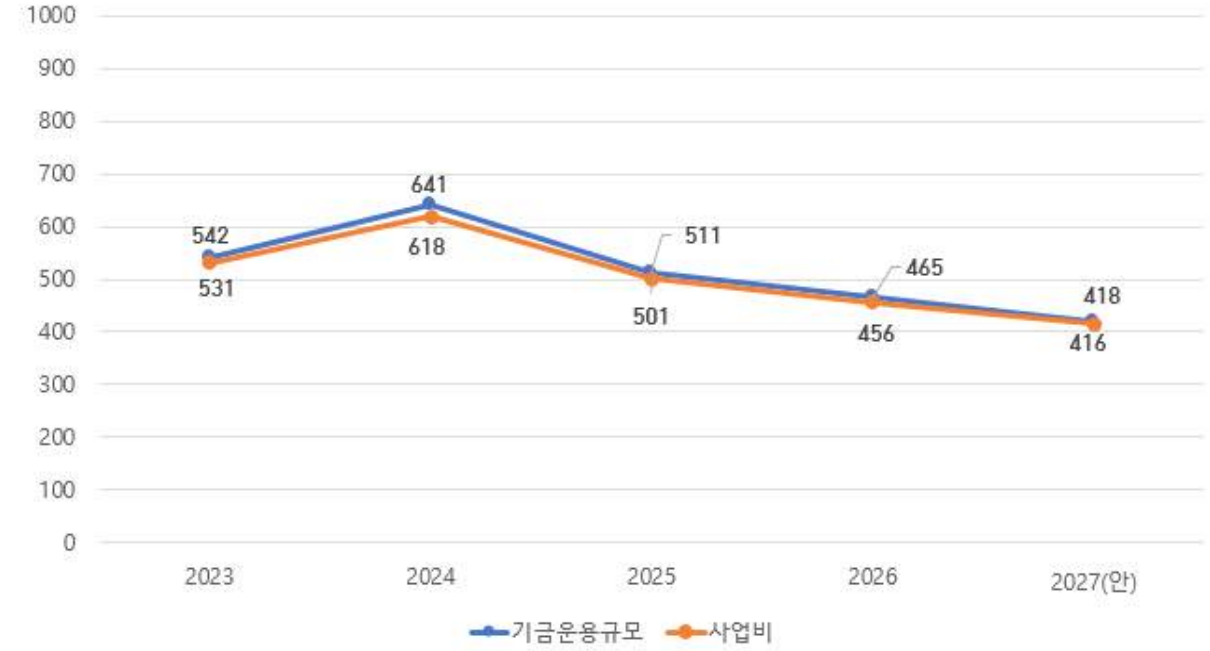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3년 542억원, 2024년 64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511억원, 2026년 465억원, 2027년도 계획안은 418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은 417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2,200만원(△10.2%)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합 계	**49,130**	**46,509**	**46,509**	**41,787**	**△4,722**	**△10.2**
□ 재산수입	158	122	122	41	△81	△66.4
□ 경상이전수입	24,147	23,192	23,192	20,873	△2,319	△10.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78	3	3	-	△3	△100.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4,147	23,192	23,192	20,873	△2,319	△1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액으로서, 전년 대비 8,100만원(△66.4%)이 감액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출연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으로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이상을 출연함. 2027년도 각각 전년 대비 23억 1,900만원 감소한 208억 7,3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026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으로서 2027년도 수입계획안은 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은 417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2,200만원(△10.2%)이 감액 편성됨.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합 계	49,130	46,509	46,509	41,787	△4,722	△10.2
□ 사업비	49,126	45,594	45,594	41,605	△3,989	△8.7
○ 저축장려금	49,126	45,594	45,594	41,605	△3,989	△8.7
□ 기금운영비	-	1	1	1	-	-
○ 기금관리비	-	1	1	1	-	-
□ 여유자금운용	4	914	914	181	△733	△80.2
○ 한국은행예치	4	5	5	-	△5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	-	909	909	181	△728	△80.1

(자료: 금융위원회)

○ 2027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16억 500만원으로 2026년도 계획 대비 39억 8,900만원(△8.7%)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출장 및 성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음.

○ 2027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300만원(△80.2%) 감액됨.

□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저축장려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54,628	54,628	53,082	53,082	61,806	60,614
기금운영비(3200)	1	1	1	1	1	-
여유자금운용(9700)	1,088	1,088	1,070	1,070	2,302	2,517
합 계	55,717	55,717	54,153	54,153	64,109	63,131

프로그램명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50,086	48,207	45,594	45,594	41,605
기금운영비(3200)	1	-	1	1	1
여유자금운용(9700)	1,008	973	914	914	181
합 계	51,095	49,180	46,509	46,509	41,787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41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900만원(△8.7%) 감액됨.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9,126	45,594	45,594	41,605	△3,989	△8.7
○ 저축장려금	49,126	45,594	45,594	41,605	△3,989	△8.7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유자금운용

□ 자금의 유입시기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규모는 2027년에 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300만원(△80.2%) 감액 편성됨.

<2027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4	914	914	181	△733	△80.2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2	2023	2024	2025	2026.10
□ 예치금	1.73	3.69	3.46	2.59	2.77
□ 채권	-	-	-	-	-
□ 수익증권	-	-	-	-	-
계	1.73	3.69	3.46	2.59	2.77

(자료: 금융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저축장려금[132]: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및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맞춘 준비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저축장려금”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도 계획 대비 39억 8,900만원(△8.7%) 감소한 416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7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2027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저축장려금	49,126	45,594	45,594	41,605	△3,989	△8.7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는데, 저소득농어민이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경우 2026년 기준 저축기관 금리 연 2.99%에 더해 평균 잔액 기준 연 4.8%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132)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6년 기준)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일반농어민</th><th colspan="2">저소득농어민</th></tr>
<tr><td rowspan="3">가입대상
(시행령
제2조)</td><td colspan="2" rowspan="3">·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td><td colspan="2">·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td></tr>
<tr><td colspan="2">·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td></tr>
<tr><td colspan="2">·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td></tr>
<tr><td>저축형태</td><td colspan="4">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td></tr>
<tr><td>저축기관금리</td><td colspan="4">연 2.99%</td></tr>
<tr><td rowspan="5">저축장려금</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3">이자율(%)</td></tr>
<tr><td>일반</td><td colspan="2">저소득</td></tr>
<tr><td>3년 만기</td><td>연 0.9</td><td colspan="2">연 3.0</td></tr>
<tr><td>5년 만기</td><td>연 1.5</td><td colspan="2">연 4.8</td></tr>
<tr><td colspan="4">*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td></tr>
<tr><td>장려금재원</td><td colspan="4">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td></tr>
<tr><td>가입한도</td><td colspan="4">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td></tr>
<tr><td>취급기관</td><td colspan="4">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 한국은행 출연금(법정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133]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13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최근 저축장려금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계획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9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6년에는 9월 말까지 400억 8,4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455억 9,400만원) 대비 8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저축장려금 연도별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23	53,082	54,135	101.9	-
2024	61,806	62,429	101.0	-
2025	50,086	49,126	98.1	960
2026(9월기준)	45,594	40,084	87.9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기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안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 신속 추진 필요)**

○ 기금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재정수단으로, 특정 목적사업과 재원 간의 연

계가 강하고 잉여재원을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수 있어 단년도 원칙의 일반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134]

다만, 이러한 신축성은 재원의 수요·공급이 연도별로 변동하거나 특정 재원과 지출사업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가 있는 사업에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까지 기금 형태로 운용할 경우 기금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런데, 동 기금은 매년 필요한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추정하여 그 절반씩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출연하고 같은 해에 전액 지급하는 구조로, 사실상 단년도 수입으로 단년도 지출을 충당하고 있음.

또한, 2025년 말 기금 자산은 400만원에 불과하고 부채 20억 1,200만원을 고려한 순자산은 △20억 800만원으로, 운용할 적립 재원이 없는 상태임.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상태 〉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연도말 미지급 장려금)	자본 총계
4	2,012	△2,008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에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은 동 기금이 외부재원 의존도가

134)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은 기금을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높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관성이 부족하며, 단년도 수입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구조로 인해 중기가용자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기금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음.

특히,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동 기금에 대해 '농어민 저축 장려 및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에 가입 계좌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기금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135]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18	조건부 존치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2019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2022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국회 역시 이미 여러차례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

135)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5. 5. p.61

적한 바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136]

○ 그러나 거듭된 기금존치평가의 폐지 권고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7년도 계획안도 종전 구조대로 편성되었음.

○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 방향으로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소관 부처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관 주체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은 현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임.

〈 기금 제도개선 관련 논의 상황 〉

관련 기관	기관의 입장
한국은행	일반회계 전환 시 정부사업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출연금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계부처 실무협의(2026. 8.)에서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실무의견 제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재원조달 방안 이견 해소 시 일반회계 전환 및 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136)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137] 후단은 정부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무는 법률상 의무지출로 그대로 남으므로, 재원의 절반인 한국은행 출연금(2027년도 계획안 208억 7,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일반회계 전환의 핵심 쟁점임.

○ 그런데, 한국은행출연금은 정부 재정과 무관한 별도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은 동 기금 출연금을 잉여금·적립금에서 지출하고, 결산 순이익 가운데 법정적립금 등을 쌓고 남은 금액을 정부 세입으로 납입하므로,[138] 한국은행이 동 기금에 출연하는 만큼 정부 세입(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줄어드는 구조임. 반대로 한국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여 적립금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

13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138) **「한국은행법」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의 손익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귀결되는 구조임.

즉, 동 기금의 한국은행출연금은 장차 정부 세입으로 들어올 돈을 당겨 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출연금과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

따라서, 한국은행출연금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일반회계로 부담하면 일반회계 지출은 늘지만, 한국은행의 정부납입금도 그만큼 늘어 세입이 함께 증가하므로,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현행 구조는 ① 저축장려금 지급액의 절반이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인 일반회계 지출이 아니라 한국은행 출연으로 조달되어 재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② 한국은행 스스로 정부사업에 대한 직접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특정 정책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준재정활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이견인 한국은행의 출연 여부는 재정 부담의 순증이라기보다는 예산 계상 방식의 문제에 가까우므로, 금융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고,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비과세 축소안에 맞춘 준비 필요)

○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139]에 따른 저축장려금(재정 및 한국은행 지원) 외에「조세특례제한법」[140]에 따른 조세특례로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런데, 정부가 2026년 9월 3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의 이자소득'으로 한정하여 2027년 이후 가입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이 개정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재정전환"으로 분류하고,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5년간 13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지출 평균값 44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

---

1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140)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9.3. 제안, 21039)〉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 ---------- ---------- ---------- ---------- 소득세(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증여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中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재정전환(§87의2)	9	18	27	36	44	134	27

추계산식

- 3년 만기 44억원 × 0.07 / 3년 = 1억원, 5년 만기 44억원 × 0.93 / 5년 = 8억원
  →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해마다 각각 1억원, 8억원 세수효과 발생"(44억원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5년간(20~24년) 조세지출 평균값", 0.07·0.93은 "총이자에 대한 비율"임)

○ 개정안의 내용상, 정부는 비과세 축소분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줄어드는 세제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으로 대체할 것인지, 대체한다면 그 방식(저축장려금 지급률 상향 등)과 규모는 어떠한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아니함.

저축장려금 지급률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어, 2027년 가입분부터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조정하려면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비과세 축소가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시로 살펴보면, 월 20만원을 납입하고 이자소득에 일반 세율(15.4%)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5년 만기 가입자의 세 부담은 약 14만원, 3년 만기 가입자의 세 부담은 약 5만원으로 나타남.

〈 비과세 축소에 따른 가입자 1인당 영향(예시) 〉

(단위: 원)

구 분			3년 만기	5년 만기
납입원금			7,200,000	12,000,000
평균잔액			3,700,000	6,100,000
저축기관 이자(연 2.99%, 단리)			331,890	911,950
이자소득세 상당액(15.4%)			51,111	140,440
저축장려금	일반농어민		99,900	457,500
	저소득농어민		333,000	1,464,000
혜택 총계 (이자 및 저축장려금)	일반 농어민	개정 전	431,790	1,369,450
		개정 후	380,679(△11.8%)	1,229,010(△10.3%)
	저소득 농어민	개정 전	664,890	2,375,950
		개정 후	613,779(△7.7%)	2,235,510(△5.9%)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계산)

이에 따라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합한 혜택은 일반농어민의 경우 3년 만기 11.8%, 5년 만기 10.3% 줄어들고, 저소득농어민의 경우 3년 만기 7.7%, 5년 만기 5.9% 줄어듦.

○ 물론, 기존 이자소득 비과세는 만기 또는 3년 이상 저축 후 중도해지

시(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의 경우 1년 이상)[141] 적용되므로, 2027년 가입분에 대해 저축장려금 지급률을 조정하더라도 2027년도에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7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없이 가입하게 되므로, 재정 전환의 내용이 가입 시점에 확정되어 있어야 가입 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비용추계서가 기준으로 삼은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지출 평균값 44억원은 2027년도 저축장려금 계획안 416억 500만원의 약 10.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를 저축장려금 확대로 전환할 경우 그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균등하게 부담할지, 또는 정부출연금만 늘릴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한편, 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총가입계좌수(누적)는 2020년 267,416좌에서 2026년 6월 201,859좌로 65,557좌(△24.5%) 줄었고, 불입액(누적)은 2022년 1조 3,196억원을 정점으로 2026년 6월 1조 909억원으로 2,287억원(△17.3%) 줄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좌 수, 억원)

14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총가입 계좌수(누적)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206,820	201,859
불입액(누적)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11,289	10,909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7년 이후 가입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재정 지원이 제때 제시되지 않는다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감소 추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국회 심의 결과에 맞추어 2027년 이후 가입분에 적용할 재정 지원 방안(지급률, 재원 분담, 시행령 개정 일정)을 미리 마련하여, 가입자가 받는 지원 수준이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예산처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 축소를 대신할 재정 지원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받는 지원 수준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